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권인오 예산분석관
현서린 예산분석관
우형규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채현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 5

- 1. 현 황 5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

II. 주요 사업 분석 / 13

〈일반회계〉

- 1. KOICA 사업비의 타부처 직접 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13
- 2. 중점협력국 ODA 사업의 실집행소요에 적합한 수준의 예산 교부 필요 34
- 3. ODA 선금 지급 및 계약체결 현황 분석 39
- 4. 사업진행도를 감안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국가별 협력사업(ODA)의
예산조정 최소화 필요 등 47
- 5.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전략의 면밀한 설계 필요 58
- 6. 2025 APEC 의장국 사업 및 미래번영기금 조성 분석 64
 - 6-1.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66
 - 6-2. APEC 미래번영기금에 대한 외국의 기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1
- 7. 외교부 내 심리상담 사업 간 시너지 효과 강화 필요 75



CONTENTS

8. 국립외교원 교수요원 및 연구원에게 정책연구비 및 일반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인건비 이관 필요	80
9.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건비 및 운영사업 분석	90
9-1.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존 구성원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개발협력수당 정비 필요	93
9-2. ODA 일반 자격증 시험 재검토 필요	98
9-3. 기간제근로자인 KOICA 코디네이터의 해외사무소 상시적 업무 담당 부적절	105
9-4. 사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배당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저해 문제 등	112
〈국제교류기금〉	
10. 국제교류재단 무기계약직 인건비 운용현황 분석	118

[재외동포청]

I. 결산 개요 / 129

1. 현 황	129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3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4

II. 주요 사업 분석 / 135

〈일반회계〉

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적기 건립 필요	135
2. 한글학교 교사지원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기반 마련 필요	140

[통일부]

I. 결산 개요 / 149

- 1. 현 황 149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56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7

II. 주요 사업 분석 / 158

〈일반회계〉

- 1.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이월 과다 문제 158
- 2.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163
- 3.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167
- 4.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173
- 5. 북한이탈주민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77
 - 5-1. 사회적경제 기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부진 179
 - 5-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등 186
- 6. 통일교육위원 실질적 지원 강화 방안 모색 필요 등 192

〈남북협력기금〉

- 7.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회수 노력 필요 200
- 8.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적정 규모 검토 필요 205
- 9.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실적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 217

1. 현 황	217
--------------	-----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 225

1. 현 황	225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33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34

II. 주요 사업 분석 / 235

〈일반회계〉

1. 2025년도 연말 국방비 미지급 사안 관련 검토	235
1-1. 국고관리 미비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및 이에 따른 문제점	241
1-2. 미지급에 대한 사고이월조치 등 국방부 대응의 적정성 검토	247
1-3. 불용으로 인한 2026년 재정집행상의 문제점	252



CONTENTS

2. 재정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계약 관리 필요	256
2-1. 동일 목적의 계약에 대한 여러 세부사업 혼용집행 부적정 등	257
2-2. 계약 성격과 무관한 임의적 비목 집행 부적절	263
2-3. 계약 체결 실기로 인한 긴급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목적 미달성	268
2-4. 연속적 주제의 연구용역에 대한 개별 수의계약 발주 부적절	271
3.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화훈련시설 개수 착수 부적정 ...	277
4.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PC 리스 계약기간을 미고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 부적정	280
5. 가산복무지원금 제도 관련 검토	284
6. 해외연락장교 공식 장기화에 대한 대책 필요	290
7. 이월사업 관리를 통한 이월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294
8. 자동소음측정망의 조속한 설치 필요 등	299
9. 군무원 정책 관련 검토	306
9-1. 군무원 인력정책의 일관성·체계성 확보 필요 등	307
9-2.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 ① 군무원의 정원구조 개선 필요	312
9-3.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 ②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필요	316
9-4.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 ③ 약사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군무원 약제지원 확대 필요 ...	323
10. 정보화 사업 관련 검토	327
10-1. 국방정보화 투자예산 확보로 국방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	328
10-2. 병과학교교육: 정보통신교육 등 내실있는 진행 필요	332

[병무청]

I. 결산 개요 / 337

- 1. 현 황 337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41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42

II. 주요 사업 분석 / 343


〈일반회계〉

-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343
- 2. 잠복결핵검사 불용 최소화 및 실효성 확보 필요 348
- 3.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내실화 필요 353

[방위사업청] / 36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36억 7,900만원이며, 3,580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3,573억 8,100만원을 수납하고 6억 3,3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3,679	273,679	273,679	358,014	357,381	633	0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1,962억 900만원이며, 이 중 97.9%인 4조 1,078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7,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856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221,776	4,172,175	4,196,209	4,107,895	2,677	85,637	97.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155억 1,400만원이며, 1,153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인 1,153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05,908	115,514	115,514	115,345	115,345	-	-	100.0

자료: 외교부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155억 1,4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1,153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05,908	115,514	115,514	115,345	-	169	99.8

자료: 외교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31억 3900만원 (24.5%)이 증가한 4,727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324억원 (32.9%)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68,412	273,679	273,679	357,381	83,702	△11,031
기금	336,735	105,908	105,908	115,345	9,437	△221,390
합계	705,147	379,587	379,587	472,726	93,139	△232,42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25회계연도 외교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48억 4,300만원(1.3%)이 감소한 4조 2,23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47억원(0.6%)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911,217	4,221,776	4,172,175	4,107,895	△64,280	196,678
기금	336,735	105,908	105,908	115,345	9,437	△221,390
합계	4,247,952	4,327,684	4,278,083	4,223,240	△54,843	△24,71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외교부의 자산은 5조 5,048억 3,000만원, 부채는 674억 3,7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4,373억 9,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266억 700만원, 유·무형자산 5조 1,365억 8,400만원, 기타 자산 416억 3,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88억 5,900만원(0.9%)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가격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전년 대비 529억 9,6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22억 9,500만원, 총당부채 607억 3,500만원, 기타부채 44억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14억 1,600만원(60.1%)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폐지 등으로 정부내차입금이 1,107억 4,0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504,830	5,455,971	48,859	0.9
Ⅰ. 금융자산	326,607	344,515	△17,908	△5.2
Ⅱ. 유·무형자산	5,136,584	5,083,588	52,996	1.0
Ⅲ. 기타자산	41,638	27,868	13,770	49.4
부 채	67,437	168,853	△101,416	△60.1
Ⅰ. 차입부채	2,295	112,272	△109,977	△98.0
Ⅱ. 총당부채	60,735	56,573	4,162	7.4
Ⅲ. 기타부채	4,407	8	4,399	54,987.5
순 자 산	5,437,393	5,287,118	150,275	2.8
Ⅰ. 기본순자산	2,191,397	2,191,39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30,813	239,948	90,865	3.79
Ⅲ. 순자산 조정	2,195,182	2,855,773	△660,591	△23.1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조 8,383억 8,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조 154억 1,700만원, 관리운영비 2,518억 2,400만원, 비배분비용 2억 1,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295억 1,800만원, 비배분수익 2,390억 1,400만원, 비교환수익 등 605억 4,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076억 2,900만원(2.8%) 증가한 3조 8,989억 2,9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경제외교, 국제기구분담금 사업비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 대비 747억 3,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1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1조 9,291억 6,900만원),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8,353억 9,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173억 8,700만원과 경비 1,439억 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2억 1,69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885,900	3,785,709	100,191	2.6
가. 프로그램 총원가	4,015,417	3,940,678	74,739	1.9
나. 프로그램 수익	129,518	154,969	△25,451	△16.4
II. 관리운영비	251,824	247,527	4,297	1.7
III. 비배분비용	219	2,017	△1,798	△89.1
IV. 비배분수익	239,014	243,953	△4,939	△2.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3,898,929	3,791,300	107,629	2.8
VI. 비교환수익 등	60,540	137,121	△76,581	△55.8
VII. 재정운영결과(V-VI)	3,838,388	3,654,178	184,210	5.0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조 2,871억 1,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4,373억 9,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502억 7,500만원(2.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842억 1,000만원 증가한데 비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157억 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조 2,941억 1,0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684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594억 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5,287,118	5,228,834	58,284	1.1
II. 재정운영결과	3,838,388	3,654,178	184,210	5.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929,253	3,613,551	315,702	8.7
IV. 조정항목	59,410	98,912	△39,502	△39.9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437,393	5,287,118	150,275	2.8

자료: 외교부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의 회계·기금 간 자원 이전은 없다.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자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세 입	세 출	운영규모
3,574	41,079	1,153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몽골(ODA), ② 우크라이나(ODA), ③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 등이 있다.

몽골(ODA) 및 우크라이나(ODA) 사업은 사업진행도 및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 50억원(259억원 → 209억원), 44억원(94억원 → 50억원)이 감액되었고,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사업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운영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12억원이 감액(77억원 → 65억원)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외교부는 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②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 ③ 외교업무 수행방식 혁신을 위한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2025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외교부 소관 사업출연금으로 편성된 KOICA ODA 사업비를 다른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구조의 재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속집행 대상사업으로 관리 중인 중점협력국 ODA 프로젝트의 경우, 외교부의 교부액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KOICA는 하반기에 실집행하고 있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동안 KOICA의 현금성 자산으로 출연금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실집행소요에 적합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외공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공관 운영사업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시적 수준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공공외교 사업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 사업비의 타부처 직접 집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가. 현 황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²⁾에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공공부문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라 지칭하는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된다.³⁾ 이와 별도로 개별 부처의 업무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서 부처에게 사업수행자(PMC, PC 등 사업관리용역) 역할을 맡긴 ODA 프로젝트⁴⁾도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 1)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외교부훈령)
제14조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시행) ① 이사장은 협력단이 공공기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을 "공공협력 사업"이라 한다.)
 - ②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시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장관에게 공공협력 사업을 신청하고, 장관은 이사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⑤ 같은 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는 무상 ODA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부처에서 ODA 사업을 각각 추진함에 따라 사업 간의 유사·중복성이 발생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교부 소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개별 부처의 분야 전문성과 외교부 및 KOICA가 갖는 ODA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목적도 있다.

그런데 KOICA는 내부규정인 「공공협력에 의한 사업규정」 및 「공공협력에 의한 국별협력사업 약정 일반사항」 등에 따라 부처 명의를 사업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안내하였고, 사업비를 해당 계좌로 송금한 후 부처의 사업담당자가 직접 비용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 예산의 흐름은 ① 외교부 소관 예산안으로 편성 후 국회의 심의·확정, ② 외교부에서 KOICA로 사업출연금 교부, ③ 계약·협약을 체결한 부처 명의를 별도 계좌로 KOICA가 사업비 송금, ④ 개별 부처의 사업비 집행, ⑤ KOICA 및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의 순서를 보인다. KOICA 사업의 총괄 관리감독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이와 같은 집행 구조 하에서 사업비를 실제 집행 및 관리하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인 정부 부처가 되므로, 부처에서의 사업비 집행양상, 세입·세출 처리 여부,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사과학연구원, 경찰청과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분석의견

KOICA의 사업비를 정부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부처 명의의 별도 계좌로만 관리되어 소관 세입세출로도 미계상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교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이나 다부처 R&D 사업 등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되는 다른 정책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 및 체계에 적합한 사업 구조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OICA 사업비를 각 부처에서 집행한 사례 중에서 2025년에 진행된 경우만을 살펴보면, 8개 부처에서 수행한 19개 프로젝트가 있다. KOICA는 2026년 현재까지 총 125억 9,7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중에서 1억 2,300만원을 다시 반납받았다.

[KOICA 사업비를 개별 부처에서 직접 집행한 프로젝트]

(단위: 백만원)

구 분	ODA 프로젝트명	누적 송금액 ¹⁾	누적 반납액 ²⁾
경찰청	키르기스스탄 마약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23~'25)	250	12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24~'28)	667	-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 사업('24~'29)	502	-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사업('23~'27)	1,378	-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1~'26)	1,235	-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	474	-
국세청	베트남 국세총국 업무 디지털전환을 위한 세무관리 업무재설계 및 IT 시스템 설계 지원 사업('25~'26)	134	-
관세청	키르기스스탄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사업('25~'26)	336	-

(단위: 백만원)

구 분	ODA 프로젝트명	누적 송금액 ¹⁾	누적 반납액 ²⁾
행정안전부	튀니지 전자정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보센터(CNI) IT서비스 관리 역량 강화 사업('24~'25) ³⁾	393	7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21~'25) ⁴⁾	1,193	-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20~'25) ⁴⁾	2,119	-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25~'29) ⁴⁾	499	-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강화사업('24~'28) ⁴⁾	980	-
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강화('25~'27)	118	2
해양경찰청	인도네시아의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구조역량 강화('22~'25)	291	13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24~'25)	350	89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파일럿 사업('25~'27)	600	-
식품의약품 안전처	베트남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24~'25)	478	-
	베트남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구축 파일럿 사업('25~'27)	600	-
합 계		12,597	123

주: 1) 사업을 시작한 이후 KOICA가 부처로 송금한 금액임

2) 사업을 시작한 이후 KOICA가 부처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임

3)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관

4)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관

1. 위 표의 프로젝트에는 공공협력사업과 그 외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별 협력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KOICA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부처 계좌로 송금된 KOICA 사업비는 ① 부처 소속 공무원 및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기관 근로자에게 지급할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 여비, 제경비 등으로 구성된 해외 전문가 파견경비와 ② 연수운동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 수원국 초청인사에게 지급할 초청경비, 초청연수 진행을 위한 교육경비 및 기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초청연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된다. 해당 자금은 출연·출자·보조의 방식으로 제3의 기관에 다시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한다.

[KOICA 사업비 세부 항목 및 산정 기준]

구분	세부 항목	산정 기준 (KOICA 내부규정)
해외 전문가 파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 ○ 여비 ○ 제경비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글로벌 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등
초청연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인건비 ○ 초청경비 ○ 교육경비 ○ 기타 사업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KOICA 내부규정을 근거하여 재구성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처 책임 하에 관리되는 사업비는 부처 소관의 세입·세출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KOICA 사업비는 각 부처의 세입·세출 외 거래로 처리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누적 송금액 125억 9,700만원과 누적 반납액 1억 2,300만원 전액 부처의 세입·세출 외 거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처 소관의 예산에만 적용되는 「국고금 관리법」의 회계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담당자가 직접 사업비를 수납 및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되므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결과적으로 외교부 소관 예산을 별도의 이체(移替)나 이용(移用) 없이 다른 부처가 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ODA 사업은 KOICA 사업비를 NGO나 사기업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노정되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인 정부 부처는 NGO 또는 사기업과 다른 성격의 주체라는 것을 외교부 및 KOICA가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상 ODA의 통합성을 제고하면서도 개별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다른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구조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1) 「국고금 관리법」, (2) 「국가재정법」, (3)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적정성, (4) 사업구조 재설계방안 순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1) 회계통제절차를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에 대한 검토

「국고금 관리법」은 예산 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부처 소관의 수입·지출에 대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KOICA 사업비는 부처 책임 하에 직접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부처 소관의 수입·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통제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부처 소관 수입에 대하여 수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지출에 대해서는 재무관, 지출관,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회계관계직원⁵⁾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⁶⁾ 이는 수입금 징수 및 수납업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업무, 관서운영경비 지급업무에 대한 회계관계직원을 지정하고서 이들 외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⁷⁾ 이때 대부분 회계관계직원은 사업담당자와는 분리되어 별도의 직무를 수행한다.⁸⁾

그런데 KOICA 사업비는 부처 명의 계좌에서 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부처 소관의 세입·세출 외 거래⁹⁾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처 소관 세입세출에

5)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6) 「국고금 관리법」 제13조는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27조는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는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여러 직무를 겸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으며,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동일인이 겸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8) 일반적인 세출의 경우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의 지출결의 요청 및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 송부(재무관 → 지출관), 자금잔액 조회, 지출결의 승인, 국고금 입금요구, 국고입금요구결과 확인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대부분 부처의 운영지원과 내 재무관·지출관을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일반적인 세출보다 간소화되어 있으나, 지출관이 사전에 교부한 관서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경비를 국고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관계직원의 관리감독 하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9) 「세입·세출의 거래 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실체의 세입·세출 외 거래에 대하여 세입 또는 세출예산으로 설정된 바 없이 이루어지는 현금 등의 수수거래로서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만 제시하고 있다.

① 세입·세출예산 외 거래로는 전대차관, 현물출자, 국고금 운용이 있으며, ② 기타세입·세출 외 거래는 회전자금,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적립금, 보관금, 농지복구비, 각종 보증금, 압수품과 몰수품이 있다.

만 적용되는 「국고금 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국가재정운용체계 밖에서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업비 집행 시 부처 내 회계관계직원을 거치지 않고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가 있으며, 수입에 해당하는 KOICA의 사업비 송금 역시 부처 내부에 지정된 수입 담당 회계관계직원의 관리 범위 밖에 있는 문제가 있다.

[부처의 예산집행 원칙 및 KOICA 사업비 집행방식 비교]

구분	수입	지출	
		일반	관서운영경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수) 수입징수관 담당 ○(수납) 수입금출납공무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 ○지출관의 확인 후 실제 지출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관이 교부한 관서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원인행위 및 실제 지급 실시
KOICA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OICA가 부처 명의 계좌에 송금 ○사업담당자가 계좌내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소요 발생 시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 	

자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각 부처에서 KOICA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였을 때, KOICA는 거래내역이 계좌 출납부에 기록되어 있고 회계법인을 통해서 집행불인정액 등을 점검하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설명한다.¹⁰⁾

그러나 KOICA가 적용한 사업비 관리방식은 KOICA가 용역을 맡긴 NGO나 사기업에는 적용할 수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¹¹⁾

중앙관서가 보관하는 현금으로서 보관금이 있으나 이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법원보관금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해당 자금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OICA 사업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10) 그러나 부처 책임으로 집행되는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예결산 집계 및 장부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OICA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으로는 집행소요액을 충당할 수 없어서 권

부처가 책임을 갖는 소관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을 거치도록 한 것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KOICA 사업비는 부처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점검 없이 수입금 수납 및 지출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적용하기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 부처별 소관을 구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대한 검토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내 예산에 대하여 부처 간 소관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 집행구조에서는 별도의 이용 및 이체 절차 없이 외교부 소관 예산을 다른 부처에서 집행·관리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에서는 부처별 예산 편성 시에 소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현행 「국가재정법」¹²⁾은 각 부처로 하여금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부처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을 상호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직무내용을 반영한 소관에 따라 관련 예산을 부처의 책임 하에 운용하기 위함이다. 법령의 제·개정으로 소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내 예산을 부처 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¹³⁾

소사업사가 KOICA로부터 지급받은 선금 중 7,650만원을 이체(25.5.28.)받아 집행하였다. 그 이후 KOICA가 지급한 잔금을 사용해서 컨소시엄사에게 상환(25.8.7.)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OICA의 양해를 받은 후 그와 같이 집행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외교부 및 KOICA가 공모형 사업의 집행구조를 면밀하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12)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13) 이용이나 이체 외에는 현행 국가재정운용체계 하에서 일반회계 내 예산을 부처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외교부 및 KOICA가 설계한 현재 사업구조 하에서는 외교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을 별도의 이용 및 이체 없이 다른 부처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문제가 있다. 외교부는 ODA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출연금은 실제 지출소요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대로 KOICA에 교부하기에 KOICA 자체수입이 반영되지 않는다.¹⁴⁾ 그에 따라서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ODA 사업비가 공공기관을 경유하여 그대로 다른 부처로 이전되고, 해당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집행양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부처에 편성된 사업출연금을 출연기관에 교부한 후, 출연기관이 해당 사업출연금을 다른 부처로 이전하여 그 부처의 책임으로 집행하게 하는 경우는 확인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 소관으로 편성한 예산을 산하기관으로 교부한 후에 각 산하기관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하기관 간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는 특정 부처의 1개 산하기관에 공동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현재 이와 같은 방식의 집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국제협력단법」은 KOICA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될 수 있지만,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

(3)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사업비 산정에 대한 KOICA 내부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적용한 결과, 공무원 국외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외교부 및 KOICA는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에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료가 담당했던 역할을 국가재정운용체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KOICA 사업비를 각 부처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현행 구조 하에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14) KOICA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자체사업 등으로 구성된 '협력사업지원' 세부사업의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시 지출소요의 총액에서 KOICA 자체수입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영한다.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서 규정한대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 외의 별도의 대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는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 공무수행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개인자격으로 자문료를 지급받을 경우, 필요하다면 겸직허가 등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도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한편 KOICA 내부규정에 따르면, 해외 파견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 여비, 직접경비, 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여 비슷한 수준의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접경비 및 제경비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적정 규모로 계상될 필요성은 있다.

KOICA 내부규정인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9조제6항¹⁵⁾ 전단은 소속 기관에서 KOICA로부터 직접인건비를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견 전에 이를 KOICA로 고지하도록 하면서, 후단에서 KOICA로 하여금 (a) 직접인건비 대신 동일 기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b)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경비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문료와 직접인건비는 사실상 같은 성격의 예산 항목이다. 직접인건비와 자문료에는 동일한 기준단가가 적용되며, 모두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하여 총지급액이 산정되고 있고 국외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민간전문가 등에게 보전적 성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직접인건비 대신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15)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KOICA 내부규정) 제9조(직접인건비) ① ~ ⑤ (생략)

⑥ 전문가는 소속 기관에서 협력단으로부터 직접인건비를 수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파견 전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전문가에게 직접인건비 대신 동일 기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제8조제1항제4호의 직접경비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여비, 직접경비 및 제경비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의 적정성 여부가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개인 자격이 아니라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참여하였고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하였다면, 보수나 수당 이외의 경비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이다.¹⁶⁾ 실제로 각 부처 소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였더라면 인건비 내 보수, 기본경비 내 국외업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문료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개별 사업의 정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부처별로 자문료 집행양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①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은 공무원의 복무를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부처들은 공무수행에 대한 별도의 대가지급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반면에 ②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원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찰청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별도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정산서 상에 해당 부처 소속으로 분류된 인원들에게 지급한 자문료 지급 현황을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부 프로젝트는 각 참여자별 출국일과 귀국일이 상이한 관계로 국외근무일이 동일한 경우를 묶어서 표를 작성하였다.

참고로 2025년에 정산이 실시된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KOICA 전문가 기준 3급인원에게 국외근무기간 1일당 24~26만원을, 2급인원에게 1일당 31만원을 지급하였다.¹⁷⁾¹⁸⁾

16) 소관 직무 외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겸직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공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기관구성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출장이 아니라 외부활동으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17) 「전문인력 업무처리기준」 [별표 1] 전문가 등급 기준은 2급에 대하여 (a)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b)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c)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 경력자, (d)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급에 대하여 (a)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b)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c)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 경력자, (d) 공공기관의 2, 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8) 「전문인력 업무처리기준」은 30일 이하 파견자에 대하여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출국일과 귀국일도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의 산정 기간에 반영되었다.

[프로젝트 시작 이후 해외파견 자문료 누적지급 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정산 차수	자문료 지급액	국외 근무일	수령인	
행정안전부	튀니지 전자정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보센터(CNI) IT서비스 관리역량 강화사업('24~'25) ¹⁾	1차	10,320,000원	6일	7명	
		1차	9,760,000원	8일	5명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21~'25) ²⁾	2차	해외파견 미실시			
		3차	9,680,000원	22일	2명	
			5,550,000원	5일	4명	
		4차	해외파견 미실시			
		5차	9,680,000원	22일	2명	
			3,600,000원	15일	1명	
			2,200,000원	11일	1명	
			7,080,000원	6일	5명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사업('20~'25) ²⁾	1차	해외파견 미실시			
		2차	3,240,000원	4일	3명	
		3차	해외파견 미실시			
		4차	8,320,000원	13일	3명	
			12,800,000원	20일	3명	
			14,000,000원	35일	2명	
			33,040,000원	14일	11명	
			9,960,000원	6일	6명	
			2,640,000원	11일	1명	
			11,000,000원	25일	2명	
		5차	16,800,000원	21일	4명	
			5,720,000원	13일	2명	
			3,080,000원	7일	2명	
6차		11,760,000원	14일	4명		
		2,640,000원	6일	2명		
	5,250,000원	5일	4명			
	1,480,000원	4일	1명			
불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강화사업('24~'28) ²⁾	1차	23,530,000원	13일	7명		
경찰청 ³⁾⁴⁾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1~'26)	1차	5,440,000원	8일	3명	
		2차	4,680,000원	6일	3명	
		3차	1,440,000원	6일	1명	
		4차	4,320,000원	9일	2명	

구분	프로젝트명	정산 차수	자문료 지급액	국외 근무일	수령인
	우즈베키스탄 시물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사업('23~'27)	1차	16,800,000원	12일	5명
		2차	해외파견 미실시		
		3차	6,750,000원	8일	5명
	6,270,000원		11일	2명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	1차	11,640,000원	12일	3명

- 주: 1)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관
 2)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관
 3) 경찰청에 따르면, ODA 사업관리가 소관 업무인 부서의 공무원에게는 자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4)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참여한 1인은 복무상황을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면서도 겸직허가를 받았음
 1. 정산서 상 부처 소속으로 분류된 인원들에게 지급된 자문료 현황임
 2. KOICA 내부규정 상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기에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한 국외근무기간으로 작성함

자료: 각 프로젝트별 정산서에 근거하여 재작성

해당기관들은 KOICA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받았다는 입장이다. 기관들은 자문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명하였다. 우선, KOICA가 계좌로 송금한 선금을 초과하는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외 다른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문료 항목으로 지급된 선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원국 현지 여건에 따라서는 기관 내에서 사업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서 자문료가 지급되었기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참여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수원국 현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지식 등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실무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이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밖에 없는데, 현지 치안이 안정적이지 않은 수원국으로 그와 같은 직원들을 파견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자문료가 지급될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서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숙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ODA 프로젝트는 KOICA와 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개별 공무원은 사적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기관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각 기관은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복무를 관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

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수, 수당 외에도 KOICA 사업비에서 실비성격의 교통비, 식비, 일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를 KOICA에서 지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¹⁹⁾

자문료가 ODA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 일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지라도,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국가예산인 KOICA 사업비를 집행하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은 국외 파견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금을 초과한 지출소요 대응문제는 특정 비목의 집행여력을 다른 비목의 부족분에 임의로 보완한 것으로서 적절한 집행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들을 국가재정운용체제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처의 세출사업으로 편성될 경우에는, 부처에게 배정된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또한 기관운영의 관점에서 자문료가 아닌 다른 방식의 유인체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2020년에 시작했던 ODA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총괄기관으로서 외교부 및 KOICA가 사업집행구조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자문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부처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개별 부처에서도 참여자들이 기관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한 점을 감안하여 자문료 지급가능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했을 필요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KOICA 내부규정 상으로도 상대 기관의 내부규정을 감안하여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KOICA가 사업비를 지급할 때 자문료를 포함한 것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 및 KOICA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에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료가 담당했던 역할을 국가재정운용체제로 적절하게 편입할 필요가 있다.

19) 공무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무상 국외출장이 아니라 외부활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외부활동을 통해 자문료를 지급받을 경우에 대하여 겸직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사업구조 재설계방안에 대한 검토

KOICA를 무상 ODA 플랫폼으로 활용함에 따라 KOICA 사업비를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의 프로젝트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를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조 재설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²⁰⁾에서는 전문성·역량을 갖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KOICA 플랫폼을 활용하여 ODA 사업에 참여하고, 선발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KOICA가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그에 따라 KOICA를 무상 ODA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협력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구조의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부처, 공공기관 등의 제안으로 시작하는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 사업²¹⁾의 마지막 단계인 ‘본사업’ 예산이 2026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해왔던 소규모 연수사업의 예산을 2026년부터 외교부 소관 ‘부처연수지원(N-1)’로 통합편성한 후, 각 부처에서 외교부 예산을 KOICA를 통해 이전받아 집행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무상 ODA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집행구조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고금 관리법」,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KOICA와 협의하여 사업구조에 대한 재설계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방향,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규모 및 운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 주관기관(재정경제부 및 외교부)에서 제출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조정·심사하여 이를 의결·확정한다.

21)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안한 사업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후, 사업비를 외교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Q-DEEP, 파일럿사업, 본사업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지원하는 파일럿사업까지만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본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 국세청의 ‘베트남 국세총국 업무 디지털전환을 위한 세무관리 업무재설계 및 IT 시스템 설계 지원사업’, 관세청의 ‘키르기스스탄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사업’, 법제처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사업’과 파일럿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베트남 의로기기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과 파일럿 사업이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 부처의 협업 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정책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①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사업, ② 다부처 R&D 사업 등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는 다수 부처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1개 부처가 총괄기관으로서 개별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③ KOICA 사업비를 직접 집행함에도 이를 수입대체경비로 분류하여 부처 소관의 세입·세출로 편입시킨 경우도 있다.

해당 사례들에서는 세입·세출 외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국가재정운용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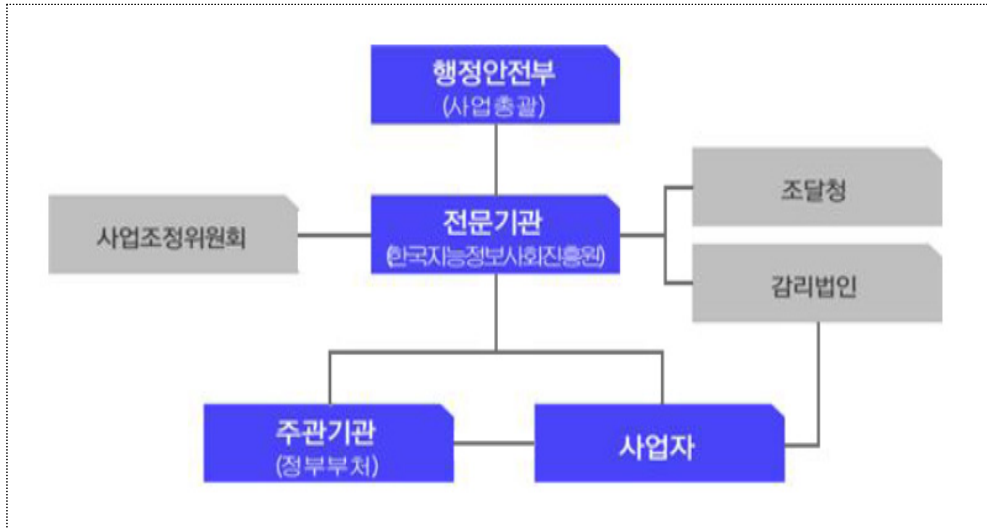
[사업구조 재설계 방안 관련 참고사례]

구분	사례	처리 방법
방식 ①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편성 → 행정안전부 소관 출연기관에서 예산 직접 집행
방식 ②	다부처 R&D 사업	(a) 부처별 R&D 예산 편성 후 1개의 출연기관에 공동 교부 (b) 부처별 R&D 예산 편성 후 각자 소관의 출연기관에 교부 → 출연기관 간 협업
방식 ③	KOICA 사업비로 추진한 연수사업	수입대체경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①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무상 ODA 공모형 사업과 유사하다. 각각 행정안전부, 외교부가 사업총괄기관에 해당하며, 출연기관인 NIA와 KOICA가 전문기관으로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누리집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64조22)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RFP) 작성과 관련하여 개별 부처와 협업하면서도 사업비 전액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직접 집행하였다.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을 다른 부처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2) 「전자정부법」

-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행정안전부(총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수립,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계획 확정 ○ 예산의 확보 및 출연,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사업의 발굴, 심사 및 선정 지원 ○ 사업수행관리, 사업감리 및 예산집행·회계처리 등 ○ 성과관리(운영실태 점검 등)
사업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과제제안서 검토 ○ 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정부부처(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과제제안서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지원, 사업수행관리, 감독·검사 ○ 결과물 인수·운영 및 홍보·확산 ○ 법·제도 정비 및 예산·인력 확보 등 운영기반 조성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R/ISP, 시스템 개발·구축 등 사업수행 및 기술이전 등

자료: 행정안전부 누리집

②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경우에도 다수 부처가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다부처 R&D라고 부른다. 다부처 R&D의 집행구조는 일반적으로 (a) 개별 부처 소관으로 연구개발출연금을 편성한 후 1개 연구관리전문기관²³⁾에 공동으로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과 (b) 개별 부처가 각자 소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한 후 연구관리전문기관 간에 협업하는 방식 등으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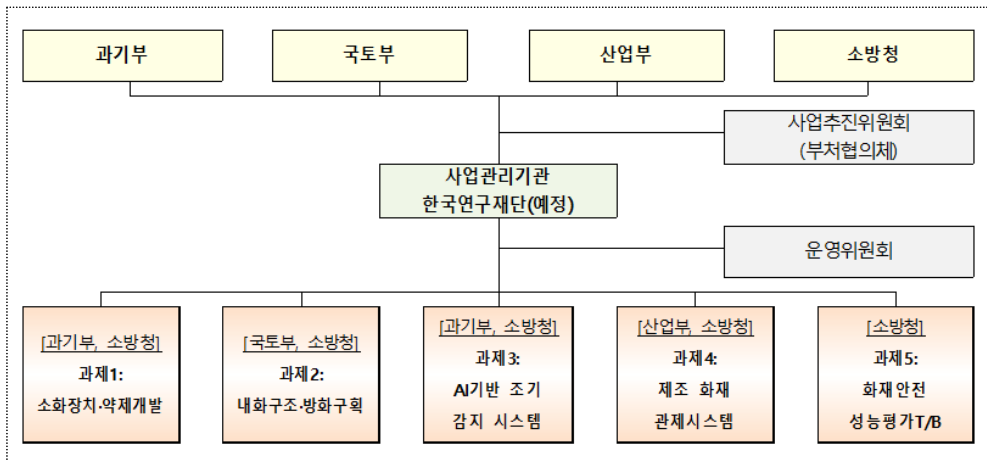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구분된다. (a)방식 및 (b)방식 모두 사업비를 실제 관리·집행하는 것은 연구관리전문 기관 또는 개별 연구기관이므로 특정 부처가 다른 부처의 소관 예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a)방식의 사례로는 2025년도 신규사업인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25~’28, 정부 예산 150억원) 사업은 리튬기반 배터리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²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소방청 소관 예산에 각각 연구개발출연금을 편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교부하였다. 이때 한국연구재단이 각 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관리기관으로서 과제계획서 작성, 제안서평가, 진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부처 R&D 사업의 집행구조도 예시]



주: 1. 2024년에 작성된 자료로서 최신 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음
 2. 사업기간은 2025~2028년이며, 정부 출연금은 총 150억원임
 자료: 소방청,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③ 일부 연수사업은 부처 소속기관의 수입대체경비로 세입·세출처리해왔기에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었다.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수입대체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한 경비²⁵⁾로서,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국가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연수기관으로서 교육비 수입 및 지출을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두 기관은 KOICA로부터 위탁받은 연수사업을 수입대체경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왔다. 수입대체경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부처 소관의 세입·세출로 관리되기 때문에 「국고금 관리법」에 의한 통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

[수입대체경비로 처리 중인 연수사업 현황]

구분	ODA 프로젝트명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행정안전부 ¹⁾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및 교수요원 역량강화	
	필리핀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혁신 역량강화	
인사혁신처 ²⁾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과정	국가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우즈베키스탄 영리더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	
	몽골 고위공무원 역량강화과정	
	몽골 성과관리 운영역량강화과정	
	다국가디지털역량강화과정	

주: 1)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관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인재개발원 소관

자료: 각 부처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5)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이상을 종합하면, 외교부 소관 예산인 KOICA 사업비를 다른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관리가 부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해당 자금이 부처의 세입·세출 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고금 관리법」 및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ODA 통합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다른 정책분야에서 추진된 다부처 협업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 다부처 R&D 사업 등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KOICA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면서도 이를 수입대체경비로 처리한 사업들은 국가재정운용 체계 하에서 부처 소관의 세입·세출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 및 KOICA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하여, 부처가 KOICA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집행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재정의 신속집행¹⁾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운용하는 제도로써, 재정의 과반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 집행의 연말 집중과 불용액 과다 발생을 해소하고 상저하고의 경제전망에 대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2년부터 운영되었다.

현재 기획예산처(舊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각각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분야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운영하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분야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수립, 집행상황 및 낭비 실태의 확인·점검 및 집행실적의 집계·발표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와 같은 신속집행의 의의는 경기의 상저하고가 예상될 때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정부 재정투입 증가에 따른 투자증가, 소비·생산·고용 증대, 경기부양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속집행을 통해서 하반기의 예산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다. 1년 단위로 편성된 예산을 연도 중에 집행하지 않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신속집행은 이와 같은 관행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출연금 예산의 신속집행 실적을 출연기관의 실집행액이 아니라 부처의 교부액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부처에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더라도 사업수혜자가 그 혜택을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기간동안 교부된 예산은 출연기관의 현금성 자산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외교부의 2025년도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은 2조 2,879억 8,200만원²⁾이며, 이 중에서 출연사업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는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신속집행은 실무상의 용어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며 도입 초기 '조기집행'으로 불렸다. 그 이후 '균형집행'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신속집행'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2) 2025년도 상반기 집행목표는 1조 6,245억원이고, 상반기 실적은 1조 7,050억 6,600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외교부는 중점협력국에서 시행되는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KOICA는 교부받은 예산의 50% 이상을 하반기에 실행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KOICA의 현금성 자산으로 출연금이 유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실행 소요에 적합한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7개 중점협력국에서 추진되는 ‘국가별 협력사업(ODA)’을 국가별로 1개 세부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KOICA로 사업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다.

KOICA는 해외사무소를 활용하여 계약 체결여부 및 진행정도,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자금집행 시점을 결정한다.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하면 ① KOICA 본부에서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② 해외사무소로 자금을 송금한 후 해외사무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① 대부분 국내업체가 담당하는 PMC 용역은 본부에서 국내업체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② 건설시공, 감리용역 등 현지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에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2025년 동안 외교부가 KOICA로 교부한 당해연도 예산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매년 1~2분기에 교부한 금액이 77~8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KOICA로 교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가 KOICA로 교부한 금액: 중점협력국]

(단위: 백만원,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3	141,082 (43.0)	117,501 (35.8)	29,931 (9.1)	39,270 (12.0)	327,784 (100.0)
2024	169,204 (44.2)	137,050 (35.8)	52,598 (13.7)	24,046 (6.3)	382,898 (100.0)
2025	176,506 (41.5)	150,624 (35.5)	61,382 (14.4)	36,296 (8.5)	424,808 (100.0)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교부액 중 각 분기별 교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외교부 및 KOICA

한편 KOICA는 매년 ① 외교부가 전년도에 교부하였으나 KOICA가 이월한 금액 및 ② 외교부가 당해연도에 교부한 예산을 활용하여 ODA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KOICA가 집행한 금액의 분포는 외교부의 교부액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3~2025년 동안 1~2분기에 집행한 금액은 전체 집행액의 33.7~43.3%에 불과하며, 3~4분기에 전체 집행액의 56.7~66.3%를 집행하고 있다. 즉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집행규모가 더 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OICA는 매년 2분기말에 외교부가 1분기말까지 교부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2분기에 외교부가 추가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성이 낮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3분기에서도 확인된다.

[KOICA가 집행한 금액: 중점협력국]

(단위: 백만원,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3	55,006 (17.6)	80,376 (25.7)	47,008 (15.1)	129,869 (41.6)	312,259 (100.0)
2024	49,763 (13.3)	76,157 (20.4)	66,368 (17.7)	181,938 (48.6)	374,226 (100.0)
2025	59,503 (14.8)	83,604 (20.8)	65,270 (16.2)	193,753 (48.2)	402,130 (100.0)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집행액 중 각 분기별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외교부 및 KOICA

KOICA는 매년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용역업체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출연금 교부시점과 실제 집행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ODA 사업의 특성 상 수원국 현지 사정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기간에는 정부의 예산이 KOICA의 현금성 자산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KOICA는 용역업체 등으로 대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출연금을 MMDA³⁾,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외화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에는 중점협력국에서의 ODA 사업자금 외에도 다른 출연사업의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각 연도별 평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의 규모가 가장 크며, 그 다음은 MMDA, 외화예금 순이다.

[2021~2025년 KOICA 본부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MMDA(운영통장)	12,264 (104)	25,967 (404)	35,730 (1,001)	64,579 (1,531)	66,527 (1,437)
요구불예금 ¹⁾ (출장비 반납 등)	2,919 (1)	7,080 (1)	10,409 (2)	7,711 (1)	1,827 (2)
정기예금	245,614 (2,125)	226,168 (4,751)	211,763 (7,910)	324,784 (11,432)	263,295 (6,957)
외화예금(원화기준)	-	30,000 (94)	29,206 (1,161)	29,976 (1,439)	27,335 (1,587)

주: 1) 보조금은 전액 국고로 반납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에 한정하여 작성

1. 각 연도별 평잔 기준
2. 괄호 안은 이자발생액

자료: KOICA

신속집행의 취지가 정부재원 투입을 통한 경기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ODA와 같이 실집행 제약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대부분의 예산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실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 특히 KOICA는 중점협력국에 위치한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현지 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별로 실집행 가능성 및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자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시입출금형 저축성 예금 상품이다.

4) KOICA는 사업출연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입을 통해서 수지차 지원예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한다. 사업출연금 보유기간이 단축될 경우 출연금 보유에 따른 이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수지차 보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OICA 수입 중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2025년 동안 0.3~1.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출연금 보유기간 단축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수지차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외교부가 중점협력국 내 국가별 협력사업의 출연금 예산을 신속하게 교부하더라도 실제 업체로 대금이 지급되기 까지에는 시차가 발생하고 있기에 업체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DA의 특성 상 실집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교부한 출연금을 KOICA 내부에 현금성 자산으로 유보시키는 것은 신속집행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신속집행 대상에서 관련 사업들을 제외하면서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사업관리용역(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대신하여 사업 전반의 일정, 예산, 품질, 범위, 성과 및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산출물이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맞게 생산 및 전달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다. ODA 사업은 보건, 농업,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는 점과 수원국 내 사업수행지에서 직접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별 프로젝트마다 PMC 용역을 수행할 전문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2025년 8월 이후 입찰공고된 PMC 용역계약의 선금지급현황, 입찰공고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아 연차별 집행계획액이 아니라 총 계약금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으므로, KOICA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금 지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타지키스탄 농업용수 관개 관리 현대화 지원 사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GIS를 적용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분배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중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7억 8,200만원 증액하였다. KOICA는 2025년도 예산현액 8억 3,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이 중에서 PMC 계약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은 8억 2,900만원이다.

[타지키스탄 농업용수 관개 관리 현대화 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	조정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50	782	-	832	832	-	-	10

자료: KOICA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은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은 1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 중 5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였다. KOICA는 2025년도 예산현액 10억 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이 중에서 PMC 계약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은 10억 400만원이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							2026
예산	조정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1,549	△542	-	1,007	1,007	-	-	500

자료: KOICA

위 2개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로 높은 수준이지만, 집행실적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실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지키스탄 농업용수 관개 관리 현대화 지원 사업’의 PMC 용역 1차수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12월 7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1차수 집행계획액은 6억 9,800만원이다. 그런데 KOICA는 2025년 12월 11일에 1차수 집행계획액보다 더 큰 금액인 8억 2,900만원을 업체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해당 기간 내 과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에서도 ‘타지키스탄 농업용수 관개 관리 현대화 지원 사업’과 같은 집행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PMC 용역의 1차수 집행계획액은 4억 600만원이지만 KOICA는 그보다 큰 금액인 10억 400만원을 업체로 지급하였다. 이 역시 과업진행에 소요될 금액보다 더 큰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차수별 집행계획을 초과하여 선금을 지급한 프로젝트의 PMC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젝트명	계약일	계약금	차수	계약기간	집행 계획액	선금	
						지급액	지급시기
타지키스탄 농업용수 관개 관리 현대화 지원 사업	'25.12.8.	1,904	1차	'25.12.8. ~'26.12.7.	698	829	'25.12.11.
			2차	'26.12.8. ~'27.12.7.	483	-	-
			3차	'27.12.8. ~'28.12.7.	332	-	-
			4차	'28.12.8. ~'29.12.7.	236	-	-
			5차	'29.12.8. ~'29.12.31.	155	-	-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	'25.11.10.	2,030	1차	'25.11.10. ~'26.11.9.	460	1,004	'25.12.3.
			2차	'26.11.10. ~'27.11.9.	518	-	-
			3차	'27.11.10. ~'28.11.9.	603	-	-
			4차	'28.11.10. ~'28.12.31.	449	-	-

자료: KOICA

KOICA는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KOICA 내부규정) 제44조¹⁾를 근거로 하여 PMC 업무가 수원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PMC 용역계약 체결시 장기계속 계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²⁾³⁾ KOICA에 따르면, 계약조건 내에 연차별 선금 지급한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계약서 상에도 연차별 지급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집행계획액은 구속력이 없으며,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이다.

한편 KOICA는 「국별협력사업 선금 신청 및 정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2025년 9월 입찰공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계획서 내 총 계약기간 및 연차별 기간, 총 계약금액 및 연차별 예산액을 각각 기재하고, 연차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내부적으로 권고하였다고 설명한다.

다만 집행계획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비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PMC 업체 내부에 유보되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는 않다.

집행계획은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R/D) 체결과 병행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각 연차별 사업진행도, 소요예산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ODA 특성상 사업진행 중 실제 집행계획 대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위 2건의 사례는 PMC 용역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집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었

1)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4조 ① 조달부서장은 성질상 수년을 요하거나 수년의 장기계약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총금액 또는 단가로서 총 소요예산 범위에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용역계약
2.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또는 물자의 운송 및 보험의 용역계약
3. 지속적으로 지원될 물자의 가격 안정과 지원장비의 설치·운용·사후관리가 중요시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4.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또는 규격에 따른 지원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
5.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
6. 기타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KOICA는 ODA 사업 특성 상 수원국 인허가 지연, 현지정세 변동 등으로 변경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인하여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예산관리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서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3) PMC 용역계약은 기술용역계약의 일종으로서 장기계속계약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것도 현행 규정 상 가능하다.

다면 계획 내 연차별 예산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위 2건 사례의 입찰공고시점이 2025년 8월이므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8월에 입찰공고한 다른 PMC 계약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연차별 집행계획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ODA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근거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KOICA는 내부규정인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위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 성질상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2년 이상 설정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은 장기계속계약의 선금에 대해서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적용하였더라면,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할 때, ODA의 특수성을 이유로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제3항4)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국외공사계약, 그 밖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 KOICA가 계약조건을

4)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국외공사계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방법 등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 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해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달리 설정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이때 국가계약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장기계속계약은 1~6호 중에서 열거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의 고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인다.⁵⁾

이상을 종합하면, ‘타지키스탄 농업용수 관개 관리 현대화 지원 사업’과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사업’은 연차별 집행계획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함에 따라 1차수 집행계획액을 초과한 수준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2건의 계약에서 집행계획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력은 없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수준의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KOICA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른 선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의사록(R/D)이 체결되기 전에 PMC 입찰공고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초 공고내용과 달리 PMC 과업 내용 및 집행계획 등이 변경되어 낙찰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KOICA는 이와 같은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은 사업대상, 총사업비 및 과업별 예산, 과업일정, 우리나라 및 수원기관 분담사항 등에 관하여 수원기관과 합의한 공식적인 문서이다.

5)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외교부훈령) 제19조에서 KOICA 이사장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행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KOICA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달리 정할 사항에 대하여 예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적용여부를 KOICA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외교부훈령) 제9조6)는 사업성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간 합의를 근거로 KOICA는 해당국 사업시행기관과 R/D 또는 사업시행조건합 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R/D 체결 여부를 일종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R/D는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하여 KOICA와 수원기관 간에 합의한 공식 문서로서, R/D 체결을 통해 ODA 추진에 필요한 수원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사업추진일정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R/D 체결을 통해서 수원국의 책임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KOICA는 모든 국가별 협력사업에 있어서 R/D를 체결해 왔다. 또한 KOICA도 R/D를 국가별 협력사업의 기관 간 약정 문서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KOICA는 사업추진을 위한 입찰공고 등 본격적인 착수시점을 R/D가 체결된 이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R/D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은 수원국 내 R/D 검토단계에서 해당 사업과 수원국 내 자체사업 간의 중복성을 이유로 현재 사업 취소를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PMC 입찰공고 등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은 R/D가 체결된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8월 이후 입찰 공고된 PMC 계약 중에서 R/D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실시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다. ‘우간다 부소가지역 혈액수혈체계 강화사업’과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의 경우 R/D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은 R/D를 체결하기 이전에 PMC 용역을 계약하였다.

6)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외교부훈령)

제9조(사업 추진시 법적기반) ① 대외무상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부간 무상원조기본협정 또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기초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부간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장은 협력단과 해당국 정부기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성격상 필요한 경우 정부간 합의를 근거로 협력단은 해당국 사업시행기관과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s) 또는 사업시행조건합의서(TOR: Terms of Reference)를 체결할 수 있다.

④ 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간 합의 또는 해당 협력기관간 합의 문안에는 "우리 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D 체결일, 입찰공고일 및 PMC 계약일]

프로젝트명	R/D 체결일	입찰공고일	PMC 계약일
우간다 부소가지역 혈액수혈체계 강화사업	2025.11.26.	2025.9.30.	2025.12.22.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026.2.12.	2025.9.19.	2025.12.5.

자료: KOICA 제출자료 및 조달시스템을 참고하여 재작성

KOICA는 PMC 입찰공고를 먼저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수원국에서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수원국의 요청사항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R/D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사업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던 업체들에게는 일종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입찰공고에는 보다 많은 수의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충분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

일례로 ‘방글라데시 디지털 지방자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사업(‘22~’26/800만달러)’의 경우 R/D 체결 전에 PMC 용역 입찰공고(‘22.9.30.)가 이루어졌고 낙찰자를 선정(개찰일자 ‘22.10.31.)하였으나, R/D 체결 단계에서 수원기관 협의도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3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을 취소하였다. 해당 사업에서 낙찰자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하는 등 낙찰자에게 일정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OICA는 R/D가 체결되기 이전에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경우를 보다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교부 소관 ODA는 일반회계 내 ①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 ②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 ③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외교부 ODA 프로그램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프로그램	2024 결산	2025 예산 ¹⁾ (A)	2025 결산(B)	집행	
					A-B	B/A
일반회계	국제기구분담금	707,173	798,335	782,670	15,665	98.0
	다자관계 협력 ²⁾	14,048	16,072	15,965	107	99.3
	국제개발협력	1,893,806	1,933,644	1,929,160	4,484	99.8

주: 1) 제2회 추정기준

2)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 진출지원 세부사업의 예산만 ODA로 분류됨

자료: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국가별 협력사업, 소규모 무상원조,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글로벌연수,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별 협력사업에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및 태평양·아프리카·중남미·중동CIS지역별로 설정된 4개 단위사업으로 분류된다.

4개 단위사업 예산에는 전액 사업출연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ODA 프로젝트 사업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획비용, 사업평가를 위한 비용 등 간접비도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합계액 7,908억 3,600만원 전액을 KOICA로 교부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내 4개 단위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2024 결산	2025 예산 ¹⁾ (A)	2025 결산(B)	집행	
				A-B	B/A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249,975	296,178	296,178	-	100.0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289,238	289,087	289,087	-	100.0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72,784	94,432	94,432	-	100.0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119,449	111,139	111,139	-	100.0
합 계	731,446	790,836	790,836	-	100.0

주: 1) 제2회 추경기준

1. 각 단위사업 내에는 OD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비용 등 간접비용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조정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달리 집행되는 문제가 심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외교부 및 KOICA는 연차별 실소요액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간접비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사업비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은 2021~202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6,02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을 전액 KOICA로 교부하였으며, KOICA는 전년도 이월액 28억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924억 1,400만원 중 5,63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다. KOICA는 예산현액 중 46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1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다.

KOICA의 불용액은 2026년 또는 2027년도 KOICA 자체수입으로 귀속되어 KOICA 기관운영 등에 사용된다.¹⁾

1) KOICA의 기관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지원(ODA)' 세부사업의 지출 총액에서 KOICA 자체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수치차 지원예산으로 편성한다. 그 외 국가별 협력사업,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글로벌 연수 등은 직접 사업비로서 KOICA 자체수입 규모의 증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측면이 있다.

[2021~2025년 국가별 협력사업(ODA)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¹⁾	
외교부 단계	예산	401,324	386,424	518,988	602,050	602,026	
	KOICA로 미교부	-	41,160	32,922	50,820	-	
KOICA 단계	전년도 이월액	3,857	4,668	1,368	2,586	2,865	
	조정 ²⁾	증액	79,572	61,875	82,316	98,955	121,251
		감액	△119,662	△60,662	△92,856	△99,663	△133,727
	예산현액	365,091	392,305	476,894	553,109	592,414	
	실집행액	336,532	371,534	455,493	537,214	563,603	
	다음연도 이월액	4,668	1,368	2,586	2,865	4,632	
	불용액	23,891	19,402	18,815	13,030	24,180	

주: 1) 2025년도 본예산은 6,238억 9,600만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21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음
 2)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내 인도적 지원(OD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등 국가별 협력사업(ODA)이 아닌 일부 세부사업들이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 조정증액 및 감액 규모가 다름
 자료: 외교부 및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 단계의 예산 대비 증액조정 비율은 2021년 19.8%에서 2023년 15.9%까지 감소하였으나, 2024년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20.1%까지 상승하였다. 감액조정 비율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2.2%로 상승하였다.

[2021~2025년 외교부 단계 예산 대비 예산조정 비율]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증액조정	19.8	16.0	15.9	16.4	20.1
감액조정	29.8	15.7	17.9	16.6	22.2

자료: 외교부 및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조정을 실시할 때 편성 예산과 예산현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집행률의 평가기준을 예산으로 할 경우와 예산현액으로 할 경우 간에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2025년에 KOICA가 수행한 국가별 협력사업은 총 445건이며, 이 중에서 제2회 추경 기준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422건²⁾이다. 422건의 사업 중에서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총 171건으로서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 구간별 사업 수]

(단위: 건, %)

예산 미편성 ¹⁾	예산 편성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3 (5.2)	61 (13.7)	27 (6.1)	32 (7.2)	51 (11.5)	98 (22.0)	153 (34.4)

주: 1) 제2회 추경 기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프로젝트임

1. 괄호 안은 전체 사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외교부 및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반면에 예산현액 기준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은 총 44건으로, 예산현액이 0원인 사업 29건을 제외한 416건의 사업 중 372건의 실집행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실집행률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분포가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수원국에서의 실집행가능성을 예산 편성 당시에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5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 구간별 사업 수]

(단위: 건, %)

예산현액 0원 ¹⁾	예산현액 존재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29 (6.5)	16 (3.6)	9 (2.0)	4 (0.9)	15 (3.4)	343 (77.1)	29 (6.5)

주: 1) 제2회 추경 기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을 감액한 프로젝트임

1. 괄호 안은 전체 사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외교부 및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참고로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된 사업 수는 12개이다.

ODA 프로젝트는 수원국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집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원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유받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만 현지에서의 사업진행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집행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확인된다.

일례로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21~’26)’은 지난 연도에 예산을 선집행한 사실을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동 사업은 수원국 현지 조달규정 상 일정 수준의 선금이 필요한 관계로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었던 금액을 2024년에 선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4년도 예산을 18억 2,700만원 증액하였고, 2024년도 예산현액 53억 4,200만원 중 52억 9,4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그 결과 2025년도 예산은 실제 소요 대비 과다계상됨에 따라 15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도 예산현액 4,700만원 중 1,4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수원국 측에 선금을 지급한 시점이 2024년 10월 22일이었음을 감안하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집행 소요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2024~2025회계연도 결산]

(단위: 백만원)

2024							2025
예산	조정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3,515	1,827	-	5,342	5,294	-	48	1,614
2025							2026
예산	조정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1,614	△1,567	-	47	14	-	33	75

자료: KOICA

한편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은 개별 사업 단위의 예산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이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ODA 자원배분 및 성과달성도를 점검할

때도 중요하다.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별·분야별 ODA 집행실적과 우리나라의 대외전략 간의 부합여부, 국익제고 성과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예산조정 규모가 클수록 관련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교부 및 KOICA는 국가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ODA 집행 현장의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집행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4기 중점협력국이 비공개되고 국가별로 편성·집행 중인 외교부 ODA 사업구조가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세부사업 단위로 집계되는 결산상 정보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연속성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3)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국제개발협력 규모 및 운용계획,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공개해왔다.

중점협력국 제도는 원조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일부 수원국들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후 해당 국가들을 중심으로 ODA 재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를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국가의 지원목표, 중점협력분야,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전후하여 중점협력국을 지정 또는 해제해왔는데, 2011~2025년 동안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었던 국가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도 2021~2025년 동안 지정된 제3기 중점협력국은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CIS 4개국 등 총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2025년 중점협력국 현황]

구분	국가	
제1기 중점협력국 (2011~ 2015년)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잠비크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대양주	솔로몬군도
제2기 중점협력국 (2016~ 2020년)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제3기 중점협력국 (2021~ 2025년)	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	가나,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동·CIS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자료: ODA 통합누리집(ODA Korea) 자료, 김영완, 「한국의 제1기 중점협력국 선정 효과 분석: 해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2017), 한국정치학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2월에 의결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제4기 중점협력국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4기 중점협력국의 목록을 대외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기본계획은 2026~2030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서 2030년까지는 중점협력국의 목록을 정부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국회 등 외부기관에는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우선 정부 등을 포함하여 중점협력국 목록의 대외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① 수원국의 수요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②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중점협력국 목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측에서는 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양자 ODA 재원의 70%를 중점협력국으로 투입한다'는 것이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② ODA 투명성 측면에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중점협력국 목록 공개여부에 대한 논거]

대외 공개	대외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달성 여부 점검 필요 ○ ODA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국 수요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 ○ 수원국과의 외교관계 고려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BMZ 2030을 통해 전략목표 하에서 파트너십을 재구성하면서, 양자협력·글로벌·벡서스 및 평화 파트너 국가 목록을 명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각자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지역 중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캐나다는 중점협력국 명단을 과거에 공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현재는 수요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⁴⁾

4)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해명자료,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다... 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 (5.11 연합뉴스) 관련, 2026.5.11.

[중점협력국 운영에 대한 외국 사례]

독일	BMZ 2030을 통해 전략적 목표에 따라 파트너십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협력 파트너: 에티오피아, 가나, 튀니지 등 ○글로벌 파트너: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등 ○넥서스 및 평화 파트너: 이라크, 남수단 등
네덜란드	국별 중점 지원주제에 따라 중점협력국을 유연하게 지정
영국	4대 전략적 우선순위 및 중점 지역(아프리카, 인도·태평양)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퇴치 및 여성·소녀 지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DR콩고, 탄자니아 등, ○기후변화 및 투자 파트너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베트남, 케냐 등 ○분쟁예방 및 인도적 지원: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시리아, 수단 등
일본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지 않고 대전략(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따라 지정학적 안보, 공급망, 최우선 지역(ASEAN 위주), 가치공유 등 고려하여 대상국 선정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기본계획 무상분야」(2026.1.)

한편 외교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 27개국에 대하여 국가단위로 세부사업을 편성·집행해왔다. 그런데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대외비공개로 결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는 사업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에 대하여 「제4차 무상분야 기본계획(2026~2030)」에 제시된 4대 전략목표(AI·디지털, 보건, 기후·에너지, 농촌개발) 기반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라 국가별 협력사업이 편성되었던 31개 세부사업이 7개 세부사업으로 재구성되고, 기존에는 내역사업 단위로 편성되었던 ODA 프로젝트가 내내역사업 단위로 편성될 예정이다.

[ODA 사업구조개편 중 국가별 협력사업 부분]

개편 전		→	개편 후	
세부사업	내역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부사업 13개 ¹⁾	ODA 프로젝트	아시아·태평양지역 국별협력사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 보건회복력 프로그램 ○ 기후·에너지 대응 프로그램 ○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 프로그램 ○ 일반 프로그램 	
가나, 에티오피아 등 세부사업 8개 ¹⁾	ODA 프로젝트	아프리카지역 국별협력사업 1개	위와 동일	
콜롬비아 등 세부사업 5개 ¹⁾	ODA 프로젝트	중남미지역 국별협력사업 1개	위와 동일	
우즈베키스탄 등 세부사업 5개 ¹⁾	ODA 프로젝트	중동·중앙아시아지역 국별협력사업 1개	위와 동일	
31개 세부사업 내 다자성양자 사업,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내역 또는 내내역으로 편성)		다자협력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 및 취약국지원 ○ 기후변화대응 지원 ○ 기술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 보건회복력 프로그램 ○ 기후·에너지 대응 프로그램 ○ 지속가능·안전 지역개발 프로그램 ○ 일반 프로그램 	
4개 세부사업 내 소규모무상원조 내역사업		소규모무상원조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지역 ○ 아프리카지역 ○ 중남미지역 ○ 중동중앙아시아지역 	
4개 세부사업 내 개발패키지형성컨설팅 내역사업		공공협력사업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협력 예비사업 ○ 공공협력 본사업 ○ 융합 ODA 연계 지원 	

주: 1) 다자성양자 사업, 분쟁 및 취약국 지원 사업, 소규모무상원조사업, 개발패키지형성컨설팅 사업은 제외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하여 2026회계연도까지의 세부사업 예결산상 정보가 2027회계연도 이후의 세부사업 예결산상 정보와 단절될 우려가 있다. 내실 있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위해서는 과거의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실적을 시계열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단위사업(지역)’-‘세부사업(국가)’-‘내역사업(ODA 프로젝트)’로 국가별 협력사업이 편성·집행되었으나, 향후 ‘세부사업(지역)’-‘내역사업(분야)’-‘내내역사업(ODA 프로젝트)’로 사업구조가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예결산 정보가 재구성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분류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과거의 예결산 정보를 비교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국가별 자원배분 및 집행실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사업구조 하에서는 국가별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⁵⁾

따라서 외교부는 2027년도 ODA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시계열 연속성이 확보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ODA는 특정 수원국 현지사정으로 해당 국가에서 수행되는 다수 사업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와 같은 사정이 언제부터 계속되었는지,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베트남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ODA 사업들의 R/D 체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미얀마·우크라이나의 경우 지역정세 불안정으로 해당 국가 내 ODA 사업 추진이 제한된 적이 있었다.

가. 현 황

공공외교 역량강화¹⁾ 사업은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지식 분야별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57억 6,800만원 중 14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다.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내역사업은 문화, 정책, 지식 등 3개 분야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은 범부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외교 전략과 수행체제를 수립하며 해외 친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외교 인프라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2025회계연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공외교 역량강화	15,754	15,754	14	-	15,768	14,599	-	1,169	18,857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12,285	12,285	14	-	12,299	11,524	-	775	13,809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1,134	1,134	-	-	1,134	911	-	223	1,10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631-403

「공공외교법」 제2조2)는 공공외교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고 정의한다. 즉 공공외교는 ① 문화공공외교, ② 지식공공외교, ③ 정책공공외교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외국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공무원, 학자 등과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도 ‘정책 공공외교’로서 공공외교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점공관 운영사업과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거점공관 운영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등 거시적 수준의 계획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각 공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이하 ‘거점공관 운영사업’)은 특정 국가 내에서의 정책공공외교 사업이 아니라 국제기구·지역기구와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또는 주재국 인근의 여러 국가·지역을 아우르는 정책공공외교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불어권, 스페인어권, 포르투갈어권, 아랍어권 및 아세안의 총 9개 권역을 설정한 후, 권역 내 재외공관이 복수의 재외공관과 협력하는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범지역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한다. 권역 내 개별 공관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하지는 않으며, 9개 권역에 속하는 공관에서 매년 신청하는 사업의 성격·내용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2025년도 예산은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공공외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거점공관 운영사업의 주요 연혁]

2019년	- 외교부 혁신 2기 과제 중 하나로 '거점공관을 통한 정책공공외교 강화' 선정 - 주미국대사관을 거점공관으로 선정하여 1년 간 시범운영
2020년	- 중국·일본·러시아 지역으로 확대 운영
2022년	- 기존 4개국에 더하여 4개 언어권 및 아세안을 포함시켜 총 9개 권역으로 사업 확대

자료: 외교부

한편 거점공관 운영사업과는 별개로 ② 미국 지역 정책공공외교 활동, 미국 현지 싱크탱크와의 공동 세미나 또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의 정책공공외교활동, 러시아에서의 정책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사업'(이하 '주요국 사업')이 운영 중이다. 또한 ③ 전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재외공관 정책 공공외교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외교 역량강화' 세부사업에서 재외공관의 정책공공외교를 지원하는 예산 사업은 총 3개가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내 재외공관들은 3개 사업 모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 지원 사업]

구분	거점공관 운영사업	주요국 사업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 사업
세부 사업	공공외교 역량강화		
내역 사업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지원 대상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불어권, 스페인어권, 포르투갈어권, 아랍어권, 아세안 9개 권역에 속한 모든 공관 (개별 공관을 거점공관으로 별도지정 x)	- 미국 지역 내 정책공공외교 - 미국 현지 싱크탱크와 공동 세미나 - 인태지역 글로벌 네트워크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정책공공외교 - 대러시아 정책공공외교	모든 재외공관
'25년 예산	4억 4,000만원	19억 5,600만원	23억 200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는 매년 초 3개 사업별 특성, 신청가능 대상 등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여 공관 스스로 행사 성격에 맞는 사업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 우선적으로 ‘주요국 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중복 여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 사업’에서 보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외교부는 ‘주요국 사업’ 및 ‘재외공관 정책공공외교 사업’은 특정 국가 내에서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반면에, ‘거점공관 사업’은 여러 국가·지역을 아우르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1~2025년 동안의 정책공공외교 사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거점공관 사업’과 ‘주요국 사업’ 간의 차별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1~2025년 거점공관 사업 및 주요국 사업의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시스템 구축 사업 (거점공관 사업)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사업 (주요국 사업)	
	국가 ¹⁾	집행액	국가 ¹⁾	집행액
2021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199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UAE, 몽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온두라스, 이집트, 캐나다, 캄보디아, 케냐, 태국, 독일, 홍콩, ○(대표부) 아세안	1,623
2022	○일본, 러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스페인, 오만, 인도네시아, 중국,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대표부) 아세안, 제네바	645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1,037

(단위: 백만원)

구분	거점공관 운영 및 협업시스템 구축 사업 (거점공관 사업)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사업 (주요국 사업)	
	국가 ¹⁾	집행액	국가 ¹⁾	집행액
2023	○일본, 미국, 브라질, 오만, 인도네시아 ○아세안, 제네바	413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1,496
2024	○일본, 러시아, 미국, 사우 디아라비아 ○(대표부) 아세안, 제네바	486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1,317
2025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일본, 체코 ○(대표부) 아세안, 유엔, 제네바	345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1,488

주: 1) 대표부를 구분하여 작성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선 9개 권역 중 3년 동안 지원실적이 없는 권역이 확인되었다. 중국 권역의 경우 2023년부터 ‘거점공관 사업’에서의 지원실적이 없는 반면에, ‘주요국 사업’에서는 중국에 위치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2021~2025년 동안 정책공공외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거점공관 사업’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9개 권역 모두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 권역을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동일한 목적 및 내용의 정책공공외교활동이 시행연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원사업에서 수행된 문제가 있다. 일본대사관에서 추진한 ‘청년 新조선통신사’는 2023~2024년 동안 ‘거점공관 사업’에서 지원하였으나, 2025년에는 ‘주요국 사업’에서 지원하였다. 해당 활동은 한일 청년들이 과거 조선통신사가 다녔던 지역들을 탐방하는 것으로서, 2023~2025년 동안 행사목적, 참가국가 및 탐방국가는 동일하고 탐방도시 등 일부 사항만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거점공관 사업’과 ‘주요국 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서 각각 예산을 편성한 만큼,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행사를 어떤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9개 권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의 재외공관을 지원한 문제가 있다. 2025년 체코대사관에서 추진한 ‘한-중유럽 컨퍼런스’를 ‘거점공관 사업’에서 지원하였는데, 체코가 9개 권역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해당 활동을 ‘거점공관 사업’에서 지원한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

이상을 종합하면, ‘거점공관 사업’과 ‘주요국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9개 권역에 포함됨에도 지원실적이 없는 권역이 있는 한편, 9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지원실적이 있는 재외공관이 있는 문제가 있다.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각 공관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전략과 정책공공외교 지원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의 정책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거시적 전략과 공관별 특성을 고려한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외교부는 체코가 9개 권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럽 내 범지역적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거점공관 운영사업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고 설명한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로서, APEC 회원 21개 정상 및 초청국(UAE) 정상, 국제기구(IMF, UN)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경주선언」¹⁾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의 혜택을 역외와도 공유하는 개방형 지역 주의를 추구하는 경제협력체이다. APEC 회원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이며, 3개 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경주에서 개최한 APEC 정상회의는 제32차 정상회의로서 2005년에 부산에서 개최한 정상회의 이후 20년만에 국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이다. APEC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고위관리회의, 장관급회의 등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주요 회의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비공식고위관리회의는 서울에서,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는 제주에서,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회의,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다른 회의들은 정상회의 장소인 경주에서 열렸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경주선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APEC 주제 하에 APEC 회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3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한 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상호연결된 지역 경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및 AI 전환에 따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협력할 필요가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너지·식량안보·환경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력과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2025 경주 APEC 관련 주요 회의]

회의명	회의일정	회의장소
비공식 고위관리회의	2024.12.9.~12.11.	서울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25.2.24.~3.9.	경주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25.5.3.~5.16.	제주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	2025.7.26.~8.15.	인천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	2025.10.21.~10.23.	인천
최종고위관리회의	2025.10.27.~10.28.	경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2025.10.29.~10.30.	경주
정상회의	2025.10.31.~11.1.	경주

자료: APEC 2025 홈페이지(<http://apec2025.kr>), 검색일: 2026.5.12.

6-1. 실집행 현황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현황

‘2025 APEC 의장국’ 사업¹⁾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단을 운영하고 주간회의 및 공식 제반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 APEC 의장국’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1,008억 3,0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을 통해서 만찬장(이하 ‘천년미소관’) 조성²⁾, 숙박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및 야외 문화행사 추진 등을 위하여 16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 이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방송광고 및 일간지 홍보 예산 10억원을 증액하였다. 그에 따라 ‘2025 APEC 의장국’ 사업의 2025년 최종예산은 1,181억 500만원이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181억 500만원 중 1,106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58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2025 APEC 의장국’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2025 APEC 의장국	100,830	118,105	-	-	118,105	110,618	1,600	5,887	32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한편 정상회의는 2025년에 종료되었으나, 행사결과 정리 및 의장국 인수인계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 3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3031-403

2) 만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년미소관을 건립하였으나, 참석인원의 변동을 고려하여 외부 호텔을 만찬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신에 천년미소관을 미국 및 중국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 행정절차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공동번영의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외교부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교부하였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보조사업 수행기간의 적절성,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동번영의 숲’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약 60,000㎡의 조경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이다. 당초 계획 상으로는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숲 조성을 완료하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³⁾으로 인하여 2025년 내에 설계용역도 완료하지 못하였다. 2026년 5월 기준 설계용역은 마무리되었으며, 잔금 집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번영의 숲 조성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경상북도	경주시
6,000	3,000	1,500	1,50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외교부는 2025년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위한 보조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3)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수행을 위해서 관계기관 간 협의, 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중 기타시설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특수시설로 되어있기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2025년 공동번영의 숲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교부일	2월 20일	4월 17일	7월 18일	-	-
교부금액	1,000	800	1,200	-	3,000
실집행액	-	1	83	-	84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았던 사업진행도 자료를 살펴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간이 2025년 5월 26일부터 2025년 9월 30일로 설정되었기에 정상회의 이전에 숲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설계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설계 종료 이후 입찰공고, 조성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10월말까지 조성을 완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4)는 최종교부 이전에 보조금의 사용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을 최소화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침을 고려할 때, 외교부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예산처공고)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번영의 숲 조성사업의 수행기간을 정상회의 이전까지로 설정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종료시점 설정이 면밀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25.1.23.)에서 자문위원들은 식재 적기, 과업별 추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APEC 이후에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⁵⁾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설계용역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사업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외교부는 공동번영의 숲 사업의 담당 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계획상 설정된 조성완료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수행했을 필요가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post-APEC을 위하여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에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이월신청(25.12.24.)하였으나, 외교부는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보조금 교부조건⁶⁾을 근거로 설계용역 잔금 1억 2,418만원에 대해서만 이월을 허용하였다. 조성공사를 위한 보조금 27억 9,180만원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해당 보조금의 반환기한을 2026년으로 설정하였다.⁷⁾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2026년도 예산에는 공동번영의 숲 조성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향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할 것이라 설명한다.

5) 자료: 경주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동번영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2025.12.)

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반환될 경우, 외교부 소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된다. 그런데 외교부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을 매년 72억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기에, 2026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세입이 초과수납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보조금 반환결정이 2025년 12월에 이루어졌기에 2026년도 수입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지만, 조성사업의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상회의 주간 전에 확인가능했을 것임을 감안하면 수입예산을 조정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직전년도 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을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는 불용액 27억 9,180만원을 외교부로 반납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연도 내 실집행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 문제가 있다. 특히 당초 보고된 설계기간을 감안할 때, 설계 종료 이후 정상회의 전까지 숲 조성을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 계획의 적절성, 보조금의 연도 내 실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2. APEC 미래번영기금에 대한 외국의 기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APEC 사업기금¹⁾에는 ① 일반 프로젝트 예산(General Project Account, GPA), ②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rade &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Account, TILF), ③ APEC 지원기금(APEC Support Fund, ASF)가 있으며, ASF는 다시 일반기금(General Fund)과 특별기금(Sub-funds)으로 구분된다. GPA는 APEC 의제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 TILF와 ASF 특별기금은 특정 주제에 해당되는 사업들만을 지원할 수 있다.

[APEC 사업기금 유형 및 지원내용]

일반 프로젝트 예산 (GPA)	APEC 의제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 (TILF)	자유롭고 원활한 무역·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상 각료급 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한 사업과 오사카 행동지침에 언급된 TILF를 위한 15개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함
APEC 지원기금 (ASF)	- 일반기금(General Fund): APEC 회원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함 - 특별기금(Sub-funds):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특정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에 지원함

자료: KIEP, 「APEC 사업추진체계와 활용방안」(2019.6.17.)

외교부는 ASF 특별기금의 형태로 APEC 미래번영기금²⁾을 조성(2025년)하여 APEC 역내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경제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① 교육·과학·정책 분야 청년 전문인력 간 지식교류, ②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첨단제조기술 등 디지털 분야 청년 역량강화, ③ 인구구조 변화, 환경문제 등 청년 주요 이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④ 실무훈련, 멘토링 등을 통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등 청년 주도 창업 지원, 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기술역량강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APEC 사업기금에 대한 설명은 APEC 홈페이지(www.apec.org) 및 KIEP, 「APEC 사업추진체계와 활용방안」(2019.6.17.)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코드: 일반회계 2131-404의 내역사업

화 사업의 5대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APEC 회원들의 다양한 청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APEC 사업기금이다.

외교부는 2025년 미래번영기금에 100만달러를 기여하였고, 2026년 이후에도 계속 100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다.

[미래번영기금 납부계획(안)]

(단위: 달러)

2025	2026	2027	2028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APEC 회원 간 공동협력을 통해서 회원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기금을 조성한 취지라는 점에서 기금 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금재원에 대한 다양한 회원들의 재원 공여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다른 APEC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래번영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요청서를 접수한 프로젝트는 총 8개(26.6.5.)이며, 이 중에서 다른 APEC 회원에서 제출한 프로젝트는 5개이다. 매년 반기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상반기 사업 선정절차는 연말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각 사업 주체가 자체 자금을 선집행한 후 사업이 종료되면 미래번영기금의 재원을 사용하여 사업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APEC 역내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PEC 내 사업기금을 조성한 취지가 회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회원들이 직면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세대의 취약성을 해소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번영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청년세대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 회원들이 재원을 공여함으로써 관련 지원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다른 회원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미래번영기금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SF 특별기금으로 운영 중인 APEC 기금은 총 16개이며, APEC 홈페이지 공시 기준 누적기여액이 가장 큰 특별기금은 2009년 설립된 Energy Efficiency, Low Carbon and Energy Resiliency Measures이며,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조성한 디지털혁신기금(Digital Innovation)이다.

[APEC ASF 특별기금 현황]

(단위: 백만달러)

ASF 특별기금명	설립년도	재원을 기여한 회원 현황	누적기여액 ¹⁾
Human Security	2006	대만, 러시아, 호주	6.65
Energy Efficiency, Low Carbon and Energy Resiliency Measures	2009	일본, 대만, 미국	26.1
Strengthening Economic Legal Infrastructure	2021	홍콩	2
Supply Chain Connectivity	2014	중국,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5.89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and Global Value Chains	2015	중국	3.4
Innovative Development, Economic Reform and Growth	2015	중국	3.5
Connectivity	2015	중국	2.8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016	캐나다, 대만	2.7
Women and the Economy	2017	호주, 대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4.71
Economic Development in Remote Areas	2019	호주	0.8
Digital Innovation (디지털혁신기금)	2019	우리나라, 호주, 대만	7.53
the Enhanced APEC Agenda on Structural Reform	2021	호주	2.2
Marine Debris Management and Innovation	2020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	2.64
Structural Reform and Sustainable Green Growth	2023	뉴질랜드, 대만	2.26
Promoting Digitalisation for Green Transitions	2024	중국	1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 (미래번영기금)	2025	우리나라	1

주: 1) APEC 홈페이지(www.apec.org)에 각 특별기금이 설립된 이후 회원별로 누적기여액이 공시 되어 있으나, 각 기금별 누적기여액의 집계시점이 상이할 수 있음

1. 굵은 글씨로 표시한 ASF 특별기금은 우리나라가 재원을 기여하는 기금임

자료: APEC 홈페이지(www.apec.org)(검색일: 2026.5.13.) 및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우리나라는 ASF 특별기금 중에서 ① 디지털혁신기금 및 ② 미래번영기금에만 재원을 기여하고 있는데, 2개 기금 모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기금에만 재원을 공여하는 중이므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른 APEC 회원이 미래번영기금에 재원을 공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요하다면 특별기금 중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기금을 탐색하여 재원을 공여하고 그 반대급부로 미래번영기금으로의 기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미래번영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기금으로의 재원공여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관운영 기본경비¹⁾는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기획조정실 소관 운영 기본경비로서, 외교부는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쉼터 상담센터 운영비를 기관운영 기본경비 내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내 일반용역비 2025년도 예산현액 25억 5,500만원 중 2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27,266	27,266	209	△50	27,425	24,173	943	2,309	28,113
일반용역비	2,675	2,675	-	△120	2,555	2,483	-	72	2,91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역량강화²⁾ 사업은 재외공관의 영사조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사고 예방·대응,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에서 해외안전 담당인력을 위한 별도의 상담서비스인 '해외안전 대응인력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42억 1,300만원 중 38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1-251

2) 코드: 일반회계 2731-401의 내역사업

[2025회계연도 재외국민 보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국민 보호	13,959	13,959	137	-	14,096	11,774	-	2,322	13,992
재외공관 영사 조력 제공 역량강화	4,216	4,216	-	△3	4,213	3,827	-	386	4,47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외교부 전체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쉼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재외공관에서 해외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하여 별도로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인력에 대한 상담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재외공관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쉼터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도, 2022년에 ‘해외안전 대응인력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하 ‘해외안전담당인력 상담사업’)을 신설하여 재외공관 내 해외안전 담당인력(행정직원 포함) 및 일부 영사협력원³⁾⁴⁾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영사협력원’은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자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서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적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는 자가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4) 전체 상담실적 중에서 영사협력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사협력원들은 재외공관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담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외교부에서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

구분	마음쉼터 상담센터	해외안전담당인력 상담사업
시작 연도	2015년	2022년
세부 사업	기관운영 기본경비	재외국민 보호
부서	기획조정실	영사안전국
대상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 근무 직원과 직원의 가족	해외안전 담당인력(행정직원 포함), 영사협력원 ¹⁾
지원 사항	(본부) 대면·전화·온라인 상담, 심리검사 등 (국립외교원) 1달 1번 방문상담 별도 제공 (재외공관)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재외공관 운영지원관 회의 계기 대면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및 심리진단 - 재외공관 방문상담 - 영사회의 계기 방문상담

주: 1) 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자로서,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자임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음쉼터 상담센터는 본부 및 국립외교원 근무자에게는 대면·전화·온라인 상담,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 근무자에게는 추가로 1달 1번 방문상담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 근무자에게는 전화 및 이메일 상담, 재외공관 운영지원관회의를 계기로 한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2025년 상담실적은 연평균 431건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부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이고, 그 다음이 재외공관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이다.

[2021~2025년 마음쉼터 상담센터 상담실적]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마음쉼터 상담센터	본부	미구분	미구분	263	242	238
	국립외교원			53	29	29
	재외공관			173	137	130
	합계			426	435	489

자료: 외교부

한편 해외안전인력 상담사업은 온라인 심리진단·상담 서비스와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2025년 동안 실적을 살펴보면, 방문상담 실적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2~2025년 해외안전인력 상담사업 전체 상담실적]

(단위: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온라인 심리진단	75	83	87	131
온라인 상담	47	56	52	58
재외공관 방문상담	155	267 ¹⁾	221 ¹⁾	136
영사회의 계기 방문상담	116	49	44	-

주: 1) 재외공관 방문상담 시 대면상담 및 피지컬케어를 받은 인원을 합산한 수치로서, 2022년과 2025년에는 피지컬케어를 제공하지 않았음

자료: 외교부

다만 마음쉼터 상담센터와 해외안전인력 상담사업 모두 재외공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재외공관의 해외안전업무의 특성상 직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충격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기에 담당인력들은 공무상 재해 고위험군에 포함되며, 이들을 위하여 강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대규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평시에 해외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인력들도 관련 대응업무에 투입될 수 있기에, 해당 인력들에게도 충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2년에 해외안전인력 상담사업을 신설한 이유 중 하나가 마음쉼터 상담센터에서는 재외공관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음쉼터 상담센터에서는 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하여 운영시간인 10:00~19:00 동안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재외공관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상담보다는 실제 대면상담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는 운영지원관 회의를 계기로 한 경우에만 대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아쉬운 측면도 있다.

한편 해외안전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도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심리상담 횟수 제한, 현지 공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고위험군의 케어가 최대 연 1회로 제한되는 등 불만족사항이 과거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에 '향후 해외안전인력 상담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외공관 근무자들을 위하여 마음쉼터 상담센터와 해외안전인력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두 사업 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자들을 위하여 충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립외교원 교수요원 및 연구원에게 정책연구비 및 일반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인건비 이관 필요

가. 현 황

국립외교원 기본경비¹⁾ 내 포상금 예산은 국립외교원 소속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급, 전임교수요원 및 전문경력관 연구원에 대한 일반연구비, 외교부 소속 직원의 우수 보고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5년도 포상금 예산현액 6억 7,700만원 중 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내 포상금 비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578	4,578	-	-	4,578	4,247	-	331	4,550
포상금	677	677	-	-	677	625	-	52	67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포상금 비목은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집행하기에 적합한 비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및 제수당 성격을 갖는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를 과거부터 계속하여 포상금으로 집행해왔으므로, 외교부는 포상금 내 인건비성 경비를 국립외교원 인건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기존 근무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할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18-251

국립외교원의 연구인력은 ①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성된 전임교수요원과 ② 전문경력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임교수요원은 「국립외교원법」을 근거 법률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봉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연구원은 현재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3)에 따라 연봉이 책정된다. 전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연봉 및 관련 수당은 국립외교원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다.

2)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시 등의 연봉 책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고원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학교(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그 호봉에서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3)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③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17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보다 적을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의 신분 및 연봉]

구분	신분	연봉
전임교수요원	특정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초임호봉을 획정한 후 봉급, 정근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연봉이 정해짐
연구원	전문경력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봉급, 정근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의 150퍼센트 이하에서 소속 장관이 연봉을 책정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내 포상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임교수요원 및 연구원에게 성과급 및 제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는 전임교수요원에게만 지급하는 ‘정책연구비’와 전임교수요원 및 연구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반연구비’로 구분된다.

정책연구비는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교수요원에게 과제별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액수당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연구비는 전년도 업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S, A, B, C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어서 성과급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포상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연구비 및 일반연구비 지급대상, 기준 및 금액]

구분	포상금(310-03목)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지급대상	전임교수요원	전임교수요원 및 전문경력관 연구원
지급기준 및 금액	당해연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수요원에게 과제별 400만원 지급	전년도 업무평가를 반영하여 4개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

자료: 외교부

2025년에는 2024년 업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연구비’를 지급하였으며, 정교수에게는 최대 3,100만원에서 최소 2,200만원을, 부교수에게는 최대 2,600만원에서 최소 2,400만원을, 조교수에게는 최대 2,500만원에서 최소 1,800만원을 지급했다. 연구원의 경우 최대 1,600만원에서 최소 1,4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25년도 일반연구비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총액	업무평가 등급	비율	인원	성과급 지급배수	실지급액 (1인/년)
전임 교수 요원	534	S	21%	4	110%	(정)31 / (부)0 / (조)25
		A	32%	6	103%	(정)29 / (부)26 / (조)23
		B	37%	7	95%	(정)26 / (부)24 / (조)21
		C	11%	2	80%	(정)22 / (부)0 / (조)18
연구원	534	S	17%	1	110%	16
		A	50%	3	103%	15
		B	33%	2	95%	14
		C	0%	0	80%	-

주: (정)은 교수, (부)는 부교수, (조)는 조교수를 의미함
자료: 외교부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비목에서 편성·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상금 비목으로 편성·집행함에 따라, 유사한 직급을 갖는 다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 포함)⁴⁾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포상금은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기에 적절한 비목이 아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은 ①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② 우체국 직원 또는 관서에 지급하는 예금 및 보험보상금, 경영평가보상금, ③ 표창부상금, ④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상금 비목의 편성 내역]

비 목	내 역
포상금 (310-03목)	○ 아래 해당 경비에 대하여 필수금액을 계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 직원 또는 관서에 지급하는 예금 및 보험보상금, 경영평가보상금 - 표창부상금 - 공무원제안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4) 국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며,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이므로 서울대학교 교수 등은 공무원이 아니다.

우선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은 유사한 직급에 해당하는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보다 더 큰 금액의 일반연구비를 지급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립외교원 연구원은 유사한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과 나군(일반임기제)의 성과급보다 더 큰 금액의 일반연구비를 지급받고 있다.

전임교수요원의 보수에 관하여 「국립외교원법」 제5조제7항5)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교육공무원법」 제34조6)는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현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 27)는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교수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및 지급배수(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급기준액은 국립외교원의 경우가 국립대학 교원보다 많고, 지급배수(비율)은 국립외교원의 경우가 국립대학 교원보다 적은 구조이다.

5) 「국립외교원법」

제5조(교수요원 등) ① ~ ⑥ (생략)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9조의2(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인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성과연봉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최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2배 이상에서 1.5배 미만, 평가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다음다음 상위의 교원에게는 성과연봉 기준액 이하로 하여 각각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성과연봉 기준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는 교원 중 해당 국립대학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교원을 선정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립대학의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립외교원 교수 및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2025년 기준)]

국립외교원			국립대학 교원		
지급기준액 (단위: 원)	(정교수)	123,193,000	지급기준액 (단위: 원)	(비정년)	3,606,000
	(부교수)	113,174,000		(정년)	5,072,000
	(조교수)	99,607,000			
지급배수	S	1.10	지급비율	S	1.5 이상 2 미만
	A	1.03		A	1.2 이상 1.5 미만
	B	0.95		B	1.0 이하
	C	0.80		C	없음

주: 국립외교원의 경우, 지급기준액과 지급배수 뿐만 아니라 평가등급별 대상인원, 포상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음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2025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지침」 및 「2025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2025.3.)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외교원 정교수를 기준으로 국립대학교 교원 성과급과 비교하면, 내부규정에 따라 정교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반연구비(=지급기준액 × 지급배수)는 국립대학교 정년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지급기준액 × 지급비율)보다 더 크다.

외교부는 평가등급별 대상인원, 포상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지급액을 산정하고 있기에 ‘지급기준액 × 지급배수’로 산출된 금액보다 적은 규모의 일반연구비를 실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반영하여 집행한 실지급액은 국립대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큰 수준이다.

일례로 성과평가 A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국립외교원 정교수에게는 2,864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립대학교 정년 교원은 최대 760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립외교원 정교수 및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급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립외교원 정교수 일반연구비		국립대학교 교원 성과급 지급액 ¹⁾	
	지급기준액 × 지급배수	실지급액	(정년)	(비정년)
S	135,512	30,589	7,608 이상 10,144 미만	5,409 이상 7,212 미만
A	126,889	28,643	6,086 이상 7,608 미만	4,327 이상 5,409 미만
B	117,033	26,418	5,072 이하	3,606 이하
C	98,554	22,247	-	-

주: 1) 「2025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의 지급기준액과 지급비율로 계산한 값임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2025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지침」 및 「2025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2025.3.)을 바탕으로 작성

다음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채용된 연구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해당 인력들은 일반임기제로 채용되었기에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데, 국립외교원 연구원의 일반연구비 지급기준액으로는 일반임기제 6~7호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평균을 적용하고 있다.⁸⁾

동일하게 일반임기제로 채용된 전문경력관 나군과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비교하면, 내부규정 상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반연구비(=지급기준액 × 지급배수)가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지급기준액 × 지급비율)보다 크다. 전임교수요원과 동일한 사유로 ‘지급기준액 × 지급배수’로 산출된 금액보다 적은 규모의 일반연구비를 실지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크다.

일례로 성과평가 A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국립외교원 연구원에게는 1,490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은 475만 4,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8)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34」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따르면, 일반임기제로 채용된 전문경력관 나군은 일반임기제 6, 7호의 연봉등급을 적용받는다. 이를 준용하여 평균값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및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 성과급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립외교원 연구원 일반연구비		일반임기제로 채용된 전문경력관 나군 ¹⁾
	지급기준액 × 지급배수	실지급액	
S	87,151	15,920	6,338 = 79,228 × 0.08
A	81,605	14,907	4,754 = 79,228 × 0.06
B	75,267	13,749	3,169 = 79,228 × 0.04
C	63,382	-	-

주: 1) 일반임기제 6~7호의 지급기준액 평균값을 사용하여 계산함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 「2025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지침」 및 「2025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다음으로 정책연구비는 정책연구보고서를 1년에 1건 작성한 전임교수요원 모두에게 4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연구보고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한편,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대한 연구·분석 및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전임교수요원의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의 하나로 해석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보수를 통해서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전임교수요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할 목적이라면 연구보고서 결과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일반연구비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인 반면에, 정책연구비는 당해 연도 업무실적 중 하나인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이므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포상금의 인건비 전환에 대하여 「국립외교원법」의 개정(2020.7.30. 시행)을 통해 교수요원의 신분을 특정직으로 전환하고 보수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기로 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연구비를 인건비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인건비 전환이 어려웠다고 설명한다.

또한 외교부는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에 관한 예규」를 신설하여 일반연구비 및 정책연구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외교원 인건비에는 성과급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국립대학교 교원과 달리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에게는 강의수당, 초과강의비, 관리업무수당,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 등을 신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연구비’가 성과급 뿐만 아니라 제수당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⁹⁾

다만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됨에도 포상금 비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과 각종 수당을 분리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도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지급하고 있는데,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및 연구원의 경우는 성과급 및 제수당을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인건비 예산은 매년 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반면에, 포상금 예산은 그 성격상 증액하기는 쉽지 않으며 대부분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다. 이는 국립외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립외교원 인건비 예산은 2014년에는 65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에는 101억 4,500만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2014~2026년 국립외교원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506	7,134	7,626	7,766	8,342	9,190	8,487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9,441	9,576	9,820	9,064	9,403	10,14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포상금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2014년에는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9년부터 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예산은 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9) 외교부는 연구 뿐만 아니라 외교관 후보자 강의, 학술활동, 본부와의 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일반연구비를 지급한다고 설명한다.

[2014~2026년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내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14~2018년 ¹⁾	2019~2026년
705	677

주: 1) 2014~2016년에는 '포상금등' 세목으로 지칭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향후 국립외교원 연구인력의 정원을 확대할 경우 포상금에서 일반연구비 등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인건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인건비는 정원 확대를 반영하여 증액되는 반면에, 포상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채용할 신규인력의 입장에서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증액되는 인건비 예산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외교부는 포상금 비목을 인건비 비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전임교수요원 및 연구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협의할 필요도 있다. 현재의 지급방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근무자들에게 일종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관계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에게 '정책연구비' 및 '일반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를 국립외교원 인건비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외교부의 ODA 사업을 담당하는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KOICA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기관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를 출연금 예산으로 보전받고 있다.

KOICA는 외교부 소관 ODA 사업 중 ‘국제기구 분담금’ 프로그램 내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유엔 PKO예산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 사업분담금과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세부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에 따라 KOICA의 2025년도 사업 예산은 1조 9,471억 6,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조 8,464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4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5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KOICA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은 ‘협력사업지원(ODA)’에 반영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지출소요의 합계에서 KOICA의 자체수입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즉, 해당 사업예산이 KOICA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지원에 해당한다.

[2025회계연도 협력사업지원(ODA)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협력사업지원 (ODA) ¹⁾	130,304	130,304	-	-	130,304	130,304	-	-	166,070

주: 1)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예산의 단순 합계이며 자체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1.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및 KOICA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는 청년층을 위한 해외봉사단, 인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에 반영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ODA)	143,026	143,026	-	2,062	145,088	145,088	-	-	127,24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한편 KOICA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코웍스를 설립하였고, 당시에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코웍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코웍스의 주요 사업은 KOICA로부터 위탁 받은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으로서, 그 재원은 '인도적지원(ODA)', '민관협력사업(ODA)',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글로벌연수(ODA)',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ODA)' 및 '협력사업지원(ODA)' 등 총 6개 세부사업 예산(2025년 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2021~2025년 KOICA가 코웍스와 체결한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최종 지급액
2021	'21년도 KOICA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위탁 통합계약	19,147	1.1.~12.31.	17,963
2022	'22년도 KOICA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위탁 통합계약	20,598	1.1.~12.31.	18,766
2023	'23년도 KOICA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위탁 통합계약	21,153	1.1.~12.31.	19,940
2024	'24년도 KOICA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위탁 통합계약	23,373	1.1.~12.31.	21,679
2025	'25년도 KOICA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위탁 통합계약	24,020	1.1.~12.31.	23,319

주: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등 여러 세부사업에서 집행된
자료: KOICA

9-1.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존 구성원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개발협력수당 정비 필요

가. 현황

인건비¹⁾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일반직 및 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등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협력사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KOICA는 2025년도 예산현액 514억 5,800만원 중 514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KOICA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협력사업지원 (ODA) ¹⁾	130,304	130,304	-	-	130,304	130,304	-	-	166,070
인건비 ²⁾	51,040	51,040	-	418	51,458	51,420	-	38	53,485

주: 1)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예산의 단순 합계이며 자체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2) KOICA의 실집행 기준

1.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및 KOICA

나. 분석의견

KOICA는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해야 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 이미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집행잔액 활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KOICA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436-401의 내역사업

KOICA는 직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2월 ‘개발협력수당’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의 예산집행 매뉴얼에 따라 당해연도의 ‘개발협력수당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수당은 KOICA 내부규정인 「보수규정」,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 등²⁾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연도별 예산집행매뉴얼에도 개발협력수당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집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서 개별 항목별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보수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거나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KOICA는 구체적 지급기준 없이 집행잔액을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개발협력수당의 총 지급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16~2025년 동안 총 지급액 규모는 최소 2,556만원 수준에서 최대 6억 4,191만원 수준으로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 같은 기간 지급대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도 개발협력수당 총 지급액과 같은 변동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다. 보수규정 등에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 예산항목으로 계상되었다면, 개발협력수당의 총 지급액과 지급대상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였을 것이지만, 현재 그와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개발협력수당은 신규 채용자의 근무시작 지연, 휴직자 및 퇴직자의 발생,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에 따라 매년 12월말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은 매년 변동될 수밖에 없고 11~12월쯤 그 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KOICA 직원들은 개발협력수당 항목으로 2022년에는 1인당 평균적으로 4만 4,000원을 수령한 반면에, 2016년에는 144만원을 수령하였다.

2) 해당 규정들에는 기본연봉, 직무급, 국내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다.

[2016~2025년 개발협력수당 지급 현황(1년 1회 연말 지급)]

(단위: 명, 천원)

연도	지급 대상 ¹⁾	총 지급액	1인당 평균 지급액
2016	354	510,000	1,440
2017	455	641,909	1,410
2018	517	542,627	1,049
2019	517	336,732	651
2020	537	497,642	926
2021	544	384,804	707
2022	574	25,561	44
2023	579	231,463	399
2024	602	463,187	769
2025	603	259,076	430

주: 1) 2016년에는 일반직만 지급하였고, 2017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
자료: KOICA

인건비 집행잔액을 사용하여 개발협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기에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건비 불용액은 과소계상될 수밖에 없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일반직 및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3,700만원이지만, 원칙적으로 불용시켜야하는 개발협력수당 지급액을 포함하면 실제 불용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증가한다.

[KOICA 일반회계 출연금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42,999	44,664	45,671	47,783	51,040
집행액 ¹⁾	42,995	44,663	45,670	47,771	51,003
개발협력수당	456	24	227	458	258
불용액	4	1	1	12	37

주: 1) 예비비로 편성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함
자료: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KOICA는 개발협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총인건비 인상을 한도는 준수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ODA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수당의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건비 운용은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한다.³⁾

그러나 기존 구성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방식이 아니다. 인건비 예산은 ① 기존 직원의 인건비, ②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분, ③ 신규직원 채용분 등으로 구성되므로, 이미 인건비 예산 편성 당시부터 기존 직원의 처우개선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KOICA와 노동조합 간 협의 하에 작성된 연도별 임금협약서에는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협력수당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인건비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다음연도 인건비 적정규모 판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구성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닐 것이다. 또한 KOICA 해외사무소 근무자에게는 국외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해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⁴⁾

총인건비 한도 내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중요한 것은 맞으나, 이는 보수규정 등에서 세부지급기준이 명문화되었거나 별도 예산항목으로 계상된 인건비에 한정하여 그 지급액의 증감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개발협력수당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연구개발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무부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인건비 집행잔액 만큼 배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KOICA는 개발협력수당 외의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연도별 「KOICA 예산집행 매뉴얼」에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발협력수당의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도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4) 직무수당의 한 형태로서 개발협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발협력수당 지급 시 직무에 따른 차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현재 별도로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R&D 과제수행으로 자체수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건비 집행잔액의 활용처에 대하여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건비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 수지차 지원금⁵⁾인 KOICA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⁶⁾

이상을 종합하면, 개발협력수당은 지급기준이 보수 관련 규정에 명문화되지도 않고 인건비 예산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지도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KOICA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존 구성원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개발협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 구성원 처우개선은 예산 편성 당시에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집행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KOICA는 개발협력수당의 지급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5) KOICA 자체수입은 과거에 발생한 사업비 불용액으로 구성된 전(전)년도 결산잉여금, 출연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실상 정부에서 지급한 사업출연금 및 그 결과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6) KOICA는 특정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액이 감소하였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용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퇴직연금적립 등 여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R&D 연구를 통해 자체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2. ODA 일반 자격증 시험 재검토 필요

가. 현황

연구조사 및 교육¹⁾ 사업은 ODA 교육원 및 도서관을 운영하고 ODA 관련 연구수행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력사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KOICA는 예산 현액 22억 4,100만원 중 22억 800만원을 실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협력사업지원(ODA)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협력사업지원 (ODA) ¹⁾	130,304	130,304	-	-	130,304	130,304	-	-	166,070
연구조사 및 교육 ²⁾	2,371	2,371	-	△130	2,241	2,208	-	34	2,029

주: 1)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예산의 단순 합계이며 자체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임

2) KOICA의 실집행 기준

1.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ODA 일반 자격증의 시험내용이 ODA 실무능력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자격증 활용처가 KOICA 유관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자격증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KOICA는 ODA 일반 자격증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ODA 일반 자격증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최근 동향, 이슈 등 개발협력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으로서, 201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총 16번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평균적으로 716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평균적으로 255명이 합격하였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436-401의 내역사업

[2016~2025년 ODA 일반 자격증시험 현황]

(단위: 명, %)

연도	회차	장소	접수자	응시자	응시율	합격자	합격률
2016	1회	서울, 부산	1,070	812	75.9	249	30.7
2017	2회	서울, 부산	749	552	73.7	274	49.6
	3회	서울, 부산	811	582	71.8	126	21.6
2018	4회	서울, 부산	637	491	77.1	230	46.8
	4회	서울, 부산	745	562	75.4	302	53.7
2019	6회	서울, 부산, 전주	1,217	940	77.2	299	31.8
2020	7회	서울, 부산	1,593	1,295	81.3	448	34.6
2021	8회	서울, 부산, 전주	1,447	1,089	75.3	187	17.2
2022	9회	온라인	1,009	690	68.4	352	51.0
	10회	온라인	953	725	76.1	250	34.5
2023	11회	서울, 전주	561	430	76.6	57	13.3
	12회	대전, 부산	590	449	76.1	170	37.9
2024	13회	서울, 전주	895	664	74.2	225	33.9
	14회	대전, 부산	737	568	77.1	217	38.2
2025	15회	서울, 대전	1,069	781	73.1	422	54.0
	16회	서울, 부산	1,077	823	76.4	276	33.5

자료: KOICA

KOICA는 국제개발협력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행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ODA 자격제도는 개발협력분야 관계자들 간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ODA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반 자격증시험에서 ODA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역량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KOICA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자격증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KOICA는 일반 자격제도의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ODA 일반 자격증은 실무역량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기 보다는 국제개발 협력의 역사, 이론적 배경 및 맥락 등을 측정하고 있어서, 실무역량을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역량과 관련 있는 PDM(Project Design Matrix)²⁾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일반 자격증시험에서 평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실무역량 보유에 대한 선별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운영해왔던 ‘오다(ODA) 전문가 자격증’ 시험과목에는 ‘KOICA 사업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어서 KOICA 사업의 실행체계, 프로젝트 관리와 PMC의 역할, PDM과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측정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격제도 개편을 통해 ‘ODA 일반 자격증’으로 변경³⁾되면서 ‘KOICA 사업의 이해’가 시험과목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실무적 지식보다는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배경이나 맥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실제 사업관리에 필요한 지식은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KOICA의 ODA 자격제도 개편 현황]

구분	오다(ODA) 전문가 자격증	ODA 일반 자격증
운영기간	2012~2015년	2016년~
시험과목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KOICA 사업의 이해’	‘국제개발협력 일반’,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이슈’
등급	1, 2급: 미도입 3급: 도입	등급제 미실시
시험 실시횟수	7회	16회 (2026.6.27. 17회 시험 예정)

자료: KOICA ODA 교육원 홈페이지(oda.koica.go.kr), 검색일: 2026.5.15.

2) PDM은 ODA 프로젝트 기획에 활용하는 논리모형으로서, 목적, 활동, 산출물, 성과, 영향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USAID에서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의 원조기관 및 UN기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KOICA도 도입하였다.

3) KOICA는 2015년부터 ODA 자격제도를 개편하여 ‘오다(ODA) 전문가 자격증’이 아닌 ‘ODA 일반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등급제를 전제로 운영하였다는 점과 ‘KOICA 사업의 이해’라는 과목을 포함했었다는 것이다. 2015년 개편을 시작할 당시에는 일반 자격과 전문가 자격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자격을 운영할 정도로 국내 국제개발협력분야가 성숙하지는 않았다는 판단 하에 일반 자격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자격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와 같은 목적은 KOICA와 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서 관련 분야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KOICA가 K-MOOC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교육 강좌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ICA가 의뢰한 「ODA 일반자격시험 고도화 연구」 결과보고서(21.3.)에 따르면, 관련 인재 채용 시 ODA 일반 자격보유자가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으나 현장 실무자급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답변하였다. 또한 그들은 ODA 일반자격보다는 현장경험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KOICA와 ODA 유관기관들에서도 현재 ODA 일반 자격증은 기초적 수준의 지식을 측정하고 있을 뿐 현장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 개발협력 분야 주요국에서는 자격제도보다는 교육이수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기에 KOICA의 ODA 일반자격과 같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특화된 자격제도는 없다고 한다. 그 대신 프로젝트 관리 전반에 대한 자격제도인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⁴⁾, CAPM(Certificate Associate in Project Management)⁵⁾, Prince2⁶⁾가 있다.⁷⁾

둘째, ODA 일반자격증의 활용처가 KOICA 유관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자격증 보유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닌 영역에서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4) PMP는 프로젝트 경영 분야 전문자격으로, 1984년 미국의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 석유화학, 담수 설비 등 대규모 플랜트 건설이나 항만,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자료: 한국능률협회, 「ODA 일반자격시험 고도화 연구」, 2021.3.)

5) CAPM 자격은 PMP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PMI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자격이다. 기존 PMP 자격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CAPM 자격을 신설하였다.(자료: 한국능률협회, 「ODA 일반자격시험 고도화 연구」, 2021.3.)

6) Prince2 자격은 영국 상무국(OGC)이 개발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으로 프로젝트 관리, 조직 제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자료: 한국능률협회, 「ODA 일반자격시험 고도화 연구」, 2021.3.)

7) 자료: 한국능률협회, 「ODA 일반자격시험 고도화 연구」(2021.3.)

우선 ODA 일반자격증의 보유자에게 KOICA 직원채용, WFK 해외봉사단 서류심사, YP 서류심사 및 글로벌협력의료진 서류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KOICA가 입찰공고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핵심투입인력이 ODA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자격증 활용처 모두 KOICA가 직접 연관된 경우이며, KOICA와 연관되지 않은 다른 활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ODA 일반 자격증 활용처]

구 분	내 용
KOICA 직원채용	KOICA 코디네이터, 일반직 채용절차에서 가산점 ¹⁾ 부여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선발	KOICA가 운영 중인 WFK 해외봉사단 선발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
입찰 제안요청서	KOICA가 입찰공고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핵심투입 인력에 대한 가점 부여
해외사무소 및 ODA 사업수행기관 YP(인턴)	YP 선발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
글로벌협력의료진	KOICA가 운영하는 글로벌협력의료진 선발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

주: 1) 2025년에는 KOICA 일반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배점의 1%를 가산점으로 인정함
 자료: KOICA 홈페이지

다음으로 제안서 평가 시 ODA 일반 자격증 보유자가 사업의 핵심투입인력⁸⁾으로 투입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ODA 프로젝트 성공가능성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라 낙찰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는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과거 수행실적, 업체의 재무상태 등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심투입인력의 ODA 자격증 보유여부는 사업수행능력과는 관련성이 낮은 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실현할 사회적 가치와도 상관성이 낮으므로, 정량평가 가점을 부여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8) KOICA는 핵심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업품질 및 성과에 직결되는 제안사 소속 핵심 인력으로,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정량평가 가점]

구분	평가항목 및 근거	배점
가점	A. KOICA와 계약실적 없는 업체	최대 0.5점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1) 중소기업부 장관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받은 자	0.5점 0.25점
	C.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2점 0.25점
	D.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2)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0.25점 0.5점
	E.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ESG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2.0점)
	F. 핵심투입인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ODA 전문가 자격증(ODA 전문가 자격증(3급) 또는 ODA 일반 자격증) 취득자인 경우 인당 0.5점 (최대 1점) 부여한다. 단, ODA 전문가 자격증(3급)과 ODA 일반 자격증 가산점은 중복 책정되지 아니한다.	인당 0.5점 (최대 1점)
	G. KOICA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KOICA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제재 시작일이 있는 경우 한함)	0.5점 (최대 2.5점)
감점	H. 제안서 형식 중 일부 서식을 미제출한 경우	건별 0.2점 (최대 0.4점)

주: A~E 항목의 가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분율 또는 분담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자료: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을 종합하면, 국제개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신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KOICA가 운영하는 ODA 일반 자격증제도는 실제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역량 보유에 대한 선별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KOICA를 제외한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자격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활용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KOICA에서는 용역 제안서 평가 시 자격증 보유자가 있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자격증 활용처를 확대할 목적으로 자격증 보유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KOICA는 ODA 자격증의 필요성 및 활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ODA 일반 자격증의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9-3. 기간제근로자인 KOICA 코디네이터의 해외사무소 상시적 업무 담당 부적절

가. 현황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¹⁾은 개발도상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쌓을 기회를 단계적으로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려는 것이다. 외교부는 2025년도 예산현액 1,450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ODA)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ODA)	143,026	143,026	-	2,062	145,088	145,088	-	-	127,24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기간제근로자인 KOICA 코디네이터가 해외사무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최대 23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KOICA는 해외사무소의 정·현원 차이를 분석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해외사무소 회계 및 홍보업무 등 사무소 내 상시적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435-401

KOICA 해외사무소에는 ① 소장, 부소장 등 정규직 직원, ② KOICA 코디네이터, ③ 인턴에 해당하는 영프로페셔널(YP), ④ 현지 채용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에서 KOICA 코디네이터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직원으로서, KOICA는 개발협력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향후 KOICA 정규직,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코디네이터의 근무기간은 파견일로부터 12개월이며, 업무평가 결과,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대 11개월 연장근무가 가능하다.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이며, 임금은 세전 기준 연간 5,121~8,59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부임여비, 주택임차료 등을 코디네이터에게 지원하고 있다.

[KOICA 코디네이터 근무여건]

근무 장소	KOICA 해외사무소
근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일로부터 12개월 ○ 희망수요, 업무평가 결과,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11개월까지 연장근무 가능
근무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 금) 세전 기준 연간 5,121~8,592만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지원내역) 귀부임여비, 주택임차료, 차량 공용사용 지원비 및 차량보험료, 생활환경개선비 및 생필품 구입비, 가족수당, 휴가비, 역량개발비 등

자료: KOICA, 「2025년 2차 KOICA 코디네이터 모집공고」(2025.6.)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까지는 해외봉사단 업무, 개발협력 일반업무, 현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각각 채용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직종 구분 없이 통합하여 채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2025년에는 총 133명의 코디네이터를 신규로 채용하였다.

[2021~2025년 코디네이터 신규채용 인원]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봉사단	32	19	37	통합 채용	통합 채용
개발협력	51	13	42		
안전	8	-	6		
합계	91	32	85	114	133

주: 2021~2023년에는 봉사단, 개발협력 및 안전 코디네이터로 구분하여 채용하였고, 2024년부터 코디네이터를 통합하여 채용시작

자료: KOICA

그런데 코디네이터가 해외사무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최대 23개월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는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코디네이터의 직무기술서를 살펴보면, 봉사단 관리 업무 등 특정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업무도 있으나, 해외사무소 회계처리 및 홍보업무 등 대부분은 상시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다.³⁾ 그에 따라 봉사단 업무 외 해외사무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들의 근로기간을 23개월(최초 12개월 + 11개월 연장) 설정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KOICA 코디네이터 직무수행내용]

구분	직무수행내용
사업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협력사업, 연수사업,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기구협력사업, 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 사업 기획 지원 및 운영 ○ 글로벌인재 수요발굴 및 기관 지원(수요발굴, 기관장 회의, 기관 모니터링 등) ○ 글로벌인재 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적응 훈련 및 현지어 평가 지원 - 보고서 관리 및 역량개발 활동 지원 - 현장 사업 및 협력 활동 지원 - 활동 물품 구매 및 조달 지원 - 워크숍 개최지원 등 ○ 글로벌인재 사업성과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단 국별목표관리제 모니터링 - 글로벌인재 역량 강화 지원 - 취창업 지원 과제 수립 및 이행지원 등 ○ 예비/신규 사업 발굴/형성/기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여건 분석 및 현지 조사 지원 - 기초선 조사 및 PDM 수립 지원 - 발굴, 형성, 기획 단계 조사 및 모니터링 지원 ○ 진행/종료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현장 방문 및 현황 점검 지원 - 중간/최종 성과관리 점검 지원 ○ 개발원조 관련 수원국 역량강화 지원

3) ODA 사업발굴·기획, 집행, 관리 등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는 중점협력국 등 일부 국가의 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직무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국가에서도 연도별 예산규모, 수원국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상시적 업무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분	직무수행내용
사무소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및 사무소 홍보 지원(SNS관리, 언론 대응 지원 등) ○ 사무소 및 파견인력 안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파견 인력의 안전사고 및 질병 등 대응 업무 수행 - 국별 안전 예방 지원(교육, 안전제도 이행, 안전 상황 보고 등) 및 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 비상대피 준비 및 안전사고 대응/후속조치 지원 - 국별 안전 관리 지침 작성 등 행정 업무 지원 ○ 사무소 운영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운영 및 파견인력 등 관련 경비 신청 및 정산 지원 - 사무소 지원사업 경비 신청 및 정산 지원(금전 출납관리 등 지원) - 사무소 자산구매 및 관리 지원 - 사무소 워크숍(파견 인력 포함 등) 개최지원
기타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 출장 및 사업 수행 출장자 발생 시 지원(출장 계획수립, 현장 조율 등) ○ 개인 경비 신청 및 정산 ○ 기타 개발협력 및 사무소 관리 관련 업무 수행 등
<p>※ 상기 업무 외 KOICA 해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획, 운영,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역량 및 사무소 사정에 따라 담당 업무는 사무소장 재량으로 변경/조정 가능함</p>	

자료: KOICA, 코디네이터 직무기술서(2025.6.)

KOICA는 코디네이터를 기간제로 채용한 것에 대하여 KOICA 정규직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 취업하기 위한 경력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21~2025년 코디네이터의 KOICA 정규직 및 국제기구 진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일정 인원들이 KOICA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국제기구로 진출하고 있다.

[2021~2025년 코디네이터의 KOICA 정규직 및 국제기구 진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KOICA 정규직	-	2	2	9	-
국제기구 진출자	5	6	12	19	21
합계	5	8	14	28	21

자료: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KOICA가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해외사무소의 정원미달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도 있어보인다.

KOICA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중 일반직 4~5급의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반면 해외사무소에서는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일반직 5급의 경우 국내사무소에서 정원 대비 27명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사무소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약 16명 부족하다.

이와 같은 정·현원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외사무소 근무인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에, 조직 내부적으로 현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KOICA는 현원을 재배치하기 보다는 코디네이터를 기간제로 채용하여 해외사무소 내 실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보인다.

[2021~2025년 KOICA 일반직 4·5급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4급	국내	정원(A)	95	98	98	108	108
		현원(B)	93.63	101	100.75	111.5	114.5
		B-A	△1.37	3	2.75	3.5	6.5
	해외 사무소	정원(A)	54	54	54	54	54
		현원(B)	38	40	38	46	46
		B-A	△16	△14	△16	△8	△8
5급	국내	정원(A)	121	125	122	133	133
		현원(B)	145.88	148	138.25	161.5	160
		B-A	24.88	23	16.25	28.5	27
	해외 사무소	정원(A)	57	57	57	58	58
		현원(B)	40	44	49	41	41.75
		B-A	△17	△13	△8	△17	△16.25

주: KOICA 일반직 6급의 경우 국내에는 직제상 정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해외사무소에는 직제상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제외하였음
 자료: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을 종합하면, 해외사무소 상시적 업무를 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기간을 최대 23개월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해외사무소에서 KOICA 일반직 4~5급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직이 담당해야 할 실무업무를 기간제 근로자인 코디네이터에게 분담시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코디네이터에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기에 일경험 제공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봉사단과 같이 일시적 수요에 대해서는 종전의 '봉사단 코디네이터'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나, 해외사무소 운영업무 등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⁴⁾ 따라서 KOICA는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해외사무소의 업무 중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직 직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KOICA는 청년들이 다양한 개발협력 업무 분야에서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봉사단, 개발협력, 안전 코디네이터를 통합채용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상시적 업무와 일시적 업무 모두 부여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9-4. 사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배당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저해 문제 등

가. 현황

코웁스는 KOICA에 파견되었던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KOICA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2018년 12월에 코웁스를 설립하였으며, 용역업체 소속인 행정지원직 168명과 시설관리직 135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 3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자회사에 채용하였다.

코웁스의 주요 사업은 KOICA로부터 위탁받은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으로, ODA 인재(봉사단 및 YP)모집선발, 민관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등에 대한 운영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KOICA가 코웁스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매년 변동하고 있다. 계약금액 중 ① 코웁스로 교부한 금액 중 집행잔액은 KOICA로 반납받아서 다음연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② 코웁스로 교부하지 않은 금액은 불용처리하여 KOICA의 결산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KOICA는 2024년 12월 중간배당을 통해 13억 2,9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여 2025년도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였다.

[2021~2025년 코웁스의 위탁계약 및 손익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탁 계약	계약금액	19,147	20,598	21,153	23,373	24,020
	최종지급	17,963	18,766	19,940	21,679	23,319
영업이익		558	415	822	96	337
당기순이익		671	467	658	190	329
기타포괄손익		60	319	△302	△197	△583
KOICA로 지급한 배당금		-	-	-	1,329	-

자료: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나. 분석의견

첫째, KOICA는 자회사인 코웍스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과도한 배당금을 수령하여 코웍스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코웍스의 자본변동표를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18억 4,100만원을 활용하여 13억 2,900만원만큼의 배당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 2024회계연도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대비 13억 3,600만원 감소한 14억 9,700만원이다. 해당 배당금 13억 2,900만원은 KOICA의 2025년도 자체수입으로 수납되었다.

한편 2025회계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 5억 500만원을 활용하여 무상증자를 하였고, 그 결과 자본금은 12억 9,1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미처분결손금이 4,900만원 발생한 문제가 있다.

[2024~2025회계연도 코웍스 자본변동표]

(단위: 천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자본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합계	자본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합계
1. 기초	991,950	1,841,157	2,833,107	991,950	505,290	1,497,240
2. 자본의 변동	-	(1,335,866)	(1,335,866)	300,000	(554,391)	(254,391)
① 포괄손익의 변동	-	(6,653)	(6,653)	-	(254,391)	(254,391)
(1) 당기순이익	-	190,333	190,333	-	329,096	329,096
(2) 기타포괄손익	-	(196,986)	(196,986)	-	(583,487)	(583,487)
②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1,329,213)	(1,329,213)	300,000	(300,000)	-
(1) 중간배당	-	(1,329,213)	(1,329,213)	-	-	-
(2) 무상증자	-	-	-	300,000	(300,000)	-
3. 기말	991,950	505,290	1,497,240	1,291,950	(49,101)	1,242,849

주: 기타포괄손익은 확정급여제도의 재추정요소로만 구성됨

자료: 코웍스, 「2025 감사보고서」(2026.2.)

KOICA¹⁾는 ① 2024년 12월에 실시한 배당 사유에 대하여 자회사 내부유보액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기에 KOICA로의 배당을 통해서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의견²⁾을 수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② 2025년에 실시한 무상증자 사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정원 300인 이상인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가 12.9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코웍스의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의견의 취지는 자회사의 재무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규모의 배당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무조건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2024.6.)에서도 코웍스의 자본금 규모가 정원 300인 이상인 자회사들의 평균 자본금 규모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4년에는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모의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2024~2025년 동안 KOICA는 코웍스의 재무상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없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여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정관」

제25조(총회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자본의 증가와 감소
2. 정관의 변경
3. 재무제표의 승인
- 4~7. (생략)

제28조(성립 및 의결) 주주총회는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2)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분석」(2023.7.27.), pp.177~181

둘째, KOICA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탁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자회사의 경영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에는 반납규정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는 코웍스와 체결한 위탁용역계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다음연도에 반납받을 수 있는 특수조건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자회사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특수조건을 포함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2024년도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에 대해서 KOICA와 코웍스 간 상호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포함한 후, 집행잔액을 그 다음연도에 반납받아 왔다. 한편 2025년도 계약의 경우 인건비, 고정경비 등 모든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의 특수조건을 포함하고, 집행잔액을 반납받았다.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위탁계약 특수조건 내 반납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반납규정	반납액 ¹⁾	
		용역경비잔액	이자수익
2021	코웍스는 비용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KOICA의 요청이 있을 시 잔액 및 예금이자를 반납함	538	30
2022	코웍스는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계약잔액에 대하여 KOICA와의 상호협의 하에 활용할 수 있음	359	6
2023	코웍스는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계약잔액에 대하여 KOICA와의 상호협의 하에 활용할 수 있음	472	12
2024	코웍스는 수탁사업비를 제외한 계약잔액에 대하여 KOICA와의 상호협의 하에 활용할 수 있음	1,012	12
2025	코웍스는 인건비, 고정경비, 변동경비, 예비비, 부가가치세는 정산 완료 후 그 잔액 및 예금이자를 반납함	59	2

주: 1) 반납액의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각 연도별 시설관리 및 사무지원 용역 통합계약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 도중 원가정산을 통하여 계약금액과 실제 집행액 간의 차액에 대하여 반납받는다. 그러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금액을 확정된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이행 도중 계약이 취소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KOICA가 코웍스와 체결한 계약은 개산가격으로 체결한 개산계약도 아니고 일부 비목의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도 아니므로, 확정계약에 해당될 것이다. 더욱이 계약의 이행이 다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 및 금액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성격의 계약도 아니다.

[계약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계약유형]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방법
개산계약	미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입찰 전에 추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계약방법

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누리집을 참고하여 재작성

이와 같은 점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특수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준정부기관인 KOICA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KOICA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운용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에 특수조건으로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³⁾

그러나 해당 계약은 확정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기에 자회사의 경영상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자회사에 유보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용역품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 구성원의 처우개선, 무상증자 등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킴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후 KOICA으로의 배당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KOICA는 위탁용역계약의 법적 성격, 자회사의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반납규정을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3) 예산운용 효율성의 관점에서, 위탁용역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매년 정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가격인하, 품질제고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가. 현황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은 외국과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KF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1)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고 있다. KF의 사업비, 기관운영비, 직원 인건비는 전부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지 않는다.

한편 KF는 사업추진 및 기관운영 등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16명이다. 이들 중 11명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타운영비'²⁾ 내 상용임금 비목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개별 세부사업인 '공공외교기반확대'³⁾, '글로벌 협력 강화'⁴⁾ 및 '글로벌문화교류'⁵⁾ 내 상용임금 비목으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

[무기계약직 근무지, 담당업무 및 인원]

세부사업	근무지	담당 업무	인원
기타운영비	제주, 서울, 부산	사무행정 등	11명
공공외교기반확대	제주	영문 교열원	1명
글로벌 협력 강화	제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명
글로벌문화교류	서울	KF 갤러리 운영	3명

자료: KF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2) 코드: 국제교류기금 7076-201

3) 코드: 국제교류기금 2633-403

4) 코드: 국제교류기금 2633-404

5) 코드: 국제교류기금 2634-402

4개 세부사업의 2025회계연도 상용임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운영비 내 상용임금의 당초 계획액은 8억 9,9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을 통해 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KF는 계획현액 11억 3,400만원 전액 집행하였다.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글로벌문화교류 사업 내 상용임금은 계획 변경 없이 당초 계획액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제교류기금 내 상용임금 비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운영비	899	1,134	-	1,134	1,134	-	-	932
공공외교 기반확대	47	47	-	47	47	-	-	47
글로벌 협력 강화	74	74	-	74	74	-	-	76
글로벌 문화교류	75	75	-	75	75	-	-	75

주: 각 세부사업 내 편성된 상용임금 비목의 예결산 금액만 작성
자료: KF

참고로 KF가 운영하는 국제교류기금의 사업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총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주요 사업인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문화교류’ 및 기금운영사업인 ‘기타운영비’ 세부사업에만 상용임금 비목이 편성·집행 중이다.

[국제교류기금의 사업구조]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글로벌 한국학 진흥	한국학기반확대
	국제협력네트워킹	글로벌인적교류
		정책공공외교강화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문화교류협력강화	한국문화해외확산
		글로벌문화교류
지정기부금운영	지정기부사업	
국제교류정보화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외교행정지원	기금운영비	인건비
		기타운영비

자료: KF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일반직 인건비 집행잔액을 자체변경 하여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인건비 운용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KF는 기금운용계획 작성 단계부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KF는 2019년부터 인건비 내 보수(110-01목)에서 기타운영비 내 상용임금(110-03목)으로 자체변경을 실시해왔다. 매년 KF는 그 해 발생할 일반직 인건비의 집행잔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만큼을 기타운영비 내 상용임금으로 자체변경하였다.

[2019~2025년 보수(110-01목)에서 상용임금(110-03목)으로 자체변경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2019	인건비	보수 (110-01)	110	기타 운영비	상용임금 (110-03)	110
2020			80			80
2021			70			70
2022			105			105
2023			190			190
2024			300			300
2025			235			235

자료: KF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한 상용임금을 기타운영비 내 인건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만 집행하지 않고,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글로벌문화교류 내 인건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도 집행하였다. 그에 따라 2025년에는 기타운영비 내 상용임금을 2억 3,500만원 증액한 후, 기타운영비 내 무기계약직에게 1억 5,200만 원을, 공공외교기반확대 내 무기계약직에게 300만 원을, 글로벌문화교류 내 무기계약직에게 8,0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상용임금 증액분의 세부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상용임금 증액분	세부사업			
		기타운영비	공공외교 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글로벌 문화교류
2019	110	95	2	6	7
2020	80	51	4	14	11
2021	70	36	-	15	19
2022	105	40	7	15	43
2023	190	116	-	19	55
2024	300	214	-	12	74
2025	235	152	3	-	80

자료: KF

KF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보수 비목의 집행잔액을 자체변경해왔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 당시에 공공외교기반확대 등 사업비 내 상용임금을 기타운영비로 이동시킬 것을 당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간 이동 없이 기존대로 집행하도록 결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인건비 집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보수에서 상용임금으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자체변경의 대상이 아니고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대상으로서, 지금까지 수행한 자체변경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다. 또한 추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기타운영비 상용임금을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및 글로벌문화교류 세부사업 인건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한 것도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내 예산집행지침은 타 비목에서 상용임금(110-03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금집행지침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자체 전용권의 위임범위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KF가 보수 비목에서 상용임금 비목으로 자체변경한 것은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에 덧붙여 기타운영비와 주요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용임금을 집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분야·부문·프로그램을 주요항목으로 분류하고 해당 항목의 지출금액 변경이 20% 이내⁶⁾로 발생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KF는 이에 대하여 집행지침 상 자체전용의 범위를 110목 전체 상호 간 자체전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실소요에 맞는 상용임금을 편성하고 보수 비목에서 상용임금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6) 금융성 이외의 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내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변경은 기금관리주체의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초과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기타운영비 내 인건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작성 당시에 처우개선분이 이미 반영되었으며, 개별 사업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비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의 처우개선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매년 기금운용계획 작성 단계에서 인건비를 증액편성해오고 있다. 또한 개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인력인 만큼 해당 인력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별 사업비의 조정을 통해서 인건비를 증감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⁷⁾

이상을 종합하면, 인건비 내 보수 비목의 집행잔액을 기타운영비 내 상용임금 비목으로 자체변경한 후 기타운영비 및 주요 사업비 내 상용임금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집행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작성 당시부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적정 규모로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KF는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적정 규모로 반영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여 채용된 인력에게 기관 전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KF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친 후 기관 전체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기타운영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F는 공공외교기반확대 세부사업에서 ‘국민공공외교활동’ 내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상용임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협력 강화 세부사업에서 ‘한중아 협력포럼 사무국’ 내역사업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상용임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별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무기계약직 등 특정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업무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7) KF는 이에 대하여 향후 개별 사업 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타운영비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외교기반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 편성 근거]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년도 상용임금 편성근거
공공외교기반확대 (국민공공외교활동)	사업수행인건비: 3,920,000원 × 1명 × 12개월 =4,700만원
글로벌 협력 강화 (한중양아협력포럼 사무국)	사업수행인건비: 3,083,333원 × 2명 × 12개월 =7,400만원

자료: KF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KF는 공공외교기반확대 사업의 인건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게는 기관 사업 전체에 대한 영문 교열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의 인건비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게는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들도 다른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근무지, 담당업무 및 인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건비 편성 목적	실제 업무	실제 근무부서
공공외교기반확대 (국민공공외교활동)	국민공공외교활동 사업 지원	기관 사업 전체에 대한 영문 교열업무	커뮤니케이션부 ¹⁾
글로벌 협력 강화 (한중양아협력포럼 사무국)	사무국 운영지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해외정책사업부 ²⁾

주: 1) 국민공공외교활동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님

2) 한중양아협력포럼 사무국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님

1. KF는 해당 인력들도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고 설명함

자료: KF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 제45조⁸⁾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85조⁹⁾는 기금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조를 준용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제교류기금을 운용·관리하는 KF도 기금지출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공외교기반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으로 채용한 무기계약직에게 세부사업 추진과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시키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KF는 기관 전체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타운영비’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공공외교기반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세부사업 내 상용임금을 기타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9) 「국가재정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재외동포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600만원이며, 15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26	1,026	1,026	1,553	1,553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78억 8,300만원이며, 이 중 94.7%인 1,021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7,063	107,063	107,883	102,186	2,908	2,789	94.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한편, 재외동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재외동포청의 자산은 148억 8,700만원, 부채는 6억 8,900만원으로 순자산은 141억 9,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6억 5,700만원, 유·무형자산 114억 8,000만원, 기타자산 17억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3억 3,200만원(△29.8%) 감소 하였다. 이는 용도폐지 토지·건물의 이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전년 대비 68억 1,2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8,600만원, 총당부채 6억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억 8,900만원(순증)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의기타총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총당부채가 6억 3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4,887	21,219	△6,332	△29.8
Ⅰ. 금융자산	1,657	1,607	50	3.1
Ⅱ. 유·무형자산	11,480	18,292	△6,812	△37.2
Ⅲ. 기타자산	1,750	1,320	430	32.6
부 채	689	-	689	순증
Ⅰ. 차입부채	86	-	86	순증
Ⅱ. 총당부채	603	-	603	순증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14,198	21,219	△7,021	△33.1
Ⅰ. 기본순자산	-	-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4,198	21,219	△7,021	△33.1
Ⅲ. 순자산 조정	-	-	-	-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066억 6,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31억 5,000만원, 관리운영비 250억 3,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5억 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64억 6,000만원(18.2%) 증가한 1,066억 6,600만원이며, 이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예산 집행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 대비 128억 2,8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1억 9,390만원과 운영비 63억 6,424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3,150	70,322	12,828	18.2
가. 프로그램 총원가	83,150	70,322	12,828	18.2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25,034	24,551	483	2.0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518	4,667	△3,149	△67.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06,666	90,206	16,460	18.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06,666	90,206	16,460	18.2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12억 1,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41억 9,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0억 2,100만원(△33.1%)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64억 6,0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38억 9,4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039억 3,86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2억 9,344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1,219	7,886	13,333	169.1
II. 재정운영결과	106,666	90,206	16,460	18.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9,645	103,539	△3,894	△3.8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4,198	21,219	△7,021	△33.1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은 정부에서 제출한대로 확정되었다.

재외동포청은 ① 현지 동포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목소리 반영**, ② 한글학교 운영지원, 재외동포 모국 초청연수 등을 통한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③ 사할린동포 지원, 국내동포 정착지원사업 등을 통한 **동포 보호·지원 확대** 등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착공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추가적인 지연요소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글학교 교사의 학위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료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현황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적기 건립 필요

가. 현황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¹⁾ 사업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공간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이하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²⁾ 출연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72억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동포 협력센터 출연	27,757	27,757	-	-	27,757	27,757	-	-	23,778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7,203	7,203	-	-	7,203	7,203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나. 분석의견

2021년부터 추진해왔던 교육문화센터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협의 등 추가적인 지연요소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5032-303의 내역사업

2)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재외동포기본법」의 개정(‘26.5.19.)으로 인하여 관련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면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예정(‘26.10.1. 시행)이다.

교육문화센터는 경기도 시흥시 내 서울대학교 부지에 건립되는 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99억 7,4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정부출연금 252억 5,300만원을 사용하여 설계,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의 기부금 47억 2,100만원은 토지보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문화센터 현황]

사업 위치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서울대학교 M1부지(배곧동 242번지)
사업 규모	연면적 7,063㎡(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2,214㎡
사업시행방법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원 조달	29,974백만원(정부출연금 25,253백만원, 기부금 4,721백만원)
사업 기간	2021~2029년 ¹⁾
총사업비	299억 7,400만원

주: 1) 현재 기준 종료시점은 2029년 6월임

자료: 재외동포청

당초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에 부지 선정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2021년도 예산에 설계비 12억 7,000만원을, 2022년도 예산에는 공사비 7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부지 후보였던 토지의 매입 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부지 재검토 및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일정이 지연되었고 설계비 및 공사비 총 84억 5,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2023년으로 이월하였다.

그 이후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협력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사업시행주체가 재외동포협력센터로 변경되었다. 2023~2024년 동안 서울대학교와의 시설사업 및 임대차 비용 협의³⁾를 진행하였는데, 관련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재외동포협력센터 내부에서 유보된 상태로 계속 이월되었다. 2024년 말 기준 78억 900만원의 미집행 출연금이 유보되었으며, 해당 출연금은 2025년으로 다시 이월되었다.

3) 현재 부지 임대기간은 최초 10년으로 하되 계약변경이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되었다. 임대차 비용은 연 9,255만원으로, 공시지가를 반영한 서울대 임대료에서 50%를 감면한 금액이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2025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기에 공사비 7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설계 및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였다.

건축허가를 접수한 이후 재외동포청은 2025년 12월 31일에 출연금 72억 3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관계로 중간설계에 소요된 3억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집행 출연금 146억 7,6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다.

[2021~2025년 교육문화센터 사업의 미집행 출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¹⁾	2024 ¹⁾	2025
설계비	1,270	1,270	623	623	287
공사비	-	7,186	7,186	7,186	14,389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	-	-	-
합 계	1,270	8,456	7,809	7,809	14,676

주: 1) 2023~2024년 동안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지 않음
 자료: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의 2025년도 주요 일정]

2025.1.	○설계용역 재개 및 중간설계 착수
2025.6.~9.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2025.9.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2025.10.	○건축허가를 위한 서울대학교의 토지 사용 동의서 확보
2025.11.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건축허가 접수 및 협의
2025.12.	○출연금 72억 300만원 교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 사업기간 2년 연장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교육문화센터 사업은 2021년에 설계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완공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거에 교부하였던 출연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월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실시설계 및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총사업비 협의 일정이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사유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의2제2항4)에 따라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한다.

재검토 작업이 2026년 하반기에 완료될 경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친 후 2027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2029년 상반기에 교육문화센터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사업추진일정 변경(안)]

진행단계 (주체)	원안 (협력센터)	변경(안)	소요기간 (최소)
기본설계 총사업비 협의 (기획예산처)	2025년 9월	2026년 11월 ~	1~2개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	2026년 1월 ~	8~10개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	2025년 12월	2027년 1월 ~	실시설계 4개월, 적정성검토 1개월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의 (기획예산처)	2026년 1월	2027년 6월 ~	1개월
부지 임대차계약 (서울대 ↔ 청/협력센터)	2025년 內 →2026년 1월	2027년 7월 ~	1개월
공사발주 및 계약 (청/협력센터)	2026년 2~3월	2027년 8월 ~	1개월
시공/착공 (건설업체)	2026년 4월 ~2028년 4월	2027년 9월 ~	18개월
준공/완공 (허가관청)	2028년 상반기 內	2029년 상반기 內	-

주: 진행단계는 당초 원안의 순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 4)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생략)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일정을 감안할 때,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2025년 12월 31일에 출연금 예산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에서 불용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⁵⁾ 기획예산처의 의뢰시점은 2026년 1월이지만 그 전에 부처 간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2026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집행 출연금에는 공사비 71억 8,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공사 발주가 가능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문화센터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교육 및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모국 내 차세대동포들의 정체성 교육 및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추진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기본법」의 개정('26.5.19.)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담당하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폐지('26.10.1.)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주체가 재외동포청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육문화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도 미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면밀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5) 재외동포청은 이에 대하여 교육문화센터의 취지, 동포사회의 염원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교부했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한글학교 교사육성¹⁾ 사업은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수능력 제고 및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지 연수, 초청 연수, 사이버 연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예산현액 25억 9,900만원 중 2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700만 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한글학교 교사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동포 교육 문화 지원	22,652	22,652	98	-	22,750	21,960	296	494	23,175
한글학교 교사육성	2,685	2,685	-	△86	2,599	2,292	-	307	2,64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나. 분석의견

한글학교 교사의 학위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료 이후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재외동포청은 현황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형규 예산분석관(hyunggyu3@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5032-301의 내역사업

한글학교²⁾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로서, 2025년 기준 총 1,464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14,867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비정규학교로서 대부분 주말에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채용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2023~2025년 한글학교 및 교사 현황]

(단위: 명, 개소)

구 분		2023	2024	2025
한글학교 교사 수	아시아	2,327	2,357	2,535
	대양주	909	870	904
	북미	8,181	8,476	8,566
	중남미	531	549	529
	유럽	1,173	1,184	1,291
	러시아·CIS	646	665	583
	아프리카·중동	425	425	459
	소 계	14,192	14,526	14,867
한글학교 수		1,462	1,456	1,464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① 한글학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내역사업, ② 교수 능력제고 및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 지연수, 초청연수, 사이버연수 등을 지원하는 ‘한글학교 교사육성’ 내역사업, ③ 재외동포 학습자 및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문화 등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는 ‘스터디코리아 운영’ 내역사업, ④ 지역별 맞춤형 역사·문화 등 수업보조자료를 지원하는 ‘교육자료 지원’ 내역사업을 운영하면서 한글학교 및 그 수강생을 지원하고 있다.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2025회계연도 한글학교 교사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글학교 역량강화	18,619	18,619	-	-	18,619	18,532	-	87	19,546
한글학교 교사 육성	2,685	2,685	-	△86	2,599	2,292	-	307	2,641
스터디코리아 운영	277	277	98	±267	375	290	79	6	159
교육자료 지원	432	432	-	±172	432	269	115	48	43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재외동포청

이 중에서도 ‘한글학교 교사 육성’ 내역사업에서는 한글학교 교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위취득 과정’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두 과정은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재외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 재직교사만 신청할 수 있다.

학위취득 과정은 총 2년(4개 학기) 동안 진행되고, 재외동포청은 학기당 최대 5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은 입학학기부터 연속하여 4개 학기까지만 이루어진다. 한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약 3개월(120시간 이상) 동안의 1회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외동포청은 5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각 과정을 수료하면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학위취득자는 2급 자격시험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는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위취득 과정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현황]

구분	학위취득 과정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목적	한글학교 교사역량 강화			
대상	재외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 재직교사			
지원 요건	전문대학 이상 졸업 (※3학년 편입생만 지원 ¹⁾)		만 20세 이상으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교육 기간	4개 학기 ※입학학기부터 연속 4개 학기 지원 ²⁾		약 3개월 과정 (120시간 이상)	
협력 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송실 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세대학교	
비용 부담	1개 학기 기준		재외동포청	54만원
	재외동포청	54만원		
	협력대학	등록금의 40% (등록금 137~156만원)	협력대학	수강료의 30% (총 교육비 83~86만원)
	자부담	22~40만원(18학점)	자부담	5만원
수료 혜택	- 학위 취득 - 한국어교원 자격 ³⁾ 시험(2급) 응시자격 획득		- 수료증서 - 한국어교원 자격 시험(3급) 응시자격 획득	
2025 예산	2억 3,180만원		1억 420만원	

- 주: 1) 1학년 신입생 및 기존 재학생은 재외동포청의 지원대상이 아님
 2) 매학기 한글학교 재직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함
 3)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자격제도로써,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함. 해당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정교사 자격과는 별개임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위취득 과정 선발자의 졸업현황을 살펴보면, 휴학, 자퇴 등의 사정으로 4학기 연속으로 등록한 후 졸업하는 인원이 크지는 않다. 2024년 1학기에 선발된 인원 136명 중 85명이 2026년 봄에 졸업하였다.

[학위취득 과정 선발자의 졸업현황]

(단위: 명)

입학시점	선발자	졸업시점				
		2024년 봄	2024년 가을	2025년 봄	2025년 가을	2026년 봄
2022년 1학기	108	67	15	6	3	-
2023년 1학기	118	-	-	59	21	10
2024년 1학기	136	-	-	-	-	85

주: 학위과정 선발자 전체 중에서 졸업한 인원내 관한 자료로서, 재외동포청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인원도 포함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한국어교원양성 과정 선발자는 2023년에는 55명이었으나 2024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180~190명 수준인데, 이는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에 개청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어교원양성 과정 신청자 및 선발자 현황]

(단위: 명)

2023			2024			2025		
신청자	선발자	경쟁률	신청자	선발자	경쟁률	신청자	선발자	경쟁률
56	55	1.01:1	191	186	1.02:1	193	190	1.01:1

주: 미선발 사유에는 한글학교 퇴직 등이 있음

자료: 재외동포청

그런데 사업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 수료 이후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지만, 재외동포청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한글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한글학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학교와 수강생을 지원하여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학위취득 과정'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미래의 한글학교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기에 최종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차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각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시험 합격률을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달성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가 비정규학교이며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개인별로 자격취득을 하고 있어서 졸업생의 자격취득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체 한글학교 교사 중에서 각 과정의 수료자 수는 많지 않기에 현황자료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교원 자격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학위취득 과정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5억 700만원이며, 14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6.5%인 12억 7,8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9,900만 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07	1,507	1,507	1,477	1,278	199	0	86.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20억 9,500만원이며, 이 중 85.9%인 2,854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5억 5,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8,907	328,647	332,095	285,427	5,109	41,559	85.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조 1,238억 4,800만원이며, 7,775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5.8%인 7,449억 2,700만원을 수납하고 242억 9,9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2억 9,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443,848	1,123,848	1,123,848	777,525	744,927	24,299	8,299	95.8

자료: 통일부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조 1,238억 4,800만원이며, 이 중 66.3%인 7,449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4,899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443,848	1,123,848	1,123,848	744,927	-	489,952	66.3

자료: 통일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34억 6,500만원 (△51.7%)이 감소한 21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5억 900만원 (52.1%)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300	1,507	1,507	1,278	△229	△22
기금	13,105	43,872	43,872	20,636	△23,236	7,531
합계	14,405	45,379	45,379	21,914	△23,465	7,50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5회계연도 통일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836억 6,300만원 (△68.2%)이 감소한 2,257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06억 1,000만원(△3.4%)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98,657	228,907	228,647	206,627	△22,020	7,970
기금	35,165	800,777	480,777	19,134	△461,643	△16,031
합계	233,822	1,029,684	709,424	225,761	△483,663	△8,06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통일부의 자산은 3조 7,110억 4,300만원, 부채는 2조 3,131억 1,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3,979억 2,4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조 2,967억 8,800만원, 유·무형자산 4,141억 8,500만원, 기타자산 6,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56억 8,900만원(△1.7%) 감소하

였다. 이는 투자증권이 남북협력기금의 완전위탁운용펀드 운용액 증가 및 주식 투자확대 등으로 162억 원 증가한 반면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 대여금 등 감소로 대여금이 684억 원 감소하여 금융자산이 전년대비 522억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2조 3,130억 6,300만원, 기타부채 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8억 1,800만원(△0.3%)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미지급금 및 미지급 이자의 감소 등으로 차입부채가 58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711,043	3,776,732	△65,689	△1.7
Ⅰ. 금융자산	3,296,788	3,348,949	△52,161	△1.6
Ⅱ. 유·무형자산	414,185	427,733	△13,548	△3.2
Ⅲ. 기타자산	69	49	20	40.4
부 채	2,313,118	2,318,936	△5,818	△0.3
Ⅰ. 차입부채	2,313,063	2,318,871	△5,808	△0.3
Ⅱ. 총당부채	0	0	0	0.0
Ⅲ. 기타부채	56	65	△10	△14.6
순 자 산	1,397,924	1,457,796	△59,872	△4.1
Ⅰ. 기본순자산	246,751	246,751	0	0.0
Ⅱ. 적립금및잉여금	1,056,036	1,108,686	△52,649	△4.7
Ⅲ. 순자산조정	95,137	102,359	△7,223	△7.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448억 8,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324억 300만원, 관리운영비 728억 6,600만원, 비배분비용 602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83억 4,500만원, 비배분수익 123억 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300억 1,500만원(200.2%) 증가한 3,448억 8,6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순원가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2,297억 6,100만원 증가 한데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남북관계 기반구축 프로그램(829억 2,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752억 1,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61억 1,700만원과 경비 267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602억 6,900만원, 기타비용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102억 1,800만원, 기타비용 2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24,059	△5,702	229,761	4,029.2
가. 프로그램 총원가	232,403	179,575	52,829	29.4
나. 프로그램 수익	△8,345	△185,277	176,932	△95.5
II. 관리운영비	72,866	71,032	1,834	2.6
III. 비배분비용	60,280	57,111	3,169	5.5
IV. 비배분수익	12,318	7,569	4,749	62.8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344,886	114,871	230,015	200.2
VI. 비교환수익 등	0	900	△900	△100.0
VII. 재정운영결과(V-VI)	344,886	113,971	230,915	202.6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4,577억 9,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3,979억 2,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98억 7,200만원(△4.1%)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3,448억 8,6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2,922억 3,700만원, 조정항목이 △72억 2,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309억 1,5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15억 7,600만원 감소,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33억 1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936억 6,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4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9억 4,7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42억 7,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457,796	1,261,877	195,919	15.5
II. 재정운영결과	344,886	113,971	230,915	202.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92,237	303,813	△11,576	△3.8
IV. 조정항목	△7,223	6,078	△13,301	△218.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397,924	1,457,796	△59,872	△4.1

자료: 통일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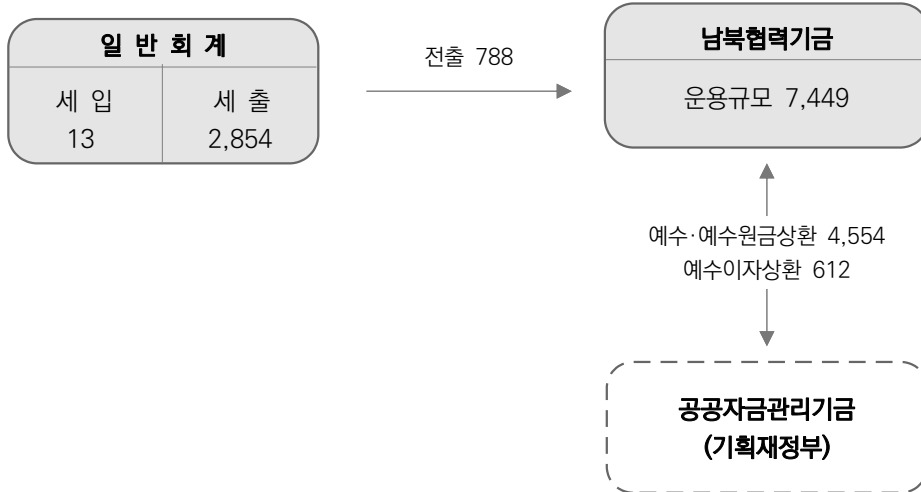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통일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788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4,554억원이 예수되었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4,554억원, 예수금 이자로 611억 8,800만원을 상환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통일교육 자료 개발 사업**, ② **통일업무추진 사업** 등이 있다.

통일교육 자료 개발 사업은 0.3억원이 감액(23.18억원 → 22.88억원)되었고, 통일업무추진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15억원이 감액(24.07억원 → 19.92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경협기반(용자)에서 253억원 감액(844억원 → 591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사업출연금) 피폭 실태조사 사업**이 있다. 피폭 실태조사 사업은 “탈북민 피폭 건강검진 결과가 핵실험 영향의 규명에 활용되도록 충실한 데이터 공개를 전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으로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¹⁾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통일부는 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③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④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⑤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통일, 북핵 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는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사업은 러시아에 대한 인식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채용 실적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위원회와 관련하여 국내 통일교육위원회는 경비 지원 편중, 예산 지원 수준 미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통일교육위원회는 지역별 활동 편차를 완화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계획 대비 미달한바,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맞물려 신청 및 초청 연수 실시 여건이 양호하지 않으므로 운영 실적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이월 과다 문제

가. 현 황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¹⁾은 現 북한자료센터²⁾를 확대·개편하여 통일 및 북한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학술·연구 지원, 정보교류·전시·체험·소통 등 사료관·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현액 169억 7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12,937	12,937	3,160	-	16,907	11,258	4,837	2	14,732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통일·북한도서관으로서의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대표 도서관, 북한자료 디지털화 및 대국민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통일사료의 체계적 수집·보관·전시를 위한 통일사료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치, 규모, 총사업비 등 건립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 1) 코드: 일반회계 1535-310. 2025년에 명칭을 확정하여 2026년 신규사업부터는 '국립평화통일자료원'으로 표기
- 2) 북한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 수집·축적·관리를 통하여 대국민 정보 서비스 제공, 북한실상 이해제고 및 북한 정세분석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5층에 자료실, 사무실, 서고 등 연면적 854㎡ 규모로 총 12만 여종의 도서 등 소장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공무원 4명, 공무원직 4명, 사회복지요원 1명 등 총 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개요]

구 분	개 요
건립위치	(당초)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1 → (변경) 대화동 2706
건립규모	부지 4,120㎡(1,246평), 건축연면적 8,463㎡(2,557평), 지하1·지상3층
총사업비	451억원 (보상비 177억, 공사비 226억, 시설부대경비 47억) * 총사업비 조정('25.2.)
주요시설	보존서고,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북한·특수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 연구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사무공간, 강당, 전시관 등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공사 초기 지하 건설폐기물 처리, 공사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일부 공정 지연으로 공사비 등에서 상당액의 이월액이 발생한바, 향후 건립 일정의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시의 부지변경 요청('23.11.10.) 등으로 건립 일정이 지연되어 2026년 말 준공, 2027년 개관으로 설립 일정이 지연되었다. 2025년 예산현액 160억 970만원 중 건설보상비 46억 1,100만원, 공사비 55억 4,800만원, 감리비 10억 7,8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 등 112억 5,800만원을 집행(집행률 69.9%)하고, 48억 3,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이월률 30.0%)하였으며, 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비목별 결산 및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건설보상비 (410-00)	4,611	4,611	-	-	-	4,611	4,611	-	-	1,758
공사비 (420-03)	7,552	7,552	2,820	-	-	10,372	5,548	4,823	-	11,279
감리비 (420-04)	747	747	338	-	-	1,085	1,078	6	2	1,687
시설부대비 (420-05)	27	27	2	-	-	29	21	8	-	8
합 계	12,937	12,937	3,160	-	-	16,097	11,258	4,837	2	14,732

자료: 통일부

2025년에는 기초 파일·흙막이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말 공정률은 45%이다.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당초 대비 사업 변경 계획은 다음과 같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계획 변경 내역]

당 초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계획 협의: '21.1.~12. • 기재부 예산 협의(총사업비 관리 등): '21.2.~12. • 부지 계약 및 매입: '22.9. • 기본 및 실시설계: '22.9.~'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변경 합의:'24.1.12. • 매매계약: '24.5.24. • 재설계: '24.3.~6. •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24.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조달 발주·계약: '23.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조달 발주·계약: '24.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및 공사: '23.11.~'25.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공 및 공사: '24.12.~'26.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26년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27년 초

자료: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구분	사업추진 경과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고양시 업무협약(MOU) 체결('22.3.23.) • 조달청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22.5.19.) • 통일부-고양시 부지매매계약 체결('22.9.2) • 설계용역 착수('22.9.15.)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용역 추진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23.10.) • 고양시, 부지변경 요청('23.11.)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변경 합의서 체결('24.1.) • 공유재산(부지) 변경 매매계약 체결('24.5.) • 토지보상비 등 총사업비 조정 완료('24.7.) • 재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24.8.1.) • 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24.8.30.) • 시공사 선정 등 계약체결(12.13.) 및 착공(12.16.)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실, 가설전기·수도 등 가설공사(1~2월) • 기초 파일공사(3~4월) • 흙막이(C.I.P) 및 터파기 등 토목공사(5~7월) • 지하1~지상2층 골조공사(8~12월) • 전기·통신·소방 배관·배선공사(8~12월)

자료: 통일부

위와 같이 고양시의 부지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건립 일정이 1년 가량 지연되었으며, 2024년에도 건축 공사 및 관련 감리 용역계약이 연도 말에 뒤늦게 체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의 상당 부분이 2025년으로 이월된 데 이어, 2025년에도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건립 착공 초기 동절기 착수로 인해 가설전기·상수도 설치 등에 필요한 공사 인허가 지연 및 지하층 토목공사 진행 중 지하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비의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계획대로 누적 공정률 45%를 달성하였으며, 2026.6.16. 현재 누적 공정률 65%로 연말 준공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연도별 공정률 현황 및 향후 계획]

구분	2025	2026
목표 누적 공정률	45%	100%
실제 누적 공정률	45% (연말 기준)	65% (6.16. 기준)
주요 공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무실, 가설전기·수도 등 가설 공사(1~2월) - 기초 파일공사(3~4월) - 흙막이(C.I.P) 및 터파기 등 토목공사 진행(5~7월) - 지하1층~지상2층 골조공사(8~12월) - 전기·통신·소방 배관·배선공사(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3층~지붕층 골조 공사(1~3월) - 철골, 방수, 타일, 조적, 창호, 미장 공사(3~7월) - 지붕·흡통·금속·도장·수장 공사(5~10월) - 조경 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6~11월) -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설비 공사 (1~11월) - 종합 시운전 및 준공(11~12월)

자료: 통일부

다만, 2026년 통일정보자료센터 준공 및 2027년 개관 준비를 위하여 2026년 예산에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설치를 위한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사업 예산 6억 8,500만원과 데이터 기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평화통일 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 36억 5,3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만큼, 2026년 말 준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26년도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5 결산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2,937	12,937	11,258	14,732	1,795	13.9
북한자료센터 운영	892	892	874	1,565	673	75.4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	22	22	22	685	663	3,013.6
국립평화통일자료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	-	3,653	3,653	순증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2026년 준공 일정에 맞추어 공정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¹⁾은 인도지원 협조체계 정비 및 정책개발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집행률 54.2%)하고,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131	131	-	-	131	71	-	60	131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은 인도주의적 필요성으로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래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23년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1031-300)의 내내역사업인 인도협력 플랫폼 사업으로 대북 민관협의 인도협력의 플랫폼 운영, 인도주의 청년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세부사업(3036-312)의 내역사업인 남북그린데탕트²⁾ 추진으로 계획수립 및 소통채널 구축, 국내외 지지기반 확충 사업 추진 등을 위해 3억원이 편성되었다가, 2024년도 예산에 기존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인도협력 플랫폼 예산 및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135-305

2) 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프랑스로 완화를 뜻하는 '데탕트(Détente)'를 결합한 단어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자원개발로 초래된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해 평화공존을 이루어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적 구상이다.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사업의 남북그린데탕트 추진기반 마련 예산을 폐지하고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 민간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위한 '인도지원 정책개발' 내역사업과 민관정책협의회,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국제기구 협력을 위한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동 사업의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인도지원 정책개발' 내역사업은 1,700만원 계획 대비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내역사업은 1억 1,400만원 계획 대비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2025회계연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집행
인도지원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 10 • 자료 발송 우편요금 1 • 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 1 • 전문가 간담회 3 • 유관기관 간담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 및 통역사례비 4 • 전문가 및 유관기관 간담회 5
	합계: 17	합계: 9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정책협의회 16 • 참석 사례비 및 회의자료 제작 등 10 • 자료 발송 우편요금 1 • 민간단체 의견수렴 출장 등 1 • 민간단체 방문 2 • 민관협의체 간담회 6 △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31 • 발제·통역 사례비 및 자료 제작비 18 •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11 • 전문가 간담회 2 △ 국제기구 협력 및 세미나 67 • 항공료·일비·숙박비·식비 13 • 포럼행사 운영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정책협의회 7 • 자문 및 통역사례비 3 • 회의자료 제작 등 2 • 민관협의체 간담회 2 △ 인도협력 전략세미나 운영 15 • 발제·통역사례비 및 자료제작비 3 •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10 • 전문가 간담회 2 △ 국제기구 협력 등 40 • 포럼 및 국제회의, 세미나 등 40
	합계: 114	합계: 62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구체적인 집행 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3회 개최하였고,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등을 3회 개최하였으며,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의 면담을 12회 실시하였고, 기후환경, 농·축산, 산림, 생태·생물,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13회 실시하였다고 제시하였다.

[2025회계연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 집행 실적]

구 분	실 적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평가 및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3회) • 한반도 기후환경협력 포럼 등 개최(3회) • UNICEF·WHO·WFP 등 국제기구와의 면담(12회) • 인도지원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법에 따른 접촉신고, 반출, UN 제재면제,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 민간단체·유관기관 협의 및 의견 수렴 등(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 농·축산, 산림, 생태·생물, 에너지 분야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하여 북한의 외부지원 거부 등 여건 미조성으로 대내외 행사 및 업무협의 규모를 조정하였고, 국제기구와의 면담 등을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는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우리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는 등 사업의 집행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나, 예산 편성 당시와 북한의 태도가 크게 변화한 점은 없다는 점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필요성을 들어 2024년부터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정책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는 점³⁾을 감안하면,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 세미나 등을 위해 해외출장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구호물품 지원이나 영유아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등 민생 협력 지원은 남북협력기금의 구호지원(2141-401) 및 민생협력지원(2141-402)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2024회계연도에도 집행률이 부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⁴⁾를 받고, 조치완료(2025.12.31.)로 조치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조치가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국내외 정세 및 인도 지원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적정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발굴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6.1.)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p>(18) 집행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동 세부사업의 예산현액 1억 5,4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됨 - 내역사업 '인도지원 정책개발'은 2,200만원 계획 대비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사업 '인도지원 민관국제 거버넌스 운영'은 1억 4,200만원 계획대비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3%)되어 실적이 저조함 - 통일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북한의 국경 봉쇄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해 대면 행사를 축소하고, 국제기구와의 실무면담을 화상으로 대체하는 등 국외출장 경비를 절감한 것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통일부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국내외 정세 및 인도 지원 여건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계획을 미흡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자체평가에서도 북한 내 유엔기구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인도지원 접근이 제한되는 등 북한 내 실질적 인도주의 활동 여건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초 위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국경봉쇄 및 국제기구 인력 미복귀 △외부지원 거부 입장 등에 따라 대규모 행사·국외출장 등 추진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미집행액 발생 - 향후 대북 소통채널 복구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협력사업 등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사업 적극 발굴 모색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일: 2025년 12월 31일

가. 현 황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¹⁾은 세계인의 한반도 통일, 북핵 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고 통일 공공외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일정책추진	1,756	1,756	-	△3	1,753	976	-	777	1,330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706	706	-	-	706	586	-	120	665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	300	-	-	300	266	-	34	30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2024년부터 통일, 북핵 등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파악하는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고,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533-307의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세계 시민의 한반도 통일 인식 및 지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당초 2024년 예산안에는 G7 및 APEC 21개국 등 28개국 최소 25,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실제로는 8개국 9,22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25년에도 국가와 문항의 변동은 있었으나 8개국 9,519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2024년 및 2025년 실시 내용 비교]

구분	2024	2025
조사대상국	8개국 (핵심국) 미국, 일본 (분단경험국) 독일, 베트남 (유럽)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인태국) 호주	8개국 (핵심국) 미국, 일본 (분단·체제전환국) 독일, 폴란드 (유럽) 이탈리아, 스웨덴 (영미) 캐나다 (아시아) 몽골
조사대상 인원	총 9,223명 (각 1,000명, 美 2,000명)	총 9,519명 (각 1,000명, 美 2,000명)
조사내용	통일, 북핵, 인권, 북한이탈주민	통일, 평화, 북핵, 남북한 인식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통일부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 응찰되어 통일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였다.

[2025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 계약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수행자	계약방법
2025 글로벌 통일인식 조사	2025.4.4. ~ 12.27.	2억 6,700만원	통일연구원	공개입찰→단일 응찰→수의계약 ¹⁾

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자료: 통일부

2025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국가 선정과 관련하여 2025년 조사로 G7 주요국은 모두 1회 이상 조사되었고, 핵심관련국인 미국과 일본은 매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 베트남,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키프로스 등의 국가와 인도-태평양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도 조사되었거나 향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동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도 향후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2025년 조사대상에서 한반도 통일의 주요 이해관계국이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외되어 있어 당초 계획하였던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국제제재 문제와 반간첩법 개정으로 사실상 여론조사가 어려운 중국의 상황으로 인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간접적 보완 방안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는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등은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현재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완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2026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러시아에 대한 조사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매년 조사하고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국가나 인도-태평양 국가까지 확대하여 매년 조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국가 시민들의 인식이 매년 변화할 가능성이 낮고 일부 국가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실시 주기나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²⁾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사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 중으로 조치결과를 보고(조치 예정일 2026.4.30.)하였으나,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한반도·국제정세 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하여 조사 결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정책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그 보완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 주기 및 조사 국가를 재검토하는 등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6.1.)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내역사업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의 내내역사업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는 총 사업비를 일반연구비로 계약하여 집행한 바, 인건비, 조사비, 회의비, 자문사례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각 항목별 산출 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전체 예산의 65.8%에 해당하는 조사비(1억 7,500만원)는 국가별 응답자 1인당 단가, 문항별 비용 등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책임연구원 등 인건비, 수용비, 등과 한국갤럽의 조사수행비, 기타 비용 간의 관계 및 구조도 모호한 실정임. 또한, 베트남의 경우 고학력 응답자가 과대 표집되는 등 표본 설계가 모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동 조사결과는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의 글로벌화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와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 중 ○ 조치예정일 : 2026년 4월 30일

<참 고>

[2025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

구분	국가별 문항		공통문항	
	문항수	문항 내용	문항수	문항 내용
미국	8	정당소속감, 한미동맹 필요성, 유럽안보에서의 미국 역할 등	78	[기본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주관적 계층인식 등 [배경지식] 언어, 인구, 수도, 체제 [태도] 국가별 인식(남·북·미·중·일·러), 남북한의 국가이미지(신뢰, 존중, 위협 등) [한반도 전반] 한반도 정세 관심, 한반도 평화 지지 여부, 북핵인식, 북한인권, 통일 필요성 및 가능성, 남북한의 자국 외교에서의 중요성, 북한과 자국 관계 평가, 북한과 대화 필요성 등
일본	8	한일관계전망, 북일 관계 전망, 북한과의 협상 추진 동의 여부 등		
독일	6	통일권유여부, 유럽안보에서의 미국 역할, 러시아 위협 인식, 미국 핵 확장억제 정책 신뢰 등		
폴란드	5	유럽안보에서의 미국 역할, 러시아 위협 인식, 미국 핵 확장억제 정책 신뢰 등		
이탈리아	6	한반도 중재자 역할, 유럽안보에서의 미국 역할, 러시아 위협 인식, 미국 핵 확장억제 정책 신뢰 등		
스웨덴	6	한반도 중재자 역할, 유럽안보에서의 미국 역할, 러시아 위협 인식, 미국 핵 확장억제 정책 신뢰 등		
캐나다	6	한반도 중재자 역할, 유럽안보에서의 미국 역할, 러시아 위협 인식, 미국 핵 확장억제 정책 신뢰 등		
몽골	4	몽골-북한 우호관계, 동북아에서 미국 역할, 한반도 중재자 역할 등		

자료: 통일부

[2025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국가별 분석 및 시사점]

구분	분석 및 시사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관계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 한미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소 낮으므로 한미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방안 필요 •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으므로 한국의 안보 및 평화 현황을 바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상호 간 안보 이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 필요 - 한국의 대북·평화정책이 북핵 위협을 완화하여 일본의 직접적 안보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한국이 북일 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대북 정책 추진 시 일본의 협력을 확보할 필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주의 외교 및 외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선호하므로 규범·외교·다자협력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및 외교력보다는 역지력 유지 및 위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젊은 세대가 한반도 이슈에 더욱 협조적인 것은 한류의 영향으로 보이며,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가능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국민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자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지지 강화를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선호는 연령과 이념에 따라 상이하며 남북한 통일과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 존재 • 가치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 '민주주의·평화·국제규범'이라는 캐나다 사회의 중요 가치와의 접점 강조 필요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국민이 남북한 모두를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문제 관련 중재자 역할 의지가 높은 특성을 존중, 한반도 평화에 있어 몽골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 • 북핵 위협을 억지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과 몽골 국민의 실용주의적 정책 선호가 부합함을 강조

자료: 통일부

가. 현 황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¹⁾은 「북한인권법」 제10조²⁾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재단 운영	475	475	-	-	475	-	-	475	475

자료: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으로, 「북한인권법」 제12조³⁾에 따른 재단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135-304

2)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재단사무실 설치 공사비 3억 7,500만원, 2개월분의 사무실 임차·관리비 1억원 등 4억 7,500만원으로 전액 미집행되었다.

[2025년도 예산 세부 편성내역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재단사무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공사비(인테리어, 전기·소방·설비 등) 365 ▪ 설계 및 감리·부대비 10 	375	-
사무실 임차·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분 사무실 임차·관리비 100 	100	-
합 계		475	-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2016년 8월에 5년간의 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4년간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사무실 원상복구비, 계약해지 위약금 등 총 24억 7,100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료·관리비 등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집행내역	집행액
2016	준비인력(4명) 인건비, 임대료 등	1,036
2017	2017년 상반기분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403
2018	2017년 하반기분 임대료·관리비, 사무실 원상복구비 등	533
2019	2018년 상반기분 임대료·관리비, 계약해지 위약금 등	499
합 계		2,471

자료: 통일부

그리고 출범예정 연도인 2016년 예비비 46억 7,600만원, 2017년 예산 117억 5,500만원, 2018년 예산 108억 5,800만원, 2019년 예산 8억원,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예산 4억 7,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다.

[2017년 이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7	11,755	11,755	-	11,755	-	-	-	11,755
2018	10,858	10,858	-	10,858	-	-	-	10,858
2019	800	800	-	800	-	-	-	800
2020	500	475	-	475	-	-	-	475
2021	475	475	-	475	-	-	-	475
2022	475	475	-	475	-	-	-	475
2023	475	475	-	475	-	-	-	475
2024	475	475	-	475	-	-	-	475
2025	475	475	-	475	-	-	-	475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면 재단 출범을 준비하는 약 2개월의 기간에 필요한 재단 사무실 임차료 및 설치공사비가 확보되어야 재단의 신속한 출범이 가능하므로 2025년 예산에 2개월분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단 운영·사업비 예산은 예비비 편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될 경우에도 이사 임명, 재단 설립 등기, 재단 사업자 등록 등 재단 설립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재단 사무실을 운영할 이유가 없고, 재단 이사 추천이 완료된 이후 예비비 신청을 통해 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한 후 재단 사무실을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외동포청 신설(2023.6.5.) 및 우주항공청 신설(2024.5.27.)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2022.9.27.)의 경우 사무공간 임차료 및 사무환경 조성 시설공사비 등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구성(2026.2.26.)의 경우 초기 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다.

따라서 재단 이사 추천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현 예산제도 내에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종사하는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및 서비스업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개년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 지표]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국민
경제활동참가율	61.3	63.0	63.4	64.1	64.8	65.6
고용률	56.7	59.2	60.5	60.1	61.3	63.8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직업유형(상위 5순위)]

(단위: %)

구분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024년	27.1	22.4	9.8	10.4	8.3
2025년	22.3	22.1	12.0	11.5	8.5
일반국민	14.0	12.4	23.0	1.4	7.7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직장에서의 지위(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2024년	79.0	53.5	12.5	12.9	21.0	19.8	1.2	
2025년	77.4	49.7	13.8	13.8	22.6	21.6	1.0	
성별	남성	71.9	47.5	9.4	15.0	28.1	27.8	0.3
	여성	79.6	50.6	15.7	13.3	20.4	19.0	1.4

자료: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남북하나재단)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의 질이 일반국민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1. 사회적경제 기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실적 부진

가. 현황

일자리 창출 사업¹⁾은 사회적경제 기업,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 및 고용 모범사업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7,100만원 중 6,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일자리 창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계획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086	35,086	-	35,086	35,086	-	-	36,625
일자리 창출	159	159	△88	71	66	5	-	128

자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나. 분석의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실적이 부진하므로, 지정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중소기업 등의 고용촉진 유도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자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은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331-302의 내내역사업

동 사업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사업,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개요]

구분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지정대상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²⁾ 을 갖추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고용요건(연평균 3명 이상, 연간 5퍼센트 이상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 ³⁾ △조직형태(중소기업)	△모범사업주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3년	3년	연 1회 공고
지원내용	△(통일부·재단) 사업개발비 및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추천 △(지자체) 재정지원(인건비 등) △(고용노동부) 경영 및 판로지원)	△모범사업주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홍보 지원 △사업개발비 및 경영컨설팅 지원 △우수 기업 포상 연계 등	△모범사업주 (3년 최대 3천만 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3년 최대 2천만 원) ※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반영하여 2026년부터 1천만 원 상향 지원
지원연혁	2013년부터	2022년부터	

자료: 남북하나재단

- 2)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통일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정요건은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 ②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③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④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할 것 ⑤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⑥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이다.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목표 4개 대비 2개 지정,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표 3개 대비 지정 기업이 없어,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업 실적 부진으로 예산액의 절반이 넘는 8,800만원이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내내역사업으로 계획변경되어 동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41.5%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70.8% 집행하였고, 2024년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39.0%를 집행하여 최근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2023	219	159	155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지원: 118 △ 자활사업 운영 지원: 37
2024	159	65	62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지원: 62
2025	159	71	66	△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지원: 66

자료: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은 최근 3년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부진 사유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기조 전환에 따른 예산 축소의 영향으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주요 재정 지원 예산 감소로 신청 유인이 부족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수가 감소했으며, 신청기업의 서류 및 심사 탈락으로 지정 수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간 5퍼센트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신청	지정
2023	7	3
2024	9	2
2025	8	-

자료: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의 경우 현재 남북하나 재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취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중 1명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은 약 1,990여 곳, 모범사업주 최저 고용조건인 북한이탈주민 3명 이상을 고용 중인 중소기업은 179곳(모범사업주 지정 이력 있는 기업 제외)으로 확인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우선 구매 지원제도가 도입⁴⁾된 이래 지정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10명→7명→5명→3명 고용)하였음에도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⁵⁾

참고로, 최근 3년간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및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현황,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현황]

연번	연도	기업명	업종	지정일
1	2023	(주)세한	수출	2023.4.28.
2		(주)메리	유통	
3		(주)우물	커피숍	
4	2024	복지나라재가서비스원	복지서비스	2024.7.2.
5		(사)평양민족통일예술단	공연예술	2024.12.10.
6	2025	해당없음		

자료: 남북하나재단

4) 2000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

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8318호)」 검토보고(2025.9.), p.4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현황]

연번	연도	기업명	업종	지정일
1	2023	(주)두남엔지니어링	건설(승강기)	2023.5.2
2		(주)에스지테크	제조(조립식가구)	
3		(주)크린필텍	제조(필터)	2023.12.11
4		티아이로지스(주)	물류(창고)	
5		(주)송도에스이	서비스(건물관리)	
6	2024	복지나라재가서비스원	복지서비스	2024.11.28.
7	2025	(주)유나이트	생활폐기물 운반	2025.6.2.
8		(주)지예산업	제조(운동기구)	2025.11.17

자료: 남북하나재단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고용사업체 재정지원 실적]

(단위: 천원)

연번	연도	기업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1	2023	(주)우림테크	공사장비구입	9,972
2		(주)세한	시설개선	15,000
3		백의민족	제조장비구입	12,300
4		임진강예술단	음향장비구입 등	10,000
5		(주)두남엔지니어링	공사장비구입	10,541
6		(주)메리	홈페이지구축 등	7,713
7		(주)우물	장비구입, 시설개선	6,093
8		(주)에스지테크	신제품개발비	18,000
9	2024	임진강예술단	무대복 제작	5,000
10		(주)에스지테크	시설개선	12,000
11		(주)우물	인테리어장비구입	10,000
12		티아이로지스(주)	향온향습창고 장비구입	10,000
13	2025	복지나라재가서비스원	장비 구입	5,845
14		사)평양민족통일예술단	장비 구입	11,952
15		(주)우물	장비 구입 등	3,736
16		(주)크린필텍	시설개선	20,000

자료: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실적 부진에 대하여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며, 신청기업 확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168곳)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신청기업 수가 적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심사경과
2208318	박충권의원	2025.2.20.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상시고용하는 사업주인 경우로 조정,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	소위계류
2208451	송옥주의원	2025.2.26.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사업주인 경우도 포함, 북한이탈주민 고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소위계류
2209537	송재봉의원	2025.4.2.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 지원 대상을 물품, 용역 및 공사로 확대	소위계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최근 3년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신청 및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신청	지정
2023	8	4
2024	1	1
2025	2	2

자료: 남북하나재단

다만, 동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게 되는 등 시장경쟁 왜곡의 가능성이 있고, 제한경쟁으로 가격·품질 경쟁이 감소되어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장애인·여성 관련 유사 제도와 비교 시 지원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여 관련 법체계와 충돌 소지가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⁶⁾이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실적 제고를 위해 지정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등에 대한 동 제도의 효과적 홍보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8318호)」 검토보고(2025.9.), pp.7~8.

5-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취업지원 사업¹⁾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직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현장 연수를 통해 기술 습득과 직업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 중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취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계획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35,086	35,086	-	35,086	35,086	-	-	36,625
취업지원	1,323	1,323	138	1,461	1,455	6	-	1,323

자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나. 분석의견

남북하나재단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재직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 특정기관을 제외하고는 채용 실적이 저조한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채용 실적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를 위해 2025년 처음으로 공공기관 대상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조사 및 채용 계획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331-302의 내내역사업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재직 현황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4.30.~5.22.
- 대상기관: 2025년 지정 공공기관 328곳
※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7곳, 기타공공기관 240곳
- 조사방법: 전자 공문 발송을 통한 현황 조사
- 조사내용: 북한이탈주민 재직 및 채용 관련 현황
(재직현황) 재직자 인적사항, 고용형태, 채용방법 등
(채용계획) 채용시기, 고용형태, 채용방법
(기타) 인사담당자 성명, 연락처

자료: 남북하나재단

조사 결과 328개 공공기관 중 225개 기관이 회신하여 응답률 68.6%를 보였으며, 총 23개 기관(전체 기관 대비 7.01%)에서 2025년 4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 177명(전체 인원²⁾ 대비 0.04%)이 재직 중이었다.

세부기관별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48명과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100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들은 1~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70.6%(125명)이며, 무기계약직(공무직)은 25.4%(45명)이다. 직급별로는 상위직급(1~4급 상당)이 12명, 하위 직급(5급 이하)이 114명으로 주로 하위 직급에 많이 재직 중이다.

2) 2024년말 공공기관 임직원 현원 총계는 395,978명(공기업 142,385명, 준정부기관 112,614명, 기타 공공기관 140,979명)이다(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단위: 명)

유형	기관명	주무부처	재직인원
공기업 (6)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1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1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1
	한국철도공사	국토교통부	1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1
준정부기관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1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1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1
기타공공기관 (1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통일부	1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청	1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	48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1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부	6
	통일연구원	국무조정실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부	1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1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1
계	23개 기관		176

자료: 남북하나재단

향후 채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채용계획이 있는 기관이 13.3%(30곳), 채용계획이 없는 기관이 28.9%(65곳), 미정 41.8%(94곳), 무응답 16%(36곳)로,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 또는 무응답인 곳이 채용계획이 있는 곳보다 많았다.

[향후 채용 계획]

(단위: 곳, %)

구분	채용계획 있음		채용계획 없음	미정	무응답	계
	2025년 상반기	2025년 하반기				
기관 수	10	20	65	94	36	225
비율(%)	4.44	8.89	28.89	41.78	16.00	100

자료: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재직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재직자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재직자 격려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재직자 간 소통, 애로 사항 청취 및 공유를 강화하고, 재직자 대상 업무 능력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경영평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고용 확대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사항 도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우수 인력 추천 등 협력 사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현재 공공기관 재직현황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채용 현황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미회신 기관에 대한 제재나 강제가 불가한 측면이 있고, 재직 현황 조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재직자 전체 성명 등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심사경과
2210919	송재봉의원	2025.6.18.	국가기관 등의 북한민 채용 현황 조사 실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 북한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소위계류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다음으로, 현재 남북하나재단은 공공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통일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채용현황 조사를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통일부장관이 국가³⁾와 지자체, 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하여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5년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친 정부 내 전체 북한이탈주민 채용 현황은 200명 내외로 머무르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치면 총 211명이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 34,314명의 0.61%에 해당하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수 1,153,971명⁴⁾의 0.02%에 해당한다.

3) 현재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포함하도록 그 대상을 국가로 확대하였다.

4) 인사혁신처,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2025.6.)

[정부 내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앙부처	합계	77	81	87	94	96	100
	공무원	35	38	37	38	38	37
	행정보조인력	43	43	50	56	58	63
지자체	합계	113	111	109	115	108	111
	공무원	87	81	79	79	75	82
	행정보조인력	26	30	30	36	33	29

자료: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인사혁신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현황 조사 및 개인정보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과의 협업, 공공부문 취업지원 체계 구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사업¹⁾²⁾은 통일교육위원,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3,644	3,644	2	3,646	3,545	-	100	3,957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1,423	1,423	2	1,425	1,409	-	16	1,291
지역통일교육 센터 허브화	50	50	-	50	50	-	-	52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통일교육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이 일부 교육위원에 편중되어 있고 예산 지원 수준도 미미하므로, 교육활동비 지원 현실화, 지원시스템 정비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5031-309의 내내역사업

2) 2023년까지는 사회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내역사업 내 '통일교육위원 운영시스템 선진화' 내내역사업이 있었으나 2024년 폐지되고 '지역통일교육센터 허브화' 내내역사업으로 변경되어 통일교육위원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위원회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제2항3) 및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제24기 위원은 총 1,000명이고, 2024년 5월 1일 위촉되어 임기는 2년이다. 국내 위원 809명, 해외 191명이며, 지역별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국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69	33	53	31	31	39	24	113
해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	52	42	49	36	28	41	34
해외	LA	오렌지·샌디에이고	뉴욕	플리델피아	워싱턴	도쿄	베이징	베를린
	50	15	24	28	27	20	15	12

자료: 통일부

3)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통일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위원회는 ①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②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③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교수, 교사, 교육전문직, 전문강사 등 교육과 관련된 위원이 전체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 자격요건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수	민간단체 관계자	교사	교육 전문직	전문 강사	직장인	사업자	연구원	기타 전문직	언론인	문화 예술인	기타
인원	242	171	111	44	24	94	86	60	48	25	22	73

자료: 통일부

국내 통일교육위원회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대국민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통일 박람회 및 토론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지원하며,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통일교육위원회는 지역 순회강좌, 자체 발굴 통일교육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의 통일교육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의 활동 실적('24년 5월 ~ '25년 12월)을 살펴보면,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 등으로 국내 7,405건, 해외 1,003건 등 총 8,408건을 실시 중이다.

[제24기 통일교육위원 활동 실적]

(단위: 건)

구분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	합계
국내	3,759	3,646	7,405
해외	509	494	1,003
합계	4,268	4,140	8,408

자료: 통일부

다음으로, 2025년도 통일교육위원 운영 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원 배지 제작 515만원, 국내 활동지원 1,592만원, 해외 활동지원 1,320만원, 통일교육위원 관련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1,575만원 등 총 5,002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년도 통일교육위원 운영 시스템 선진화 사업 세부 집행내역]

구분		세부내역	
위원 배지 제작		△5,154,000원 (견본 1,040,000원, 제작비용 4,114,000원)	
활동지원	국내	△활동경비 4,680,000원 (20명, 39회) △강사 사례비 4,990,000원 (24건, 14명, 7·8월) △통일신문 3,600,000원 (통일교육협의회, 센터, 통일관 등) △해촉관련 2,350,000원 (법률자문 1,350,000원, 심사 사례비 1,500,000원) △상장제작 297,000원 (25년 우수통일교육위원 원장표창, 24년 자유평화변영 통일청소년 그림공모전)	
		소계	15,917,000원
	해외	△2개지역 활동지원 5,646,330원 (LA, 필라델피아) △행사 물품지원 7,549,670원	
		소계	13,196,000원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 관련)	△사업성과평가 5,200,000원 (사례비 4,200,000원, 60부 인쇄비 1,000,000원) △물품구매 4,400,000원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원고 사례비 1,500,000원 △워크숍 자료집 1,001,000원 △워크숍 물품 구입 2,376,000원 △운영메뉴얼 880,000원 △상장 396,000원 (서울·경남센터 및 평화통일 유튜브 콘서트)		
	소계	15,753,000원	
합 계		50,020,000원	

자료: 통일부

그런데, 배지제작, 통일신문, 상장 제작 등 행정비용 및 간접비용을 제외한 통일교육위원의 통일교육 및 활동지원에 직접 소요된 경비만 산출해 보면, 국내위원의 경우 활동경비 및 강사 사례비 967만원과 해외위원의 활동지원비 1,320만원, 그리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워크숍 관련 경비 338만원 등 총 2,625만원에 그쳐 전체 예산 5,0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내 교육위원의 경우 해외 교육위원의 활동지원비를 제외한 직접 소요 경비 1,305만원을 국내위원 수 809명으로 나눈 1인당 직접 지원 경비는 1.6만원에 불과하여 지원 규모가 극히 미미하며, 해외 교육위원의 경우는 1인당 직접 지원 경비가 6.9만원 수준이다.

또한, 국내 위원들의 경우 활동경비와 강사 사례비를 지급한 인원은 34명, 건수는 63건에 불과하여 전체 국내 위원 대비 직접 경비 지급 비율이 4.2%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통일부는 이에 대하여 제24기 국내 통일교육위원의 활동 실적은 총 7,405건으로 통일교육위원들이 통일교육이나 행사 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별도로 비용에 대한 청구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제24기 위원 임기 종료로 2026.6월 제25기 통일교육위원 4,000여 명을 우선 위촉했으며, 하반기 중 국내외 위원 6,000여 명을 추가 위촉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는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교원 및 교수 위주로, 해외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등으로 위촉하면서, 통일교육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미미하고 활동 지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위원 수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부는 국내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이 편차 없이 고르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공유 활성화 및 통일교육위원 전담부서 설치 등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활동비 및 강사 사례비의 경우 교육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경우 지역별 활동 편차가 심하고 민주평통의 해외 자문위원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고르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위원들의 역할 재정립 및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협업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 통일교육위원은 지역 순회강좌, 자체 발굴 통일교육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의 통일교육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025년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세부 활동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총 849건을 실시하여 전체 행사 1,003건의 84.7%를 차지하고⁵⁾, 독일(베를린)의 경우 96건을 실시하여 전체 행사의 9.6%를 차지하고 있어⁶⁾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중국(베이징)의 경우는 활동 실적이 전무⁷⁾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활동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2025년도 해외 통일교육위원 세부 활동실적]

(단위: 건)

구 분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	합계
미국 (LA, 오렌지·샌디에이고,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411	438	849
일본(도쿄)	36	22	58
중국(베이징)	0	0	0
독일(베를린)	62	34	96
합 계	509	494	1,003

자료: 통일부

5) 전체 해외 통일교육위원 수(809명) 대비 미국 위원 수(144명) 비율은 75.4%이다.

6) 전체 해외 통일교육위원 수(809명) 대비 독일 위원 수(12명) 비율은 1.5%이다.

7) 통일부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반간첩법 개정 등으로 통일교육이나 통일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경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외 자문위원과 통일교육 및 통일 관련 행사 지원에 있어 그 역할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조직 및 규모, 예산 측면에서도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에 비해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에서 통일부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역할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역할이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해외 통일교육위원들이 통일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각종 통일 행사 운영 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해외 통일교육위원 및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비교]

구분	해외 통일교육위원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역할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관련 행사 지원	통일 공공외교 전개, 현지 통일 여론 수렴 및 건의
인원	191명	4,037명
조직	4개국 8개 도시	5개 지역회의 45개 지역협의회 137개국
예산	1,320만원	52억 1,100만원

주: 제24기 통일교육위원 및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기준, 예산은 2025년 결산 기준
 자료: 통일부 및 민주평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통일부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②6 통일부 해외통일교육위원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역할이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검토할 것	○ 해외 통일교육위원들이 통일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료와 자체 발굴 통일교육 활동에 대한 사례비 등 예산 지원, 통일행사 키트 제작·배포 등으로 각종 통일행사 운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통일부의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해외 통일교육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역할 차별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실효성 있는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은 공공외교 및 통일 여론 수렴, 자문활동 및 네트워킹에 집중하고, 해외 통일교육위원은 교육 활동 및 지원에 특화하는 등 두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 관련 행사 시 민주평통이 장소 대여, 예산, 홍보 등을 주관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통일교육위원이 강사로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정립하는 등의 방향 설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해외 통일교육위원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 역할 차별화 및 협업 모델 등을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¹⁾는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371억 3,500만원 중 76억 4,700만원을 수납(수납률 20.6%)하고, 217억 6,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기타민간이자수입²⁾은 남북 교역 및 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남한기업 앞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39억 6,000만원 중 8억 4,900만원을 수납(수납률 21.4%)하고, 25억 3,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22,560	22,560	22,560	37,135	7,647	21,762	7,725	15,777
기타민간이자 수입	3,856	3,856	3,856	3,960	849	2,537	574	3,856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수납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바, 대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고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75-754

2) 코드: 남북협력기금 54-54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 내외, 기타민간이자수입은 20~40% 대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남북경협 중단 및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협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협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73,099	36,798	9,218	17.0	32.4	27,580	-
2022	10,600	32,522	6,166	58.2	19.0	26,356	-
2023	18,241	32,178	5,280	28.9	16.4	26,898	-
2024	22,560	37,247	6,106	27.1	16.4	27,223	3,918
2025	22,560	37,135	7,647	33.9	20.6	21,762	7,725

자료: 통일부

[최근 5년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1	4,062	3,052	1,384	34.1	45.3	1,668	-
2022	3,411	2,513	804	23.6	32.0	1,709	-
2023	3,856	3,604	1,440	37.3	40.0	2,164	-
2024	3,856	4,530	1,498	38.8	33.1	2,893	139
2025	3,856	3,960	849	22.0	21.4	2,537	574

자료: 통일부

2025년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에 대한 대출잔액은 총 3,372억원으로 대출종류별 잔액 및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2025년 말 기준 대출종류별 잔액 및 대출조건]

(단위: 억원)

구 분	집행	회수 등	잔액	대출조건
교역자금대출 (‘00~’10)	716	669	47	연 1.0 ~ 1.5%
경협자금대출 ¹⁾ (‘01~’09)	2,387	1,328	1,015	연 1.0 ~ 1.5%
개성공단운영대출 (‘04~’23)	957	159	798	연 0.0%
특별대출 ²⁾ (‘10~’22)	2,278	810	1,512	(1차, 2차) 연 1.5 ~ 2.5% (3차) 연 1.5% (4차) 연 1.0% (개성공단 1, 2, 3차) 연 1.0%
합 계	6,788	2,966	3,372	

주: 1) 개성공단, 금강산, 기타지역 대상

2) 1차 특별(‘10~’11), 2차 특별(‘12), 3차 특별(‘14), 4차 특별(‘22), 개성공단 1차 특별(‘13), 개성공단 2차 특별(‘16), 개성공단 3차 특별(‘22)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는 2019년부터 1년마다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 말 기준 상환유예 원금은 2,382억원, 연체된 원금은 218억원, 이자는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환유예 대상 기업은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중 원리금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으로 남북협력기금 대출 연체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또는 조세체납 정보 등록 기업, 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통일부는 상환유예 지속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연도의 남북관계와 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실시 여부를 결정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기타민간이자수입 및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원리금상환 유예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상환유예 (원금)		연체 (원금)		연체 (이자)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2019	269	156,080	62	20,454	62	1,034
2020	264	225,722	68	22,003	68	1,138
2021	248	274,659	75	27,580	75	1,668
2022	230	176,008	52	26,356	52	1,709
2023	229	183,031	56	26,898	56	2,164
2024	212	174,581	42	27,223	42	2,893
2025	222	238,201	40	21,762	40	2,537

자료: 통일부

[연도별 원금 만기도래액, 상환액, 상환유예액, 미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대출 잔액 ¹⁾	364,980	356,893	350,008	366,077	362,457	352,718	337,203
만기도래액	183,658	258,562	311,832	209,344	215,491	207,512	266,727
상환액	6,984	10,165	9,054	6,316	5,536	5,810	6,763
상환유예	156,080	225,722	274,659	176,008	183,031	174,581	238,201
미상환액	20,594	22,674	28,118	27,020	26,924	27,121	21,762

주: 1) 연말 잔액, 환율 기준

한편, 통일부는 기금 건전성 및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에 대해 상각 및 불납결손 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체 기업 중 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조사 결과 회수 가능 재산이 없거나 ② 파산·면책 등 법적 절차가 완료된 부실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상각 처리 현황은 총 93개사, 215억 6,500만원이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불납결손 처리 현황은 27개사, 116억 4,300만원이다. 연도별 상각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실채권 연도별 상각 처리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 분	기업수	연체대출잔액
2011	7	1,055
2014	6	293
2016	5	742
2019	18	3,587
2022	30	4,245
2024	20	3,918
2025	7	7,725
계	93	21,565

자료: 통일부

[연체 원금 및 이자 불납결손 처리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기업수	원금	이자
2024	20	3,918	139
2025	7	7,725	574

자료: 통일부

그런데, 원금 및 이자의 저조한 상환율은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는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와는 달리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대출 채무 총액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 기업의 재무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와 지속적인 상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불납결손 처리를 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기업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여 부실채권에 대해 다각적인 회수 노력을 함과 동시에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불납결손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기금 조성액 중 사업비 및 기금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말하며, 통화금융기관예치와 비통화금융기관예치로 구분되어 운용된다.

통화금융기관예치¹⁾는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획득하는 것으로, 계획현액 48억 5,500만원 대비 7,600만원을 집행하였다.

비통화금융기관예치²⁾는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비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자산운용 수익을 획득하는 것으로, 계획현액 933억 1,900만원 대비 2,09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여유자금운용	94,334	98,174	98,174	209,205	-	-	50,862
통화금융기관예치	4,855	4,855	4,855	76	-	-	12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9,479	93,319	93,319	209,129	-	-	50,733

자료: 통일부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9710-970

2) 코드: 남북협력기금 9710-971

나. 분석의견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및 운영비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여유자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기금의 운용 규모를 산정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유자금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유자금 운용은 대부분 연기금투자물에 위탁 운용하고 있어 수익률에 있어서는 연기금투자물의 수익률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균)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물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1	176,342	157,474 (0.13%)	3,033 (0.80%)	154,441 (0.11%)	-
2022	162,545	153,801 (△0.42%)	150 (1.02%)	153,651 (△0.42%)	-
2023	163,361	175,124 (5.47%)	154 (1.51%)	174,970 (5.47%)	-
2024	190,091	181,072 (3.85%)	122 (1.50%)	180,950 (3.85%)	-
2025	209,205	205,809 (3.60%)	138 (1.40%)	205,671 (3.60%)	-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수입 구조는 용자원금 회수와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예수금 등 정부내부수입, 그리고 전년도 여유자금의 회수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여유자금 회수, 자체수입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구조는 경상 및 용자 사업비, 공자기금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상환 등 정부내부지출,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정부내부지출이 가장 크고, 여유자금운용, 사업비, 기금운영비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경협·교역·금강산 및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출을 실시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연초 여유자금회수 대비 연말 여유자금운영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유자금운영 규모도 2020년 1,419억 300만원 대비 2025년 2,092억 500만원으로 47.4%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 자금 회수	합계
	부담금	용자 원금 회수	재산수입	기타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2021	100	9,218	2,362	2,350	14,030	100,000	237,000	337,000	141,903	492,933
2022	12	6,166	2,193	1,120	9,491	100,000	105,500	205,500	176,342	391,333
2023	-	5,280	4,778	3,121	13,179	57,200	430,000	487,200	162,545	662,924
2024	-	6,106	4,671	2,328	13,105	100,000	520,000	620,000	163,361	796,466
2025	-	7,647	11,151	1,838	20,636	78,800	455,400	534,200	190,091	744,927

자료: 통일부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여유 자금 운용 ¹⁾	합계
	경상	용자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2021	28,877	2,302	31,179	-	283,074	283,074	2,338	176,342	492,933
2022	51,241	26,675	77,916	-	148,587	148,587	2,285	162,545	391,333
2023	20,407	2,027	22,434	-	474,873	474,873	2,256	163,361	662,924
2024	32,987	-	32,987	-	571,211	571,211	2,178	190,091	796,466
2025	16,510	-	16,510	-	516,588	516,588	2,624	209,205	744,927

주: 1) 연말 기준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출 내역 중 사업비 규모의 추이를 보면 남북관계 경색 및 국내외 정세 등으로 인해 사업비 규모는 2022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5년 말 여유자금 2,092억 500만원은 2023~2025년 최근 3년간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지출 평균액인 263억 2,600만원의 7.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남북협력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추가 공자기금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여유자금으로 일정 부분의 사업비는 충당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2026년의 경우 5월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집행실적은 71억 7,700만원에 불과한 수준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유자금운용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남북협력기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집행액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기금 운영비	여유 자금 운용
	당초	수정		경상	용자	소계	일반 회계	기금	소계		
2026	1,427,774	1,427,774	230,098	6,633	-	6,633	-	16,434	16,434	544	206,486

주: 5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협력 및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관계의 변동성과 향후 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보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여유자금 규모가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 수요,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기금의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공자기금 예수이자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상환하고 있는바, 여유자금은 남북관계 급변 시 사업 재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재원인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본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안정성과 향후 지출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자체 여유자금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사업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 추가적인 공자기금 예수 대신 일정 수준의 여유자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유자금의 운용 규모는 결국 남북협력기금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 예수금 등 정부내부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기금 전체의 운용 규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¹⁾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청소년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통일미래세대를 양성하고 민족공동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현액 12억 2,600만원 중 1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9,4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5,043	5,043	5,043	4,624	-	419	5,192
체험연수 및 프로 그램 운영	1,180	1,226	1,226	1,132	-	94	1,228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계획 대비 미달한바, 초중고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과 맞물려 신청 및 초청 연수 실시 여건이 양호하지 않으므로, 성인, 대학생 및 외국인 대상 참여를 제고하거나 찾아가는 연수 및 온라인연수를 활성화하는 등 운영 실적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1033-402의 내역사업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개관하여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간 인적교류 행사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청소년의 통일미래 리더십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은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시설관리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청소년 및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되는 당일, 1박2일, 2박3일 형태의 신청연수와 초청연수가 있고, 학교를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각종 행사 계기 통일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의 찾아가는 연수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연수가 있다.

[체험연수 프로그램 개요]

- 센터에서 진행되는 연수: △당일 △1박 2일 △2박 3일
 - 신청연수: 학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진행(신청측 비용 부담, 일부비용 센터지원)
 - 초청연수: 센터에서 초청하여 진행하는 연수(센터에서 비용 부담)
- 찾아가는 연수: 학교 방문 연수, 각종 행사 계기 통일체험 부스 운영
- 온라인 연수: 학교 등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체험연수 진행

자료: 통일부

2025년 통일체험연수의 성과지표는 통일체험연수 참여자 수로 설정하였는데, 목표 40,000명 대비 실적 36,578명으로 달성도는 91.4%이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목표 미달성 사유로 통일부는 현장 체험학습 사망 사고 인솔교사 유죄 선고('25.2월) 이후 일선 교사들의 현장체험 기피 분위기로 인해 체험학습 및 현장방문 등이 전반적으로 급감하는 추세에 있어, 학교 신청연수 취소 15개교 약 2,000여명, 소외계층 대상 온라인 연수 취소 약 1,200여 명이 발생하였고, 글로벌청년통일캠프 등 통일부 행사가 연계 취소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통일 필요성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연간 인원 최대치 39,999명(2018년)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도 목표 미달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부연하였다.

[최근 3년간 체험연수 참가 실적]

연도	프로그램명	참여 단체수	참여인원	성인	외국인	청소년(9세~24세)				
						소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23	신청연수	36	4,184	593	-	3,591	610	2,017	836	128
	초청연수	74	11,023	4,683	2,494	3,846	1,413	1,695	565	173
	찾아가는 연수	1	12,000	6,000	-	6,000	3,000	2,000	500	500
	온라인 연수	7	1,684	247	-	1,437	1,437	0	0	0
	합계	118	28,891	11,523	2,494	14,874	6,460	5,712	1,901	801
2024	신청연수	111	9,594	3,650	95	5,849	975	3,504	1,261	109
	초청연수	98	11,659	5,636	1,497	4,526	1,346	1,387	835	958
	찾아가는 연수	12	15,832	5,714	123	9,995	4,295	2,270	130	3,300
	온라인 연수	6	1,172	8	-	1,164	931	233	0	0
	합계	227	38,257	15,008	1,715	21,534	7,547	7,394	2,226	4,367
2025	신청연수	89	9,078	1,867	0	7,211	1,432	3,721	2,058	0
	초청연수	104	14,251	5,528	2,861	5,862	1,679	1,766	900	1,517
	찾아가는 연수	17	12,186	3,067	0	9,119	4,179	1,905	1,625	1,410
	온라인 연수	13	1,063	0	0	1,063	1,063	0	0	0
	합계	223	36,578	10,462	2,861	23,255	8,353	7,392	4,583	2,927

자료: 통일부

그런데, 최근 3년간 체험연수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실적이 증가하였다가 2025년에 감소하였는데 초중고 등 청소년 참여자는 오히려 2024년 17,167명에서 2025년 20,328명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생이 4,367명에서 2,927명으로, 성인이 15,008명에서 10,46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연수 형태별로도 신청연수는 9,594명에서 9,078명으로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초청연수는 11,659명에서 14,25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찾아가는 연수는 15,832명에서 12,18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찾아가는 연수의 감소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5년 초청연수 인원 실적 제고에 주력했던 점과 아울러, 미래센터 대국민개방행사 횟수 감소와 각종 박람회 등 타 지역 개최 통일체험부스 설치·운영 횟수가 줄어든 점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실적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상별로는 성인, 대학생, 외국인들의 참여가 증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거나 프로그램별로는 직접 찾아가는 연수나 온라인연수를 활성화하여 현장 위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등 통일체험연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00만원이며,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6.8%인 700만원을 수납하고 1,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은 없다.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	13	13	19	7	12	-	36.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57억 6,400만원으로, 이 중 97.4%인 348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5,764	35,764	35,764	34,840	-	924	97.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87억 4,0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순자산은 287조 4,00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282억 5,400만원, 무형자산 4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4,900만원(△0.5%) 감소하였다. 이는 감가상각 등으로 전년 대비 일반유형자산 9,600만원 감소, 무형자산 5,3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8,740	28,889	△149	△0.5
Ⅰ. 유동자산	-	-	-	-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28,254	28,350	△96	△0.3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86	539	△53	△9.8
Ⅵ.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28,740	28,889	△149	△0.5
Ⅰ. 기본순자산	12,237	12,23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535	△388	△147	△37.9
Ⅲ. 순자산 조정	17,038	17,040	△2	△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61억 3,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61억 4,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0억 5,900만원(3.0%) 증가한 361억 3,700만원이며, 이는 국가보조사업비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10억 5,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은 총 2개로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 프로그램(43억 5,600만원),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프로그램(317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으로 집계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6,144	35,085	1,059	3.0
가. 프로그램 총원가	36,144	35,085	1,059	3.0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7	7	-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137	35,078	1,059	3.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6,137	35,078	1,059	3.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88억 8,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87억 4,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억 4,900만원(△0.5%)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361억 3,700만원,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2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59억 9,000만원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59억 9,7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8,889	28,905	△16	△0.1
II. 재정운영결과	36,137	35,078	1,059	3.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5,990	35,064	926	2.6
IV. 조정항목	△2	△2	-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8,740	28,889	△149	△0.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조 4,018억 8,700만원이며, 1조 7,850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6.4%인 1조 5,423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2,375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1억 6,3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29,476	329,476	329,476	568,842	334,345	231,297	3,200	58.8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572,137	572,137	572,137	595,784	592,906	2,868	9	99.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500,274	1,500,274	1,500,274	620,467	615,122	3,392	1,954	99.1
합계	2,401,887	2,401,887	2,401,887	1,785,093	1,542,373	237,557	5,163	86.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조 3,913억 9,300만원이며, 이 중 94.5%인 43조 8,566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7,963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7,383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3,400,743	43,540,241	44,211,107	42,669,084	768,514	773,509	96.5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572,137	572,137	607,691	585,969	14,318	7,404	96.4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500,274	1,500,274	1,572,595	601,601	13,521	957,473	38.3
합계	45,473,154	45,612,652	46,391,393	43,856,654	796,353	1,738,386	94.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5조 6,169억 8,900만원이며, 5조 8,863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3%인 5조 8,467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385억 4,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억 1,7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4,605,166	4,605,166	4,605,166	4,682,876	4,668,174	14,607	95	99.7
군인복지기금	1,011,823	1,011,823	1,017,202	1,203,458	1,178,601	23,935	922	97.9
합계	5,616,989	5,616,989	5,622,368	5,886,334	5,846,775	38,542	1,017	99.3

자료: 국방부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5조 6,169억 8,900만원이며, 이 중 104.0%인 5조 8,46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599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4,605,166	4,605,166	4,605,166	4,668,174	0	3,519	101.4
군인복지기금	1,011,823	1,011,823	1,017,202	1,178,601	11,146	56,426	115.9
합계	5,616,989	5,616,989	5,622,368	5,846,775	11,146	59,945	104.0

자료: 국방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470억 4,500만원(△31.8%)이 감소한 2조 265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205억원 5,800만원(△23.4%)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262,516	1,587,870	1,587,870	592,591	△995,279	△669,925
기금	1,384,547	1,385,680	1,385,680	1,433,914	48,234	49,367
합계	2,647,063	2,973,550	2,973,550	2,026,505	△947,045	△620,55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2025회계연도 국방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752억 6,600만원(△23.7%)이 감소한 44조 2,979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960억원 7,000만원(2.3%)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8,349,103	40,110,023	40,249,521	39,230,211	△1,019,310	881,108
기금	4,952,829	4,951,031	5,123,739	5,067,783	△55,956	114,954
합계	43,301,932	45,061,054	45,373,260	44,297,994	△1,075,266	996,06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방부의 자산은 287조 8,467억 3,900만원, 부채는 287조 1,954억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6,512억 8,9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조 9,525억 3,400만원, 유·무형자산 278조 1,307억 5,800만원, 기타자산 7조 7,634억 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조 2,142억 5,300만원(2.94%)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전년 대비 7조 908억 3,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0조 270억 400만원, 총당부채 276조 1,212억 8,700만원, 기타부채 1조 471억 5,900만원 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조 9,025억 1,700만원 (2.46%) 증가하였다. 이는 물가상승을 변동 등에 따라 연금총당부채 등 총당부채가 8조 710억 5,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기타차입부채의 감소 등으로 차입부채가 5,458억 7,700만원 감소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87,846,739	279,632,485	8,214,253	2.94
Ⅰ. 금융자산	1,952,534	1,786,953	165,581	9.27
Ⅱ. 유·무형자산	278,130,758	271,039,922	7,090,835	2.62
Ⅲ. 기타자산	7,763,447	6,805,610	957,837	14.07
부 채	287,195,450	280,292,933	6,902,517	2.46
Ⅰ. 차입부채	10,027,004	10,572,881	△545,877	△5.16
Ⅱ. 총당부채	276,121,287	268,050,232	8,071,055	3.01
Ⅲ. 기타부채	1,047,159	1,669,820	△622,661	△37.29
순 자 산	651,289	△660,448	1,311,737	△198.61
Ⅰ. 기본순자산	139,028,778	139,028,778	-	0.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00,489,631	△201,915,075	1,425,444	△0.71
Ⅲ. 순자산 조정	62,112,142	62,225,849	△113,707	△0.18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6조 2,328억 7,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이전비용 2조 9,390억 400만원, 국가운영비용 61조 6,619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이전수익 13억 9,700만원, 국가운영수익 8조 3,666억 7,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전년 대비 8,454억 2,000만원(1.53%) 증가한 56조 2,328억 7,200만원이며, 인건비, 연금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국가운영비용이 전년 대비 9,094억 900만원 증가 하는 등 비용이 1조 5,633억 7,400만원 증가하고, 연금수익,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등 국가운영수익이 전년대비 7,185억 8,400만원 증가하는 등 수익이 7,179억 5,4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수익(I+II)	8,368,073	7,650,119	717,954	9.38
Ⅰ.이전수익	1,397	2,027	△630	△31.08
Ⅱ.국가운영수익	8,366,676	7,648,092	718,584	9.4
비용(III+IV)	64,600,945	63,037,571	1,563,374	2.48
Ⅲ.이전비용	2,939,004	2,285,039	653,965	28.62
Ⅳ.국가운영비용	61,661,941	60,752,532	909,409	1.5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56,232,872	55,387,452	845,420	1.53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6,604억 4,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512억 8,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3,117억 3,700만원(△198.6%)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8,454억 2,0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9조 5,200억 4,000만원 증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조 7,046억 3,9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3조 3,930억 8,0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2,062억원 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98억 4,2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768억 2,900만원, 보험수리적손익 5조 4,714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660,448	9,407,074	△10,067,522	△107.02
Ⅱ. 재정운영결과	56,232,872	55,387,452	845,420	1.5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2,186,880	49,482,241	2,704,639	5.47
Ⅳ. 조정항목	5,357,729	△4,162,311	9,520,040	△228.72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651,289	△660,448	1,311,737	△198.61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현금은 206억 2,600만원, 기말현금은 221억 6,500만원으로 현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여 기초 대비 15억 3,900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조 9,446억 7,500만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조 1,690억 300만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41억 3,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부담금·제재금수입, 국고수입 등 현금유입 45조 5,052억 8,100만원 및 인건비, 이자지급, 국고이전지출 등 현금유출 35조 5,606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금융상품 및 투자증권 처분,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처분 등 현금유입 5조 4,466억 1,200만원 및 금융상품 및 투자증권 취득,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등 현금유출 14조 6,156억 1,500만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차입금 차입 등 현금유입 6,201억 1,300만원 및 차입금 상환 등 현금유출 1조 3,942억 4,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944,675	-	9,944,675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9,003	-	△9,169,003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4,133	-	△774,133	-
IV. 현금의 증감	1,539	-	1,539	-
V. 기초의 현금	20,626	-	20,626	-
VI. 기말의 현금	22,165	-	22,165	-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국방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3,067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3조 7,021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군인복지기금으로 671억원 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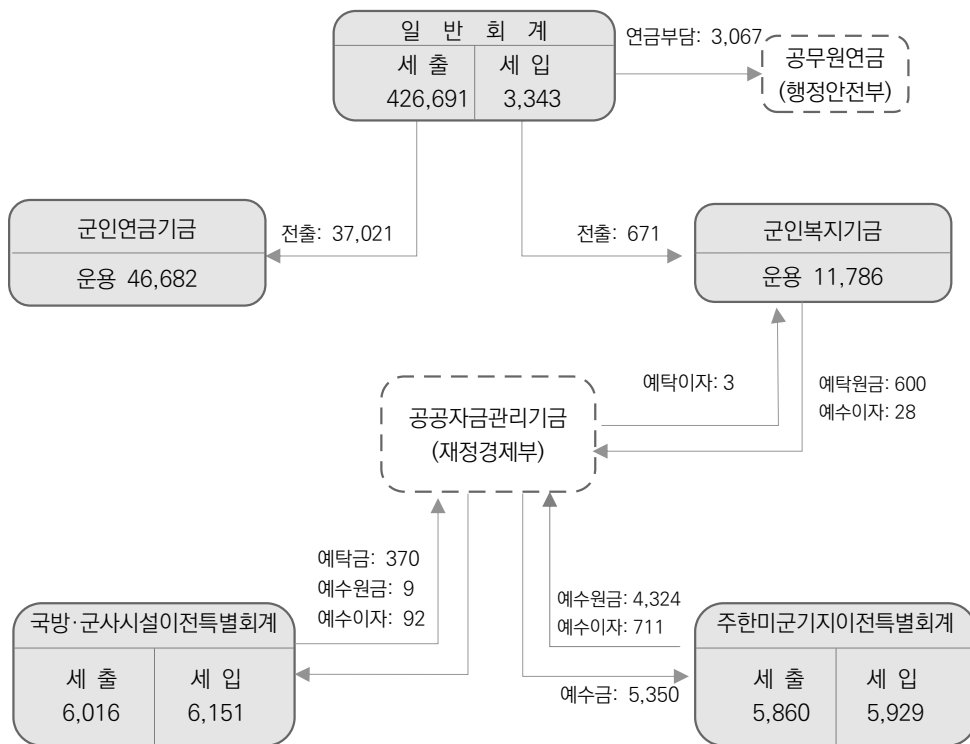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4,324억원 및 예수이자 711억원을 상환하였고, 추가로 5,350억원을 예수하였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9억원 및 예수이자 92억원을 상환하였고, 370억원을 예탁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군인복지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이자 28억원을 상환하고 6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예탁이자 수입으로 3억원을 받았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병 인건비, ②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 지급금(민자), ③ 탄약정비 등이 있다.

병 인건비 사업은 병 입영률 추이 및 입영대상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645억원이 감액(3조 7,738억원 → 3조 7,093억원) 되었고, 국방광대역통합망(BTL) 정부 지급금(민자)사업은 사업 추진 간 2개월 지연이 예상되어 190억원이 감액(1,143억원 → 953억원) 되었다. 탄약정비 사업은 탄약 기준치 및 보유량 등 기초 현황 자료 등을 고려하여 147억원이 감액(1,470억원 → 1,323억원)되었다.¹⁾

그 외,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었다.²⁾

국방부의 2025년 예산안 관련 부대의견은 ① 장병급식 사업과 ② 부대개편 5차 사업 등이 있다. 장병급식 사업은 “장병급식과 관련하여 잔반절감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급식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부대개편 5차 사업은 “예산이 3백만원 감액된 취지에 따라 고양시 소재 1군단 예비군 훈련대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주민협의 및 동의를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산 전용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사업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1) 국방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2)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2025년도 국방부는 전투임무 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전투역량강화비, 부대별 작전예산을 증액했고, 병 보급 인상, 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1인 1실 간부숙소 확충, 노후 주거시설 보수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국방분야 R&D 확대, 스마트부대 확산, 첨단훈련 장비 및 훈련장시설 지속 확보·개선 등을 통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실전적·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재정경제부의 국고자금 관리 미비로 인하여 2025년도 12월에 국방비 미지급이 발생하였으며, 국방부 소관 예산 중 5,002억원이 연도 내 지출되지 못한 상태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다. 또한 이월한도 제한으로 인한 불용이 다수 발생하여 2026년도 집행상의 문제가 노정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1건의 계약 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지출결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두 개 이상 세부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 또는 하나의 용역계약을 여러 비목을 통합하여 체결하는 사례등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 체결 사례가 있었다.

셋째, 정보화 예산 내 경직성 비용 증가로 인하여 신규투자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국방 디지털 전환, 사이버보안 강화 등 국방 정보화 촉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신규 투자비용을 적극 확보하고 기존 정보시스템 평가 및 효율화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2025년도 연말 국방비 미지급 사안 관련 검토

국방부는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4조 2,111억원 중 42조 6,691억원을 집행하고, 7,68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735억원을 불용하였다. 2024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976억원, 불용액은 1,733억원 증가하였다.

[2024~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42,728,582	44,211,107	+1,482,525
지출액	41,457,547	42,669,084	+1,211,537
집행률	97.0%	96.5%	△0.5%p
이월액	670,866	768,514	+97,648
불용액	600,169	773,509	+173,340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부는 「국고금 관리법」상 자금배정 절차에 따라 매월 정기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수시 자금배정을 신청한다.1) 2025년 12월2)의 경우 정기배정 1회와 수시배정 4회를 신청하여 신청액 5조 5,283억원을 시스템상 전액 배정받았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자금배정은 ① 모든 부처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정기 자금배정과 ②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발생한 부처에서 1일 1회 실시할 수 있는 수시 자금배정이 있다. 우선 각 부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마지막 근무일 1주일 전까지 그 다음달의 자금소요인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게 되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처 및 한국은행에 통지함으로써 정기 자금배정 절차가 완료된다. 다음으로 정기 자금배정에서 확정된 자금보다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한 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시 자금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2) 배정시 기준

[2025년 12월 국방부 자금배정(신청)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자금배정 신청		실제 배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정기	'25.11.24.	45,904	'25.12.2.	45,904
수시	'25.12.1.	1,511	'25.12.1.	1,511
	'25.12.12.	2,982	'25.12.17.	2,982
	'25.12.16.	4,304	'25.12.18.	4,304
	'25.12.17.	582	'25.12.18.	582
-	합 계	55,283	합 계	55,283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로 자금의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산 배정, 지출원인행위, 자금배정, 지출결의, 지출(집행)의 순서를 따른다.³⁾ 국방부는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범위 44조 2,111억원 내에서 지출원인행위(43조 8,030억원)를 하였지만, 실제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1조 1,339억원 부족한 42조 6,691억원(지출원인행위액의 97.4%)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2021~2025 국방부 자금배정 등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금배정신청액	369,821	425,113	479,126	631,254	602,159
자금배정액	349,600	392,567	430,656	416,286	433,060
지출결의액	347,395	364,804	389,733	414,575	429,380
지출액	347,394	364,804	389,731	414,575	426,691

주 자금배정신청액이 자금배정액에 비하여 큰 것은 일부 회차에서 자금배정액이 배정신청액을 하회하는 경우, 차기 신청 시 부족한 배정액을 재차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자금배정신청액은 신청 누적액의 개념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국가재정법」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이는 시스템상 배정과 국고자금의 잔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제 집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 총 60조 2,159억원을 배정신청⁴⁾하였고, 시스템상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총 43조 3,060억 원을 배정받았다. 다만, 실제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고 계좌 자금 부족으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스템상 배정금액과 실제 국고자금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사실상 자금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2017~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A)	이월액(B)	불용액(C)	비율	
				B/A	C/A
2017	286,565,836	1,874,491	4,207,387	0.7	1.5
2018	305,868,960	1,614,982	4,307,995	0.5	1.4
2019	336,299,386	1,293,644	4,121,606	0.4	1.2
2020	390,420,547	1,424,798	3,772,762	0.4	1.0
2021	425,881,010	2,647,663	5,512,669	0.6	1.3
2022	497,895,492	2,793,274	10,053,062	0.6	2.0
2023	449,067,227	2,005,609	41,175,329	0.4	9.2
2024	451,560,535	1,441,556	14,688,509	0.3	3.3
2025	498,441,961	2,086,544	5,345,719	0.4	1.1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마지막 배정신청: 2025.12.18.

2017~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2023년 9.2% 대비 2025년 1.1%로 크게 낮아졌다.⁵⁾ 이를 제외하면 이월 및 불용률은 예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2025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2024	42,728,582	41,457,547	97.0	670,866	600,169
2025	44,211,107	42,669,084	96.5	768,514	773,509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국방부(일반회계)의 세출 실적만 별도로 살펴보면, 이월 및 불용 규모는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즉 집행률이 하락하였고 이월액·불용액이 증가하였다.

정리하면,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23~2024년 대비 세수여건이 좋았던 2025년에는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크게 감소하고 집행률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국방부(일반회계)는 오히려 이월 및 불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집행률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 다만,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이전재원 미교부와 내부거래 부진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연말 당초 계획했던 금액에서 5,002억원 규모의 자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6년 1월 초, 이월이 불가능한 등의 일부⁶⁾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고 이월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일반회계 결산내역]

(단위: 억원)

구분	당초 계획(추정)	처리 내역	증감
집행대기(지출결의)	5,002	-	△5,002
이월	6,337	7,685	+1,348
불용	4,081	7,735	+3,654
계	15,420	15,420	-

- 주: 1. 집행대기는 지출결의까지 완료하였으나 국고자금 부족으로 2025.12.31. 기준 미지급된 금액
 2. '당초 계획'상의 이월과 불용 규모는 '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계산한 통상적인 불용 예상액(2025년 기준 4,081억원)을 기반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임.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당해연도 불용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통상 유사한 수준을 보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국방부 미지급액은 세부사업 단위 및 그 하위 사업단위에서는 단위별 미지급액 규모가 구분되지 않고 프로그램 단위로만 구분되는 상황으로,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2,203억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1,517억원 등 6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총 5,002억원이 채권자 등에게 지급되지 못하였다.

6)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상의 재이월금지 원칙 등에 의하여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불용처리하였으나, 세부사업별 또는 개별사업별 결산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미지급금 중 얼마가 불용처리되었는지 그 규모는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국방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미지급액 현황]

(단위: 억원)

프로그램	미지급액	주요내역
급식 및 피복	610	- 주/부/후식 부대조달 농축산물 구매대금 사후정산 등 - 병사식당 민간위탁 운영비(급식대금 정산비용) 등
국방정보화	223	- 정보통신기반체계 금융리스 계약대금 등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준공 정산, 정보보호 등 납품 대금
군수지원 및 협력	2,203	- 기동, 화력, 항공, 함정, 통신전자 등 장비 구매대금 - 외주정비용역 정산대가, 수리부속 구매대금 등
군인사 및 교육훈련	178	- 교육시설 공사대금, 교육훈련장비 구매대금 등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1,517	- 병영생활관 신축공사에 따른 임시 숙영시설 설치, 도로파열에 따른 보수공사 대금 등 - 소규모 보수사업(환경개선, 물품 구매 등), 공공요금 등
국방행정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	271	- 예비훈련대 실내사격장 신축 및 보강공사 대금 - 정부구매카드 대금 등
합 계	5,002	

자료: 국방부

1-1. 국고관리 미비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및 이에 따른 문제점

가.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2025년 총 60조 2,159억원을 배정신청¹⁾하였고, 시스템상으로 재정경제부로부터 43조 3,06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한국은행 국고 부족으로 실제 지출소요 대비 5,002억원의 지급지연이 발생하였다.

한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총계에서 세출총계를 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조 1,693억원이나 이 중 이월액 2조 865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28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억원)

세입 총계 (A)	세출 총계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4,931,790	4,910,097	21,693	20,865	82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6.5.

나. 분석의견

첫째, 재정당국은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은 국고관리 미비로 연도말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말 국방부 자금 5,002억원²⁾을 회계연도를 넘겨 지급하였고, 나아가 미지급금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이월 한도 제한에 따른 불용을 초래하여 국방부 등의 집행 제약 상황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약 5,002억원의 미지급은 유동성 측면의 문제였던 반면, 약 3,654억원³⁾의 불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마지막 배정신청: 2025.12.18.

2) 방위사업청 포함시 1조 3,038억원

3) 추정치이며, 방위사업청 포함시 6,881억원

용은 세입이 세출을 따라가지 못하여 결산상잉여금(이월 여력)이 제약된 데 따른 결과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연도말 미지급은 국고의 단기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의 12월 자금배정 규모를 예년과 비교해보면, 국방부의 2025년 12월 배정액 비중은 전체의 12.8%로 최근 5년간 9.0~13.2% 범위 내에 있으며 가장 높았던 2021년(13.2%)보다도 낮다. 국방 분야의 12월 자금배정 신청·배정 규모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021~2025년 분기별 국방부 자금배정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	전체	12월 비중
2021	93,627	95,815	72,337	87,821	46,036	349,601	13.2
2022	100,221	92,555	94,198	105,594	35,491	392,567	9.0
2023	109,339	109,831	99,314	112,172	52,604	430,656	12.2
2024	116,353	108,641	86,073	105,219	49,030	416,286	11.8
2025	125,750	131,566	79,347	96,397	55,283	433,060	12.8

주: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한 자금 기준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이처럼 자금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국방부는 자금배정액 43조 3,060억원 중 5,002억원을 회계연도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까지 완료되어 지급만 남은 상태에서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충당할 현금이 확보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예산이나 자금배정이 아닌 실제 지급 단계의 국고 현금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정당국은, 연말과 같이 세출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단기 유동성 대응수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 원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급 지연의 비용이 큰 필수지출이 예정되어 있고 연내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일시차입 등 가용한 유동성 대응수단을 실제 자금 소요에 부합하는 규모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내 세입 결손이 상당 부분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계획에 반영하여 단기 유동성 대응 규모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⁴⁾

한편, 일부 사업이 불용된 것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세계잉여금 제약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음수가 될 수 없는데, 이는 세계잉여금이 결산 상잉여금(세입-세출)에서 이월액을 차감하여 산정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의 재원은 결산상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월액이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⁶⁾

2025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828억원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연말에 지급받지 못한 1조 3,038억원을 연초에 이월하여 지급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였는바, 재정경제부가 이를 모두 이월 처리하였다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6,000억원의 음(-)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구조상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미지급액 전액을 이월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근거로 한 연말 집행 독려로 세출이 늘어난 가운데 세외수입 결손 등으로 세입 실적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이월 여력(결산상잉여금)이 제약되었고, 자금계획 배정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 까지 완료하였던 국방부에서 그 부담이 약 3,654억원⁷⁾ 규모의 불용으로 나타났다.⁸⁾

이처럼 연말의 일시적 현금 부족을 넘어 세입이 세출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발

4)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 주로 상반기를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사안과 같이 연말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단기적 자금 경색에 대해서도 그 해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2025년 말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는 실제 자금 소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5) 반면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음(-)이 될 수 있다.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과 이월이 이루어져 이월액이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할 수 없으나,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적립금·여유재원 등 자체 재원을 보유·활용할 수 있어 당해연도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하는 규모의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7) 미지급액과 당초 이월 계획액 합산액에서 이월한도 제한으로 불용된 금액 추정치

8) 이러한 추정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해 이월 한도를 제한한 방식을 통해 뒷받침된다. 재정집행 원칙의 준수가 목적이었다면, 규모가 큰 주요 사업별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한하여 이월을 제한하는 방식이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별 사업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월 '총액'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미지급액을 모두 이월할 경우 이월액이 결산상잉여금을 초과하여 세계잉여금이 음(-)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 제한의 결과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음수를 가까스로 면한 828억원에 그쳤다.

생하는 구조적 부족에 대해서는, 세입 여건에 대한 평가를 집행 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이나 재정증권은 수입과 지출의 시기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일시적 현금 부족(미지급)을 완화하는 수단일 뿐, 세입 자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불용까지 해소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말 미지급금 5,002억 중 대부분은 변제 시기가 도래한 채무인데, 국방부는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발생시켜 국고에도 재정부담을 유발하였다.

연말 자금부족으로 인한 지급 제한 사태는 급식 및 피복,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수지원, 군사시설 건설 등 장병복지와 훈련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방분야 사업 전반에서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2026.2.2. 기준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다는 입장이나, 약 한 달의 지연 지급에 따라 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여 국고에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유발하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6.6. 현재 기준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 8,099만원이다.

[국방부 일반회계 프로그램별 지연이자 발생 현황]

(단위: 천원)

프로그램 구분	지연이자액
급식 및 피복	617
국방 정보화	4,041
군수지원 및 협력	140,912
군인사 및 교육훈련	2,072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2,498
국방행정지원 및 기타	850
합 계	180,990

자료: 국방부

비록 개별 사업별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의 절대적 규모가 국방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재정당국 및 국방부의 자금 관리실기가 추가적인 국고자금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자금 수급 협의 및 자금 배정 추이 검토를 통해 유사한 재정적 부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방부는 연말 자금 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 결산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규모 등을 고려한 개별 사업 단위별 우선순위 또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사업별 결산내역의 추적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결산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

현행 법령에는 가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떤 유형의 지출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다. 예컨대 계약상 또는 법령상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와 지급 시기에 재량이 있는 경비 간의 배정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금지출 결정이 사실상 재정 당국의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이다.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지출이 제한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인건비 또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해, 별도의 기준 없이 선착순 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이 높은 계약을 우선순위로 지급하는 등의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⁹⁾ 이는 현행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는 자금 부족 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가용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떤 지출을 우선 집행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약상 또는 법령상 지급기일이 확정된 경비, 인건비, 그 밖에 지급 지연 시 국가의 채무불이행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필수지출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 시에도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① 재정경제부의 부처별 자금배정 단계에서 필수지출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② 각 부처의 부처 내 집행 배분 단계에서 확정채무·법정 지급기일 경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국고자금 집행지침」에 관련 기준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9) 한편 재정경제부는 자금배정 단계에서 국고금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국고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자금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처가 요구한 자금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4-2), 각 부처에 공급된 자금 중 월 말일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달 자금배정일 다음 날에 전액 회수한다(4-1).

또한 자금이 소진되거나 예측이 곤란한 사업에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처는 소수 3일 전까지 수시 자금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1-2). 이는 재정 당국이 평소 자금배정을 적극적으로 조정·회수할 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금 부족 시 이를 보완할 수단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에서는 이러한 작동원리가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은 개별 사업의 수가 매우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며 부대단위 집행구조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이처럼 긴급하게 추진된 결산 과정에서는 어떤 개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업 단위별로 명확하게 추적하기가 곤란하다. 현행 결산서 체계상으로도 특정 사업의 미집행 사유가 연말 자금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지, 아니면 이와 무관한 국방부 고유의 사업 관리상 미비나 사업 계획의 변경 때문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프로그램 단위의 미지급액 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이하의 단위에서는 미지급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액의 사업별 배분현황 및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연말 미지급액 가운데 이월액과 불용액을 구분하고 이월사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단위별 검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미지급금을 프로그램 단위 수준에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예산 미지급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국방부 사업의 지출은 대부분 소액, 다량의 형태로 이루어져 개별적으로 지출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되나, 국방부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과 지시를 전파하고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의 재발에 대비하여 결산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정당국은 국고자금 부족에 따른 이월 및 불용을 별도의 사유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이월명세서의 사유 분류 체계를 보완하고,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확정적 지급의무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불용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규모, 후속 처리 내역을 결산서에 명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 단계에서 이를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⁰⁾

10) 이번 사안에서 미지급분의 상당액은 이월명세서상 '기타' 사유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국고자금 부족에 따른 이월을 포섭할 정상적인 사유 코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상적 이월과 자금 부족에 따른 비정상적 이월이 동일하게 '기타'로 처리되어, 정부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상의 정보만으로는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다.

1-2. 미지급에 대한 사고이월조치 등 국방부 대응의 적정성 검토

가. 현황

국방부는 2026.1.9. 일반회계 결산 마감 후 미지급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 5,002억원 중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재이월이 금지되는 일부 경우¹⁾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고, 2026.2.2. 기준으로 전액 집행하였다. 사고이월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자금으로 집행하였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난연도지출’ 허용규정을 근거로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국방비 미지급액의 부처별 2026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5년도 미지급액 (A+B)	2026년	
		집행완료(A)	미집행(B)
국방부	5,002	5,002	-
방위사업청	8,036	7,907	129
합계	13,038	12,909	129

자료: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국방부의 2025년도 국방부 결산상 이월액은 7,68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이며, 이는 전년대비 976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불용액은 7,73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이며, 전년 대비 1,733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023~2025 국방부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불용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A)	사고이월액(B)	비율(B/A)	불용액(C)	비율(C/A)
2023	409,571	9,672	2.4	10,168	2.5
2024	427,286	6,709	1.6	6,002	1.4
2025	442,111	7,685	1.7	7,735	1.8

자료: 국방부

특히, 이월 사유 측면에서 2023·2024년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사항이 발견된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의 ‘미지급금 이월’ 사유가 2023년과 2024년에는 7%대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약 37%로 급등하였다. 즉, 매년 일정 규모는 출납정리 기한의 존재 등에 따라 ‘미지급금 이월’로 처리되어 왔으나,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해당 사유로 인한 이월 규모가 약 7배 증가하여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2023~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유]

(단위: 백만원, %)

이월 사유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동절기·공사중지 ·절대공기부족	696,657	34.7	495,964	34.4	429,446	20.6
미지급금 이월	145,398	7.2	109,126	7.6	770,682	36.9
계약체결·설계지연	339,748	16.9	216,424	15.0	274,371	13.1
외자구매지연	61,862	3.1	56,025	3.9	34,772	1.7
기타	761,944	38.0	564,017	39.1	577,273	27.7
합 계	2,005,609	100.0	1,441,556	100.0	2,086,544	100.0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부에 한정하여 분석해보면, 전반적인 이월 규모가 ‘미지급금 이월’ 사유를 중심으로 대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23년에는 국방부 이월액 중 미지급금 이월 사유로 인한 이월 규모가 10.2%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3.8%로 급등하였다.

[2023~2025회계연도 국방부 이월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이월액 합계	이월사유				
		동절기 공사중지 및 잘대공기 부족	미지급금 이월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외자구매 지연	기타
2023	967,166	430,752	98,333 (10.2)	119,261	52,700	266,120
2024	670,866	333,053	35,441 (5.3)	52,731	44,066	205,575
2025	768,514	232,840	182,970 (23.8)	14,383	31,842	306,479

주: 괄호 안은 전체 이월액 대비 해당 사유로 인한 이월액의 비율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일반회계의 전체 이월액 중 ‘미지급금 이월’ 사유로 인한 이월 규모는 2024년 1,091억원에서 2025년 7,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배 증가하였는데, 이 중 국방부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각각 983억원, 354억원에서 2025년 1,83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3~2025회계연도 ‘미지급금 이월’ 규모의 부처별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			2024			2025		
부처	이월액	비중	부처	이월액	비중	부처	이월액	비중
국방부	98,333	67.6	방사청	40,313	36.9	방사청	546,420	70.9
문체부	12,538	8.6	국방부	35,441	32.5	국방부	182,970	23.7
방사청	8,065	5.5	과기부	6,781	6.2	과기부	21,193	2.7
국방부 +방사청	106,398	73.2	국방부 +방사청	75,754	69.4	국방부 +방사청	729,390	94.6
전체	145,398	100.0	전체	109,126	100.0	전체	770,682	100.0

주: 연도별 ‘미지급금 이월’ 사유 규모 상위 3개 부처만 적시하였음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가결산검사보고(감사원)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분석 의견

국방부가 자금 부족에 따른 지급 지연을 「국가재정법」상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여 세입세출 마감 후 이월 처리한 조치와, 불용처리한 예산에 대해 차년도에 「국고금 관리법」상 ‘지난 연도 지출’로서 집행한 조치는 비록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현행 법령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나, 법령의 취지와 해석 범위를 고려하였을때 적절한지에 대한 재고를 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국고부족으로 인한 지급지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상황을 「국가재정법」상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여, 세입세출을 조기에 마감(1.9.)하고 미집행분을 사고이월로 처리하였다.²⁾

「국가재정법」 제48조³⁾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이월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연말 국고계좌 자

2) 다만, 재이월금지 원칙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이를 불용처리하였다.

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부족 사유가 동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조의 ‘불가피한 사유’란 물리적·객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채권자가 회계연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채무가 확정되지 않고 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 채무가 확정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국고자금의 부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요건에 포섭하여 이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사안과 같이 국고자금 부족 등으로 미지출한 경우 이를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현행 법제상 「국가재정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나, 입법 취지에 충실한 자금 집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일부 불용처리 사업을 차년도인 2026년, 「국고금관리법」상의 지난 연도 지출⁴⁾ 규정을 근거로 지출하였다. 지난 연도 지출이란, 예산의 불용을 전제로 하여,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에 대해 지난연도 불용액을 한도로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구제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조를 근거로 한 차년도 예산집행은 그 규모와 범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성이 더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전년도 미지출분이 차년도 예산집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제한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금이 제약된 상황에서 국방부의 사고이월조치와 지난 연도 지출 조치는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불가피한 대안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피한 대안은 국고부족이라는 상황에서 기인한 차선의 선택지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향후 철저한 자금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가재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우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국고금관리법」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1-3. 불용으로 인한 2026년 재정집행상의 문제점

가. 현황

국방부는 2025년 총 43조 8,030억원에 대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 가운데 42조 6,691억원을 지출함에 따라 그 차액이 1조 1,339억원가량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미지급금 5,002억을 제외하면 6,337억원이 남는데 이는 통상 이월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최근 3년 평균 이월액 수준인 약 8,000억원과 함께 미지급액 5,002억원도 이월시킬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26.1.5.)하였으나, 재정 당국의 이월 한도 제한 요청에 따라 전체 이월 요청분 중 약 3,654억원¹⁾은 불용 처리되어, 2025년 지출결의에도 불구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불용처리된 사업이 발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 미지급 사안 주요 경과]

2025.12.31.	○ 회계연도 종료일('25.12.31.) 기준 최종 지급 지연금 5,002억원으로 확인
2026.1.5.	○ 연말 지급지연 처리방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
2026.1.9.	○ 2025회계연도 결산 조기 마감 후 이월명세서를 제출 ○ 전체 이월액(7,685억원)을 배정받아 각 군 및 기관에 배정 완료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세출예산과 지출원인행위액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2025회계연도 불용액 7,735억 중 3,654억원, 즉 약 절반가량이 이월한도 제한으로 인한 불용, 4,081억원가량은 정산잔액 등 순수불용액이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전술한 바와 같이 이월예산액 중 불용처리된 금액의 규모는 '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계산한 통상적인 불용 예상액(2025년 기준 4,081억원)을 기반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이다.

[국방부 2025년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이월액, 불용액 등]

구분	금액(원)	비고
예산현액(A)	44조 2,111억	
지출원인행위액(B)	43조 8,030억	
지출결의액(C)	42조 9,380억	(B)대비 △8,650억, 98.0%
지출액(D)	42조 6,691억	(B)대비 △1조 1,339억, 97.4%
이월액(E)	7,685억	[① 미지급 + ② 이월사업]
불용액(F)	7,735억	① 이월사업중 이월제한으로 인한 불용 ② 미지급금 중 재이월 제한으로 인한 불용 + ③ 순수불용(정산잔액등)]

당초 이월소요 등 추정치 산정근거

- 지출원인행위 후 미집행예산(B-D) = 이월소요 = 1조 1,339억원
- 이월소요 중 연말지급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 제외 순수 이월소요 = 1조 1,339억 - 5,002억 = 6,337억원
- 불용액 중 순수 불용액(정산잔액 등 차년도 집행 불요 항목) = (A-B) = 4,081억원
- 불용액 중 이월한도제한으로 인한 불용, 즉 '채무가 잔존하는' 차년도 집행 필요액 = 7,735 - 4,081 = 3,654억원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방부 2025년 연말기준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내역 비교]

2025회계연도			연말기준 처리 계획 ¹⁾	→	실제 처리내역
예산현액	자금배정				
44조 2,111억원	배정 43조 3,060억원	→	집행완료 42조 6,691억원	→	집행완료 42조 6,691억원
	미배정 9,051억원		집행 예정 5,002억원 이월 예정 (추정)6,337억원 불용 예정 (추정)4,081억원		(국고자금 부족) 이월 7,685억원 불용 7,735억원 (이월한도 제한 불용 (추정)3,654억원 포함)

주: 1) '당초 계획'상의 이월과 불용 규모는 '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으로 계산한 통상적인 불용 예상액(2025년 기준 4,081억원)을 기반으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임.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을 제외한 예산규모는 당해연도 불용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통상 유사한 수준을 보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방부가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미지급금 중 일부가 재이월 금지 원칙에 따라 불용처리되거나 ② 이월 예정 사업 중 상당수가 이월한도 제한으로 불용처리에 따라 잔존 지급 채무 이행 과정에서 2026년도 재정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국회의 심의확정 내역과 다른 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국방부의 결산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의 유형은 집행잔액 등 순수 불용 외에, ① 이월 자금의 한도 제한으로 당초 이월되었어야 할 예산이 불용된 경우와 ② 미지급액 중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된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불용의 첫번째 유형으로서 이월 자금의 한도 제한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월 자금의 한도 제한으로 당초 이월되었어야 할 사업 예산이 불용된 규모는, 통상적 불용 예상액²⁾(='예산현액 - 지출원인행위액')과 실제 불용액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일반회계)의 경우 2023년·2024년에는 실제 불용액이 통상적 불용 예상액 범위 내(각각 95.8%, 92.2%)에 있었던 반면, 2025년에는 실제 불용액이 불용 예상액의 190.0%에 달하여 약 3,654억원이 초과 발생하였다. 즉 확정채무 등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 총량 한도를 이유로 불용된 것으로 분석된다.³⁾

2)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규모("통상적인 불용 예상액")는 불용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통상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3)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마감시한은 다른 부처와 달리 2026년 1월 9일로 촉박하게 설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제한된 이월규모로 인하여 일부 납품대금 등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다.

[2023~2025회계연도 국방부(일반회계) 불용액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행위액(B)	불용예상액(C=A-B)	불용액(D)	D/C
2023	409,571	398,953	10,618	10,168	95.8
2024	427,286	420,780	6,506	6,002	92.2
2025	442,111	438,030	4,081	7,735	19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불용의 두 번째 유형으로, 이미 한 차례 이월된 사업이 「국가재정법」상 재이월 금지 원칙에 따라 불용 처리된 사례도 있다. 예컨대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사업 내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체계’사업의 경우, 2024년 편성된 계약대금 21억 5,900만원이 2025년으로 한 차례 이월되었으나, 2025년 12월 지급하려던 대금이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되었고,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해야 했다.

이처럼 이월한도 제한, 재이월금지원칙 등에 따라 불용된 사업들은 정산 잔액 발생 등으로 지출의무가 소멸한 순수 불용과 달리, 회계연도 내에 적법한 지출원인 행위를 거쳐 지급채무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인 지급의무는 존속하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불용처리한 대금을 2026년에 지급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이·전용 또는 연부액 조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방부는 재사고이월 불가로 불용처리한 ‘예비군 교전훈련장비 체계사업’의 2026년도 연부액을 사업조정을 통하여 증액 집행하였다. 전년도 말의 국고자금 관리 미비로 인하여 2026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국회의 심의·확정 내역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나아가 전년도 채무를 2026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 자금 배정 간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 2026년도에 예정된 사업들이 배정 후순위로 밀리며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재정 탄력성 제도가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자금 배정 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해 당해 연도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사전 예방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산의 이용은 각 프로그램 이상 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국가재정법」 제27조제1항과 「2025년도 예산총칙」 제10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자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는 총 3,146억 7,400만원 규모의 이용을 실시하였다.

전용은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목적범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2025회계연도 국방부는 총 3,691억 9,100만원 규모의 전용을 실시하였다.

세목조정은 동일 세부사업 내 세목간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내역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2025년 4,529억 4,200만원 규모의 내역변경과 2,269억 1,600만원 규모의 세목조정을 실시하였다.

[2025년도 국방부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내역변경	세목조정
금액	314,674	369,191	452,942	226,916

자료: 국방부

2-1. 동일 목적의 계약에 대한 여러 세부사업 혼용집행 부적정 등

가. 현황

해상방위 기본경비¹⁾ 사업은 해군 및 해병대 각급부대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93억 6,400만원 중 181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해상방위기본경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상방위 기본경비	18,700	18,700	19	645	19,364	18,153	801	410	19,35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간부양성교육²⁾ 사업은 사관학교, 학군단 및 학사장교후보생 등 장교와 부사관 육성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50억 700만원 중 42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정훈문화활동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간부양성교육	50,021	50,021	73	△5,024	45,070	42,650	277	2,143	50,18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11-252

2) 코드: 일반회계 2431-302

전력발전지원³⁾ 사업은 작전개념 및 부대구조 등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시험평가 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03억 1,300만원 중 19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전력발전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력발전지원	20,499	20,499	708	△894	20,313	19,450	412	451	20,94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1건의 계약 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지출결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두 개 이상 세부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집행은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 이·전용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재정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25.5. 138기 해군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사용할 영상장비(전광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4,136만원의 영상장비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사업을 위한 임차료는 당초 해상방위 기본경비(7111-252) 사업으로 편성되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임차료에 부족분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별도의 이·전용 등 절차 없이 계약대금 부족분을 간부양성교육(2431-302) 사업 임차료에서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건의 계약을 임의로 분리하여 세부사업별 지출결의를 시행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7131-314

4) 해상방위 기본경비 사업 임차료는 사관생도 임관식, 사관후보생 임관식 등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다.

[임관식 행사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간부양성교육	-	19
해상방위 기본경비	22	22
합 계	22	41

자료: 국방부

[해군 영상장비 임차용역에 대한 지출내역]

(단위: 원)

거래처(가칭)	이체일자	세부사업	비목	지출결의 금액
S음향(가칭)	2025-06-09	간부양성교육 (2431-302)	임차료 (210-07)	19,012,420
		해상방위기본경위 (7111-252)		22,352,580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4년에도 당시 136기 사관후보생 임관식 영상장비 임차용역 대금 2,750만원을 해상방위 기본경비 사업과 간부양성교육 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한 바 있다.⁵⁾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해군 장교 임관식의 임차료는 해상방위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나, 여타의 임관식의 경우 간부양성교육 사업에서 임관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간부양성교육 사업과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임차료 부족분을 당해 사업에서 충당하였다는 입장이다.

5) [영상장비 임차용역에 대한 지출결의 내역(지출부, 2024)]

(단위: 백만원)

거래처	이체일자	내용	세부사업	지출결의 금액
민아트	2024-06-10	136기 사관후보생 임관식 영상장비 임차	간부양성교육 (2431-302)	11
민아트	2024-06-10	136기 사관후보생 임관식 영상장비 임차	해상방위기본경위 (7111-252)	16

자료: 국방부

그러나, 사업 성격이 유사한 임관식 간에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 세부사업이 상이하여 예산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분리하여 이를 여러 사업을 통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의 신속운영시 이·전용 등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 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방부에서 추진한 ‘우주안보, 사이버 워킹그룹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우주안보워킹그룹’ 행사는 ‘정책기획지원’사업(5136-302)에, ‘사이버워킹그룹’ 행사는 ‘정보통신운영지원사업(2132-302)’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행사를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에 부족분이 발생하자, 별도의 이·전용 등 절차 없이 지출결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사업에서 두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를 나누어 집행하였다.

[우주안보, 사이버 워킹그룹 지출내역]

(단위: 원)

거래처 (가칭)	이체일자	세부사업	비목	지출결의 금액
'K' 주식회사	2025-10-13	정보통신운영지원(정보화) (2131-303)	일반용역비 (210-14)	44,007,880
		정책기획지원 (5136-302)		44,100,000
		주요기관 기본경비 (7111-254)		19,276,600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예산 편성 과정의 면밀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신속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이·전용 등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 재정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사예산의 십 수배에 달하는 이전용 집행은 예산 이전용제도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볼 여지가 있고, 동일 행사의 비용을 비목별로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향후 연례적 반복적 행사의 경우 소요 예산을 적정 반영하고 세부사업 분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분할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인공지능 발전 컨퍼런스⁶⁾는 정보통신·AI 정책 제언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2025년 예산으로는 전력발전지원(7131-314) 사업에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등 500만원이 편성되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운영 과정에서 동 세부사업에서 약 4,2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하여 총 4,7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더하여, 정보화 프로그램 내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 사업에서도 일반용역비로 1,900만원을 집행하여, 도합 6,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년 인공지능 발전 컨퍼런스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전력발전 지원	일반수용비(210-01)	2	19	21	21
	임차료(210-07)	-	16	16	16
	기타운영비(210-16)	3	8	11	10
정보통신 운영지원	일반용역비(210-14)	-	19	19	19
합 계		5	62	67	66

자료: 국방부

당초 동 행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 ‘정보통신 운영지원’ 사업에서 일반용역비를 집행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는 당초 행사 용역대행을 예정하지 않아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 행사의 시기·장소 등이 변경되며 행사 대행 용역 업체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게 되자, 일반용역비를 해당 사업에서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다.

예산액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신축적 운영의 범위를 넘어, 이·전용 등을 허용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그 자체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6) 2025년부터 동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2024년까지는 ‘정보통신발전 컨퍼런스’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집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방부의 예산 집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요한다.

첫째, 행사 예산 중 일부 비목을, 당초 행사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임의로 집행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부사업 분류 취지, 예산 편성·집행 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즉 행사의 개최 목적과 무관하게 집행 편의에 따라 여러 세부사업의 재원을 혼용하는 것은 예산 구조의 세부사업 분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산의 편성·집행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둘째, 정보통신운영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반체계 장비운동을 위한 각종 전산용품, 부수장비 구입과 소규모 수리비, 위성통신 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을 통해 관례적으로 정보통신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의 행사용역대금 예산을 편성·집행해 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행사용역의 성격을 가지는 계약에 대해, 단지 행사의 주제가 ‘정보통신’ 관련이라는 이유로 대금을 동 사업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를 요한다.

참고로 국방부가 동 행사를 위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은 참가자 등록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초청장·현수막 등 디자인, LED 운영 등으로서 행사 진행 일반에 관한 것이다.

[인공지능 발전 컨퍼런스 행사 용역계약 과업지시내용]

1. 참가자 등록시스템 설치 및 운영
- 등록시스템, 키오스크, 명찰배부, 웹등록 등
2. 초청장, 책자, 포스터, 현수막 디자인
3. 발표자료, 초청장, 포스터 등 출력,
4. LED 운영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행사 성격과 실시계획을 고려, 반복적 행사사업에 대한 용역 소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비목별 타 사업 예산의 임의적 혼용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2-2. 계약 성격과 무관한 임의적 비목 집행 부적절

가. 현황

정훈문화활동¹⁾ 사업은 부대 장병 등에게 정신전력 강화교육활동을 하고 군악 연주회, 문화활동지원 등을 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81억 1,900만원 중 45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정훈문화활동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훈문화활동	47,938	47,938	216	△35	48,119	45,680	696	1,743	55,20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 내용

첫째, 하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의 집행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계약에 성격에 맞는 일반용역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25.10. 해군 창설 80주년 호국음악회 평택공연 당시, 공연 대행 용역업체에 대한 하나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일반수용비(210-01), 임차료(210-07), 일반용역비(210-14) 등에서 나누어 지급하였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해군이 직접 본 공연을 기획·실시하려는 계획 하에 예산을 비목별로 편성했으나 비효율성과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사 전체를 하나의 포괄적인 용역계약으로 체결 후 주최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일반용역비에 부족분이 발생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5-301

하고 임차료와 일반수용비 등에는 잔여분이 확보되자, 이를 통합하여 용역대금으로 집행한 것이다.

[해군창설 80주년 기념 호국음악회(평택) 용역계약 집행내역]

(단위: 원)

거래처 (가칭)	이체일자	세부사업	비목	지출결의액	자금이체액
K 엔터	2025-10-31	정훈문화활동 (2435-301)	임차료 (210-07)	8,774,000	8,774,000
			일반용역비 (210-14)	9,300,000	9,300,000
			일반수용비 (210-01)	1,800,000	1,800,000

자료: 국방부

그러나, 예산의 집행은 해당 비목이 전제한 지출원인행위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세목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목 간 구분 없이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다른 사례로, '2025년 전투기량 경연대회' 사업 과정에서도 유사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동 사업의 경우 국내시찰을 위하여 'O'고속관광협동조합과 국내시찰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에 일반용역비(210-14)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 임차료(210-07), 국내여비(220-01)를 나누어 지출결의하는 방식으로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숙박비, 관광수수료 등의 계약 상대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업체와의 계약대금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으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출장에 대한 포괄적 용역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 집행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투기량 우수자 국내시찰 용역계약 집행내역]

(단위: 원)

거래처 (가칭)	이체일자	세부사업	비목	지출결의액	자금이체액
'O'고속 관광협동 조합	2025-12-31	해상방위 기본경비 (7111-252)	일반수용비 (210-01)	6,262,260	6,262,260
			임차료 (210-07)	348,630	348,630
			국내여비 (220-01)	2,579,340	2,579,340

자료: 국방부

공군 '우수근무자 격려행사' 용역의 경우에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210-01), 임차료(210-07), 국내여비(220-01), 관서업무추진비(240-02) 등을 혼용하여 집행하였다.

[공군 우수근무자 격려행사 용역계약 집행내역]

(단위: 원)

거래처 (가칭)	이체일자	세부사업	비목	자금이체액	자금이체액
(주)C투어	2025-10-17	단기국내외시찰 (2439-303)	일반수용비 (210-01)	9,047,000	9,047,000
			임차료 (210-07)	32,147,410	32,147,410
			기타운영비 (210-16)	1,130,630	1,130,630
			국내여비 (220-01)	84,482,950	84,482,95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7,800,010	7,800,010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용역계약 대금 집행시 이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그 비목을 정확히 하여 재정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부는 장비유지 사업 관련,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리·보수 용역(외주정비 등)의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 목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재료비(210-11)’ 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므로, 비목 성격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세목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나아가 군직정비, 외주정비 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비목별 예상 소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특정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수리·보수 등의 용역계약을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것에 대한 비목이며, ‘재료비(210-11)’는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또는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를 집행하기 위한 비목이다.

[재료비·시설장비유지비·관리용역비의 구분]

비목	내용
재료비(210-1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또는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 등
시설장비유지비(210-09)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관리용역비(210-15)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런데 국방부는 군수시설 프로그램 내 각종 군수 장비의 정비용역, 유지용역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계약대금을 재료비로 집행하였다.

[정비·유지용역에 대한 재료비 집행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집행액
기동장비(유지)	M48A5K전차 모스볼링 용역	22
항공장비(유지)	소총조준사격드론KCMVP 성능개량 용역	17
항공장비(유지)	소총조준사격드론 수리용역	16
항공장비(유지)	소총조준사격드론 외주정비 및 유지 용역	21
항공장비(유지)	소총사격드론 KCMVP 성능개량 용역	13
통신전자장비(유지)	명제관 방송장비 이전 설치 용역	17
일반장비(유지)	00부대 굴착기 외주정비 용역	16
병참물자	텐덤낙하산 정비용역	19
일반장비(유지)	굴착기 정비용역	11
항공장비(유지)	드론 정비 용역	17
화력장비(유지)	합동화력시물레이터 비보급품 유지 용역	19
화력장비(유지)	합동시물레이터 비보급품 유지용역	22
화력장비(유지)	25-2차 합동화력시물레이터 비보급품 유지 용역	11
화력장비(유지)	25-8차 합동화력 시물레이터 정비용역	14
항공장비(유지)	00부대 경계용드론 외주정비 용역	15
항공장비(유지)	소총조준사격드론 정비 용역	6
화력장비(유지)	합동화력시물레이터 유지비 정비 용역 계약	9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일부 소모품 등의 부품교체 소요에 대해서는 군직정비를 전제로 재료비를 편성하였는데 군직정비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외주정비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재료비로 용역대금을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편성 과정에서의 소요 예측 미흡을 의미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비목 간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향후 군직정비 역량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진단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집행과정에서 군직정비를 통한 부품교체가 제한되어 외주 정비 용역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적정 비목으로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 간 혼용 집행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2-3. 계약 체결 실기로 인한 긴급수의계약 체결 및 사업목적 미달성

가. 현황

병참물자¹⁾ 사업은 부대비품, 취사기구, 행정용품 등의 소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434억 9,100만원 중 2,277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87억 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0억 1,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병참물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병참물자	244,101	244,101	6,210	△6,819	243,491	227,744	8,735	7,012	308,75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시설유지관리²⁾ 사업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사용 중인 건축물의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의 성능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조 1,997억 100만원 중 1조 896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551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8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시설유지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시설 유지관리	1,122,182	1,163,412	49,206	△12,916	1,199,701	1,089,633	55,180	54,888	1,040,78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332-302

2) 코드: 일반회계 2536-301

나. 분석 의견

국방부는 당초 시기와 소요를 파악하여 적시 착수할 수 있었던 계절성 사업을 실기하여 긴급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도 적시에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계약방식을 설정하고, 계약이 적시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병참물자(2332-302) 사업을 통하여 “에어컨 및 냉난방기 구매”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동 사업은 접적지역 등 24개소에 대해 노후 에어컨 등 냉방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당초 일반경쟁계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가목3)상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는 필요한 기간 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긴급수의계약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국방부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5월부터 냉방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수개월 이상의 시일이 요구되고, 특히 접적지역으로서 낙찰업체의 신원조회에도 기간이 소요되어 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상고온은 2025년에 국한된 사정이 아니었고 하절기를 대비하여 냉방기 교체소요를 파악하고 구매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였더라면 경쟁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적기에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라.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다. (생략)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타. (생략)

3. ~5. (생략)

나아가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변경된 사업시기도 준수하지 못하였다. 즉 긴급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당초 6월에 발주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냉방기 설치 제원에 관한 확인 부족으로 추가 시일이 소요되어 8월 말에서야 계약을 발주한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8월 21일 계약을 발주하여, 하절기 폭염이 대부분 해소되고 난 이후에야 냉방장치를 조달받을 수 있었다.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의 공정성을 일부 절충하였으나 결국 사업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사례이다.

한편, 국방부는 시설유지관리(2536-301) 사업을 통하여 '보급로 및 배수로 직영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강수량이 집중되는 장마철 등 이전에 보급로 및 배수로를 신속히 공사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긴급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방부는 연초 보수계획 수립 당시에는 관련 소요가 없었으나 우기 전 강우로 일부 구간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5월 중 보수 필요성이 추가로 식별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의 적기 추진을 위해 6월 중 수의계약을 검토·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계약서상 기간(7.3.~11.30.)과 달리 실제 본공사는 자재를 적기에 납품받아 8월 30일자로 조기 준공함으로써 우기 중 침수 피해 방지 등 당초의 작전 수행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에도 배수로 등 정비 소요는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발주를 당길 수 있었다는 점, 준공 시기는 8월 말이었으나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6월 말~7월 중순 장마로 강수가 집중되는 점 고려시 사전 방재라는 당초 사업목적이 일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보수일정에 일부 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방부는 사업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를 조기에 확정하고 계약 절차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국가계약법」상의 경쟁계약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한편, 긴급계약 적용 시에도 사업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4. 연속적 주제의 연구용역에 대한 개별 수의계약 발주 부적절

가. 현황

시설정책사업¹⁾ 사업의 내역사업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사업은 군 공항 이전사업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8,1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시설정책지원	183,611	183,611	1,291	△6,407	178,495	162,672	5,999	9,824	185,124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131	131	-	△50	81	62	0	18	13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계약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533-320

동법 시행령은 제26조, 제27조에서 수의계약 허용 사유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생산자가 1인인 등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²⁾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라.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다. (생략)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다. (생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차.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마.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7) (생략)

나.~자. (생략)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25년 체결한 계약 190,030건 중 24.6%인 46,662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용역계약에 한정하여 보면 전체 19,401건 중 84.9%인 16,462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025년 체결된 계약의 계약방식별 건수]

(단위: 건, %)

계약방식		건수	비율
경쟁	일반경쟁	15,083	7.9
	제한경쟁	5,742	3.0
	지명경쟁	412	0.2
	2단계경쟁	210	0.1
	협상에의한계약	833	0.4
	기타(조달청)	121,088	63.7
수의		46,662	24.6
합 계		190,030	1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재구성

[2025년 체결된 용역계약의 계약방식별 건수]

(단위: 건, %)

계약방식		건수	비율
경쟁	일반경쟁	1,285	6.6
	제한경쟁	1,256	6.5
	지명경쟁	6	0.0
	2단계경쟁	125	0.6
	협상에의한계약	267	1.4
	기타(조달청)	-	0.00
수의		16,462	84.9
합 계		19,401	10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재구성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상호 논리적으로 연결된 두 건의 연구용역 관련, 후행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별도 발주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한 「국가계약법」 취지에 비추어 향후 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소요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시설정책지원(2533-320) 사업을 통하여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관련 연구용역 2건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관련 연구용역 개요]

(단위: 천원)

계약명	세부사업 비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 업체
			시작	종료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	시설정책지원 (2533-320)	19,800	2025-07-11	2025-08-01	“Y” 주식 회사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비 절감방안 용역	일반연구비 (260-01)	19,800	2025-07-31	2025-08-2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재구성

수의계약 발주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2)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각각의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이 1,980만원인 점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두 건의 과업 목적을 살펴보면, 후행연구가 선행연구를 전제로 하고, 선행연구 당시 후행연구의 필요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 등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확인된다.

[군공항 이전 관련 용역계약 주요내용 비교]

과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
과업 목적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신속 추진을 위하여 <u>개략적인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 판단</u> 등을 위한 <u>이전사업비를 현행화하는데</u> 목적이 있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중 '22년 광주 용역보고서 대비 '25년 단기 기준 이전사업비가 상당 증가함에 따라 <u>월환한 기부대양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u> <u>이전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u> 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 과업 내용	<p>가. '22년 광주시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주요항목에 대한 <u>현시점 기준단가</u> 변경 적용,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비교 등을 통한 주요 <u>수정·추가사항 식별</u> 및 이전사업비 변동액 개략 산출 (예시) <u>미군시설 이전비용 현실화, 주요 누락 항목 식별</u> 등</p> <p>나. 상기 주요항목 이외 세부 분석을 통해 <u>추가항목 식별·분석, 이전사업비 변동액 보완*</u> 산출</p> <p>다. 이전사업비 항목별 구체화, 세부 증·감 내역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p>	<p>가. 무안공항 이전을 가정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토목비용 절감방안 식별 (매립 비용 최소화, 효율적 시설배치 등)</p> <p>나. 현 시점('25년) 기준 시설면적 현행화 및 시설기본요구(안) 검토 후 건설 비용 절감 방안 식별</p> <p>다. 이전사업비 (토목, 건설 부분 등) 절감 항목별 구체화 및 절감비용 개략 산출 후 최종 보고서 작성</p>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로 재구성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선행연구의 경우 긴급한 소요제기에 따라 발주된 것으로 착수 시점(7.4.)에는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후행연구의 필요성은 이후 선행연구의 중간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제기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즉, 두 용역의 연관성은 사후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인 분리 발주를 기획한 것이 아니며,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건의 과업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후행연구가 선행연구를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두 연구는 별개의 독립된 수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선행연구 당시 후행연구의 필요성이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계약기간 측면에서도 선행연구가 종료(2025.8.1.)되기 전날인 2025.7.31.에 후행연구가 발주되었다. 국방부는 선행연구에 대한 중간결과를 참고하여 후행연구를 발주했다는 입장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후행연구가 매우 단기간에 계획·추진되었으며, 이는 적어도 국방부가 후행연구의 필요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소요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긴밀한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 동일 목적의 계약이 개별적인 분리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 후속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방식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학화훈련시설 개수 착수 부적정

가. 현 황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¹⁾은 실질적인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훈련장시설을 구축, 유지보수하고 일반교육시설을 건설·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018억 9,100만원 중 2,49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89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5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55,516	255,516	52,133	△5,757	301,891	249,368	28,957	23,567	247,86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시설 내부에 설치될 과학화훈련체계 도입사업이 2026년부터 개시됨에도 시설공사를 선 계획하여, 내부 시설·설비 제원 미확정으로 사업예산을 대거 이월하였는바 재정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계획시에는 사업 전제여건의 구비여부를 바탕으로 진척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6-302

[2025년도 과학화훈련장 개수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2025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육군 37사단 소부대(VR) 훈련장 개수	'25	1,346	기본조사설계비	24	24	100.0
			실시설계비	36	36	100.0
			공사비	1,155	591	51.2
			감리비	124	124	100.0
			시설부대비	7	7	100.0
			소 계	1346	782	58.1
육군 15사단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	'25~'26	1,346	기본조사설계비	24	24	100.0
			실시설계비	36	36	100.0
			공사비	1,155	-	-
			감리비	124	-	-
			시설부대비	7	7	100.0
			소 계	1346	67	5.0
육군 5사단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	'25~'26	1,963	기본조사설계비	33	33	100.0
			실시설계비	50	50	100.0
			공사비	1,691	-	-
			감리비	181	-	-
			시설부대비	7	7	100.0
			소 계	1962	90	4.6
육군보병학교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	'25~'26	1,306	기본조사설계비	24	24	100.0
			실시설계비	35	35	100.0
			공사비	1,120	-	-
			감리비	120	-	-
			시설부대비	7	7	100.0
			소 계	1306	66	5.1

자료: 국방부

육군 소부대 VR 과학화훈련장 개수 사업은 부대별 기존 건물을 개수하여 과학화 훈련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2025년 향후 도입될 과학화 훈련체계의 도입을 위한 개수공사 예산으로 5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16.9%인 10억 500만원만을 집행하였는데 그쳤다.

이는 국방부가 2025년 현재 사업이 개시되지 않은 과학화 훈련체계를 전제로 이를 수용할 시설을 개수할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이다. 즉 ‘육군 소규모 훈련장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사업’이 2026년 신규사업인 관계로 2025년 현재 과학화 전술훈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제원이 없어 개수의 전제가 되는 규격이나 소요공간, 동선 등 설계에 대한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설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체계 사업 개요]

사업명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체계
사업기간	2026~2027년
총사업비	149억 1,700만원
2026년 예산	70억 200만원

자료: 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과학화 전술훈련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시설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고, 구체적 제원이 없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도입된 육군사관학교의 과학화 전술체계를 샘플로 하여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설계 과정에서는 설계를 위해 추가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요소들이 다수 식별되었고, 시기상 아직 계약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별 장비의 제원을 요청·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설계 과정에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월·불용이라는 재정상의 비효율이 발생되었다. 국방부는 훈련시설의 선제적 설계를 계획하는 경우, 참여 가능한 업체와의 사전적 협의를 통해 공통적인 제원을 확정하여 설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향후 사업 계획시 선결 사업의 진척정도를 파악하고 사업을 순서에 맞게 진행하는 등으로, 후속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PC 리스 계약기간을 미고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 부적정

가. 현 황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¹⁾은 예비군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훈련장비,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69억 2,100만원 중 41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비전력 운영지원	43,654	43,654	2,870	397	46,921	41,169	2,041	3,711	43,08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방부는 예비군부대 PC 리스계약이 연도 중 기간이 종료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2개월분의 임차료를 편성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의 임차료분을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임차료 등 계약대금 편성시 계약기간이 연도 중 시작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임차료 집행 개월수를 면밀히 고려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부대 PC 및 모니터 총 3,232대를 계약기간 5년(2020.8.7.~2025.8.7.)으로 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5년간의 소요예산은 이자 1억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4,300만원이고, 계약 첫 해인 2020년에 5억 2,900만 원을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632-305

집행하고, 2021년부터 분기별로 1억 2850만원씩 집행하는 방식이다. 5년의 계약기간 종료 후 PC의 소유권은 국방부가 취득하며, PC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PC를 1년간 추가적으로(2025.8.8.~2026.8.) 사용 후 신규 임차계약으로 신형 PC를 도입하려는 계획이다.

[예비군부대 PC리스 계약 내역]

구분	총 수량	1대 기준		총 금액	계약 기간
		분기별 리스료 ¹⁾	취득원가 ²⁾		
예비군부대 PC리스	3,232대	39,800원	880,000원	28억 4,300만원	2020.8.7.~ 2025.8.7.

주1) 분기별 리스료 = 계약된 분기별 리스료 ÷ 총 수량

2) 취득원가 = 총 계약금액 ÷ 총 수량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계약 종료연도인 2025년에 한정하여 살펴볼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8월까지 2개 분기의 임차료를 집행하고, 이후로는 임차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2025년의 총 임차료 소요는 2개 분기분, 총 2억 5700만원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2개월치(4개 분기분)의 임차료로 5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예비군부대 PC리스계약 편성 및 집행내역(2020~2026)]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2020	529	529
2021	514	514
2022	514	514
2023	514	514
2024	514	514
2025	524	257

자료: 국방부

한편 국방부는 2026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계약기간이 최소 2026.8.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5년 계약금액의 20%, 즉 12개월분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20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예비군부대 PC리스계약 2026년 예산 편성 내역 및 산출기준]

편성액	산출 기준
5억 2,400만원	(지난 계약에 준하여) 총 계약금액 28억 4,300만원 ÷ 5년 = 5억 6,900만원 약 8% 조정하여 5억 2,400만원 편성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임차료의 편성금액에 연도별 편차가 발생할 경우 향후 12개월분의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12개월분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예산편성의 편의 또는 예산확보 가능성 향상을 위해 불용이 예견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편성 후 불용 역시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향후 계약이 연도 중 종료되는 경우 계약 존속 기간만큼의 계약대가를 면밀히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산편성 기준상 PC의 내용연수 이내임에도 전체 물량을 매각하고 새로운 PC를 임차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PC의 실제 노후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할 교체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5년의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PC의 내용연수 6년을 고려하여 1년의 추가 사용 이후 전체 물량에 대해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2026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PC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당초 6년에서 6~8년으로 추가 연장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6년 사용 PC를 일거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입장은, 국방부가 소유권 이전 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소유권 취득 이후 내용연수를 유동적으로 관리하여 연간 매각하는 PC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한 것과도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PC의 노후도나 활용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국방부의 내용연수 연장운용 취지에 맞도록 연장사용이 가능한 물량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데스크탑 컴퓨터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국방부 예산편성 기준 내용연수
5년	6~8년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26년 PC 1대 기준 취득원가가 2020년 88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88만원임을 고려하여 불용을 최소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물량을 매각하는 것이 아닌 PC의 실제 노후도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할 교체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합리적인 분할 교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리스 만료 전에 PC의 실제 노후도와 성능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연장 사용 물량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간부확보장려사업¹⁾은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고 학군사관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 등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753억 8,100만원 중 750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간부확보장려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간부확보 장려사업	93,380	93,380	-	△17,999	75,381	75,060	88	233	159,99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가산복무지원금은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제도와 양자택일적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부사관의 경우 두 제도간 의무복무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혜택 차이는 적어 의무복무기간이 긴 가산복무지원금에 대한 유인이 약한 등으로 제도간 불균형이 노정되므로, 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일부 지급 등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 가산복무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62조2)에 따라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1

2) 「군인사법」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원자에게 학비 등을 지급하고 수혜받은 기간만큼 1년에서 4년까지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획득이 어려운 중기복무장교와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3) 「군인사법」 제7조4)에 따르면 단기복무장교는 3년,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의 의무복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가산복무지원금 제도는, 이에 더하여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을 가산하여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5년의 집행실적을 보면, 국방부는 장교 가산복무지원금으로 총 4,753명을 대상으로 인당 평균 92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으로는 총 304명을 대상으로 인당 평균 640만원씩 지급하였다.

한편, ‘단기복무장려금’ 제도는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기준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군인사법 제62조의2는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

문제는 부사관의 경우, 기본 의무복무에 더하여 가산복무를 하는 대가로 지원받는 가산복무지원금, 즉 지원받는 등록금 합산액의 평균이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지급받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2025년 인당 평균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부사관은 연간 평균 640만원씩 2년간 총 1,30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후 6년(4년 의무복무+2년 가산복무)의 복무를 하여야 한

3) 예컨대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대학교 재학 중 가산복무지원금을 2년 수령한 경우 총 5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4)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사·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7.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5) 한편,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장려금은 모두 국가장학금과는 별개로 수혜가 가능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두 지원금을 중복지급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두 제도 간 균형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

다. 그런데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관할 경우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4년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 300만원의 근소한 차이는 2년의 가산복무에 대한 유인이 되기 어렵다.

장교의 경우 등록금 평균 지원액이 부사관에 비하여 크고 최대 수령 가능한 기간도 4년에 달하여(2025년 기준 920만원을 4년간 지급받는 경우 약 3,680만원을 지급받는다), 가산복무를 하더라도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받고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큰 지원금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있다.

[가산복무간부와 단기복무간부의 의무복무기간 및 지원금 비교]

구분	가산복무간부	단기복무간부	비고
장교	의무복무 7년(3년+4년) *4년 가정시	의무복무 3년	의무복무기간 가산비율(130%증가) 이상의 재정지원 증가율(210% 증가)
	4년간 등록금 상당액(평균 920만원*4) 약 3,680만원	1,200만원	
부사관	의무복무 6년 (4년+2년)	의무복무 4년	의무복무기간 가산비율(50%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원 증가율(30%증가)
	2년간 등록금 상당액(평균 640만원*2) 약 1,280만원	1,000만원	

자료: 국방부

실제로 이 결과 부사관 가산복무지원제도 지원자는 2022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해왔고, 2025년의 경우 304명으로 총 목표인원 1,037명의 30%도 채우지 못했다. 이는 장교의 경우와 대조되는데, 장교 가산복무지원제도 지원자는 근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2024년의 경우에는 목표인원을 상회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도 목표인원 98.6%에 달하는 등 준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봉급 인상으로 인한 부사관 복무 유인 약화와 더불어 복무 유도정책 간 정합성이 부사관의 경우에 더 부족하다는 점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2025 가산복무지원금 지급인원]

(단위: 명, %)

구분	장교			부사관		
	계획(A)	지급(B)	비율(B/A)	계획(A)	지급(B)	비율(B/A)
2023	4,706	5,123	108.9	1,379	666	48.3
2024	4,520	4,854	107.4	928	436	47.0
2025	4,821	4,753	98.6	1,037	304	29.3

자료: 국방부

[2023~2025 가산복무지원금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분	장교			부사관		
	편성(A)	집행(B)	집행률(B/A)	편성(A)	집행(B)	집행률(B/A)
2023	40,666	44,008	108.2	7,730	3,868	50.0
2024	39,325	47,087	119.7	5,196	2,800	53.9
2025	41,472	43,624	105.2	3,116	1,951	62.6

자료: 국방부

초급간부 중 부사관의 획득률이 장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부사관의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일부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가산복무지원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임관시 단기복무장려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으로 제도간 형평성·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0~2026 초급간부 획득률]

(단위: 명, %)

구분	장교			부사관		
	계획	실적	획득률	계획	실적	획득률
2020	7,000	7,000	96	12,000	11,000	95
2021	7,000	7,000	98	13,000	12,000	92
2022	7,000	7,000	95	13,000	11,000	86
2023	7,000	6,000	87	14,000	8,000	55
2024	7,000	7,000	90	13,000	7,000	50
2025	8,000	7,000	90	13,000	8,000	61

주: 인원은 '천 명' 단위

자료: 국방부

둘째, 가산복무 기간이 1년인 경우 단기복무장려금보다 그 혜택이 오히려 적어 복무기간 대비 지원금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1년 가산복무 지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1년 가산복무자에게 단기복무장려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산복무제도 하에서 육군과 해군의 경우 1년 가산복무자도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평균 등록금을 수준을 고려하면, 1년의 가산복무를 선택하는 경우 가산복무 없이 단기복무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복무기간은 더 길지만 재정지원 금액은 더 적다. 예컨대 부사관 1년 가산복무지원자는 1년 분에 해당하는 등록금(약 640만원)을 지급받고 총 5년을 복무해야 하므로, 가산복무를 선택할 유인이 적다. 이는 가산복무기간을 균별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고, 1년 등 단기간을 가산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유인을 제거하는 부작용을 가진다.

[1년 가산복무간부와 단기복무간부의 지원금 역전]

구분	1년 가산복무지원시		단기복무장교지원시
장교	의무복무 4년(3년+1년)	>	의무복무 3년
	등록금 상당액(평균 920만원)	<	1,200만원
부사관	의무복무 5년(4년+1년)	>	의무복무 4년
	등록금 상당액(평균 640만원)	<	1,000만원

자료: 국방부

따라서 1년의 가산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단기복무장교로 임관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복무장려금을 일정 비율 지원받게 하는 등의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황

작전상황연습 사업은 연합연습훈련 등을 실시하고 해외연락장교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70억 8,800만원 중 340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해외연락장교 운영 사업은 해외 교리·연락장교 운영 과정의 각종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8억 100만원 중 2억 1,200만원을 이전용 감액한 예산현액 15억 8,900만원 중 15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해외연락장교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작전상황연습	37,101	37,101	1,364	△1,378	37,088	34,060	1,992	1,036	36,149
해외연락 장교운영	1,801	1,801	-	△212	1,589	1,520	10	59	1,53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질의 사항

국방부가 운영하는 해외연락장교 25개소 중 4개소가 연락장교 파견을 위한 파견국(미국)과의 기관 간 약정(MOU)¹⁾ 체결 논의 지연으로 신설 이래 공석이 지속되어 해당 예산의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 선행하여 MOU 등에 수반되는 법률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고, 공석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국방부는 군사선진국 작전·정보·군수부대 및 기관 등에 파견되어 전·평시 연합 작전 및 훈련 협조, 군사정보 및 군수기술정보 획득, 군사협력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해외연락장교를 두는데, 현재 미국 20개소, 싱가포르 1개소 등 21개소에 해외연락장교가 파견되어 있다.

이후 2020년 1개소, 2021년 1개소, 2023년 2개소의 신설로 2026년 현재 총 25개소가 존재하나, 신설된 4개소는 신설 이래 계속하여 공석 상태이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신설 이래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다.

[해외연락장교 파견 현황]

순번	군 구분	파견국	최초 파견	MOU갱신주기	최근갱신
1	육군	미국	2014	필요시	2014
2	육군	미국	2019	필요시	2019
3	육군	미국	2016	10년	2016
4	육군	미국	1995	필요시	1995
5	육군	미국	2017	-	-
6	해군	미국	2015	3년	2025
7	해군	싱가포르	2019	3년	2021
8	해군	미국	2019	-	-
9	해병	미국	2008	10년	2008
10	공군	미국	2005	필요시	2004
11	공군	미국	2021	-	-
12	공군	미국	2004	-	-
13	공군	미국	2021	-	-
14	공군	미국	2011	-	-
15	공군	미국	2014	-	-
16	공군	미국	2025	-	-
17	합참	미국	2005	필요시	2005
18	합참	미국	2015	10년	2015
19	전략사	미국	2017	10년	2017
20	국수사	미국	2010	필요시	2010
21	정보본부	미국	2010	-	-
22	해군	미국	-	-	-
23	공군	미국	-	-	-
24	해병대	미국	-	-	-
25	의무사	미국	-	-	-

자료: 국방부

신설된 4개소 공석이 발생한 이유는 미국과의 해외연락장교 파견에 관한 MOU 체결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조항 포함 거부'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측은 MOU 내용으로 공무 중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호 포기 등을 명시하고자 하였는데, 국무총리훈령인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관 간 약정에는 국가간의 국제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없는데서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약정 체결 시 준수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자료: 법령정보시스템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현재 기존 MOU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설된 직위에 대한 파견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 간 조약²⁾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이며, 이는 총리령상 제한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적 효력을 지닌 조약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MOU 내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 협정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협정 서명이 예상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약정 체결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은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조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법령의 정비가 수반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제약 요인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활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가칭)

한편, 관련 총리령이 이미 약 15년 전인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상황에서 손해 배상청구권 조항이 포함된 약정(MOU)을 바탕으로 연락장교 파견 절차가 일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과거에 MOU와 국내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합성 검증이 다소 미진였다는 점을 의미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포괄협정 체결 등 대안적 논의가 다소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향후 외국과 MOU를 체결하려는 경우 합의 내용이 국내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쟁점이 있는 경우 MOU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쟁점의 해소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으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국방부는 전년도 이월예산 6,708억 6,600만원 중 5,855억 5,900만원(87.3%)을 집행하고 852억 5,600만원(12.7%)을 불용하였다. 이는 2025회계연도 전체 세출예산현액 44조 2,111억원 중 불용액이 7,735억원(1.8%)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당해연도 집행액 중에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이월대상이 아닌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률의 단순비교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나, 주로 사업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비교하더라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의 경우 2025년도 전체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9%였으나, 전년도 이월예산의 집행률은 78.7%였다. 군수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025년도 전체 집행률은 세출현액 대비 93.7%였으나, 전년도 이월예산의 집행률은 81.6%에 불과했다.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집행률은 94.3%였으나, 이월예산의 집행률은 27.9%로 저조하였다.

[주요 프로그램 집행률 및 이월액 집행률 비교]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현액(A)	집행액(a) [(a/A)]	전년도 이월액(B)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b) [(b/B)]
급식및피복	2,526,162	2,423,157 (95.9)	14,253	11,222 (78.7)
군수지원및협력	6,662,995	6,242,012 (93.7)	148,108	120,919 (81.6)
국방행정지원	889,820	838,781 (94.3)	16,210	4,526 (27.9)

자료: 국방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나. 분석의견

이월사업의 취소 및 계약해제 등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월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월 전 업체의 신용 상태와 기술력에 대한 정밀 실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방향의 수정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으로 이월을 엄격히 하여 이월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2025회계연도의 전년도 이월예산 불용률은 12.7%로, 이는 세출예산 전체의 불용률 1.8%에 비해 높다. 2023년과 2024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이월액 대비 불용률은 각각 10.0%와 9.3%로 세출예산현액 전체 불용액 각각 2.5%와 1.4%에 비해 높았다. 특히,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으로 전체 불용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년도 이월액의 불용률은 2023 대비 2025년 9.3%에서 12.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2023~2025 국방부 세출예산 불용률, 전년도이월액 불용률]

(단위: 백만원, %)

	예산 현액(A)	이·전용	이월액	불용액(B)	비율(B/A)
	2023	40,957,100	303,622	967,166	1,016,838
	전년도이월액(C)	(C) 중 재이월액	(C) 중 불용액(D)	비율(D/C)	
	859,650	1,078	85,722	10.0	
2024	예산 현액(A)	이·전용	이월액	불용액(B)	비율(B/A)
	42,728,600	522,209	670,866	600,169	1.4
	전년도이월액(C)	(C) 중 재이월액	(C) 중 불용액(D)	비율(D/C)	
	967,044	583	89,931	9.3	
2025	예산 현액(A)	이·전용	이월액	불용액(B)	비율(B/A)
	44,211,100	683,865	768,514	773,502	1.8
	전년도이월액(C)	(C) 중 재이월액	(C) 중 불용액(D)	비율(D/C)	
	670,866	51	85,256	12.7	

자료: 국방부

이월예산의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계약 집행잔액 등 예산집행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가 계약업체의 계약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부터 발생하였다. 즉 당초 업체의 연내 납품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예산을 한 차례 이월하였으나, 업체의 납품 제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이듬해에도 집행이 불가하여, 「국가재정법」상의 재이월불가 원칙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 중 상당수는 이월 결정 당시 업체의 조달 및 이행 능력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이월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신전자장비 유지(2333-309) 사업 내 공군 통신장비 부품구매 사업의 경우 2024년 계약 체결 후 업체의 납품능력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2025년 현장확인 결과 내부 소프트웨어 설계능력 부족 및 해외구매 자재 단가 상승으로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2025.8. 계약을 해제하고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다. 또한 화력장비(2331-302) 사업 중 총포용 세척키트(RB-127) 구매 사업의 경우에도 2024년 8월 계약 체결 이후 업체의 연내 납품 불가가 예견되었고, 결국 해당 사업 역시 차년도로 넘어간 이후 업체의 능력 부족에 따른 계약 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면서 2025년 5월에 계약이 해제되어 이월 예산이 최종 불용되었다. 군수정책 지원(2341-301) 사업 내 군수품상용전환사업, 특수피복(1241-302) 사업 내 방탄판 구매사업에서도 업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이월 후 2025년 연내 납품을 받지 못하여 사업예산을 불용하였다.

1)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납품 불가로 계약 해제 후 불용된 사업 예시]

세부사업	내역사업	불용사유
통신전자장비유지	공군 통신장비 부품구매	업체 납품능력 부족으로 이월 후 2025년 설계 능력부족 및 해외구매 자재 단가 상승으로 납품 불가 해제
화력장비	총포용 세척키트	업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이월 후 2025년 연내 납품 불가 해제
군수정책지원	군수품상용전환	업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이월 후 2025년 연내 납품 불가 해제
특수피복	방탄판 구매	업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이월 후 2025년 연내 납품 불가 해제

자료: 국방부

이월된 이듬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지출필요성이 소멸·변경되며 이월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정보체계개발유지사업(2131-302) 내 체계개발 구축용 자산취득비의 경우 체계개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은 당초 2024년 12월 종료 사업이었음에도 체계개발이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예산이 이월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5년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이 기술 진부화로 구매실익이 소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매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체계개발 및 테스트 진행 과정에서 진부화되거나 활용성이 제한된 일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대체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매하는 등 과업변경 심의를 거쳐 정상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월예산 39.4억원 중 일부 집행잔액(3.1억원)이 발생하여 불용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체계개발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년도인 2024년 시점에는 최종적인 소프트웨어 구매 실익을 사전에 검토하기에 행정적 제한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월 단계에서부터 이월시 사업의 적기를 놓쳐 특정 소프트웨어의 구매 실익이 감소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없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과업변경을 통해 대체 소프트웨어를 구매함으로써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된 소프트웨어의 진부화 등으로 인해 수억 원의 예산이 이월 후 불용되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 만약 예산 이월 검토 과정에서 과업 변동 및 자산 취득의 실익 변화 가능성을 보다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승인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다면,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적정 수준으로 정리하고 당해 연도 사업 추진 방향을 더욱 신속하게 재설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월 후 사업계획 변경되어 불용된 사업 예시]

세부사업	내역사업	불용사유
정보체계 개발유지	체계개발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매	해당 소프트웨어 기술 진부화로 구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이 취소

자료: 국방부

이월된 예산의 불용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증가시키고 예산의 편성 및 배정 과정에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예산 및 자금을 특정 사업에 2년간 묶어둠으로써, 국방부 예산의 총량적 한도 내에서 타 시급한 전력운영 및 장비보급 사업으로 예산과 자금을 배분할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월 예산은 즉시 배정된 것으로 보아²⁾ 자금이 상시 확보되게 되는데, 불용은 결과적으로 일시차입의 규모 증가로 인한 이자발생 등으로 국고관리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정 운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전력 운영의 측면에서도 각 군 소요 물자, 장비, 용역 등의 조달이 이월로 한 차례 지연된 후 다시 좌초될 경우 전력 공백이 길어지며 훈련, 행정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월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이월 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월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납기지연이 예상되는 계약건의 경우 이월 전 선제적으로 업체의 신용 상태, 자금 조달 능력, 기술적 이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차년도 내 납품가능성을 엄격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월 규모를 산정하거나 이월을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월 과정에서 사업의 적기를 놓쳐 지속의 실익이 감소하지 않았는지,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이월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가. 현황

시설정책사업¹⁾ 사업의 내역사업인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사업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2025년도 예산현액 1,476억 3,800만원 중 1,36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시설정책지원	183,611	183,611	1,291	△6,407	178,495	162,672	5,999	9,824	185,124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150,315	150,315	13	△2,690	147,638	136,450	4,030	7,157	162,40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2019년 11월 법 제정, 2020년 11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후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는데, 매년 약 42만명의 주민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42만 3,600명에게 1,18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참고로,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내 구역(1종, 2종, 3종)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하되, 훈련에 따른 소음발생일수, 전입시기,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제·감액한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533-320

[시행령상 소음대책지역 구역 지정 기준]

구역	군용비행장	소형화기 군사격장	대형화기 군사격장
1종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소음영향도[dB(A)] 82 이상	소음영향도[dB(C)] 94 이상
2종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소음영향도[dB(A)] 77 이상 82 미만	소음영향도[dB(C)] 90 이상 94 미만
3종	(군용비행장 소재 지역별 상이) 대도시지역 85 이상 90 미만 기타지역 80 이상 90 미만	소음영향도[dB(A)] 69 이상 77 미만	소음영향도[dB(C)] 84 이상 90 미만

주: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dB(A)"란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소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dB(C)"란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대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시행령상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 지급 월 기준금액]

구분	1종	2종	3종
금액	6만원	4.5만원	3만원
감경·공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공제하거나 감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대책지역으로 전입한 시기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근무지나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 산정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민이 실제 거주한 날수에 비례하여 지급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나. 분석 의견

첫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지연되어 객관적인 소음측정 데이터 축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조속히 설치 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소음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측정기를 고정 설치한 후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소음도를 실시간 측정하는 설비로서, 동일한 조건 하 상시적, 연속적인 소음 측정을 통해 신뢰도 높은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군소음보상법」 제8조2)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3~2024 2년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후 2024년부터 군별 본사업을 개시하여 151개소 293지점 설치를 계획하였다.

[자동소음측정기 설치계획]

(단위: 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육군	계획	-	15	-	149	2
	설치	-	15	-	149(예정)	-
공군	계획	15	90		-	4
	설치	15	19		71(예정)	-
해군	계획	-	-	-	9	-
	설치	-	-	-	9(예정)	-
해병대	계획	-	14		-	-
	설치	-	-	-	14(예정)	-

자료: 국방부

2) 「군소음보상법」

제8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을 이용하여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공군과 해병대 소관 사업의 경우 각각 90개소, 14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을 2024~2025년, 총 2년으로 설정하였으나, 사업 진행 중 설치장소 선정 간 주민과의 갈등, 공유재산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의 집행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2024년의 경우 설치 및 운영 예산 34억 1,387만원 중 12억 2,653만원(35.9%)을 집행하였고, 2025년의 경우 90억 724만원 중 6,600만원(0.7%)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등 2년 연속으로 예산의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

[2024~2025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편성(A)	집행(B)	집행률(B/A)
2024	3,414	1,227	35.9
2025	9,007	66	0.73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설치 용역업체 계약 후 설치지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얻어 설치계획을 고시, 이후 공사절차와 보안측정 등을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인 사업 지연 경위를 살펴보면, 공군 사업의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지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3개월의 5배인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해병대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업체 선정단계에서 일부 참여업체가 낙찰자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이 중단된데다, 공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치지점 선정 과정이 지연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협의과정이 지연되는 것 자체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설치 개소 수가 많은 동 사업의 특성상 주민협의 과정에 현실적인 기간을 전제하고 개소별 행정절차 소요도 고려하는 등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설정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 변수 관리에 있어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의 시행 이후 국방부는 군소음저감 및 주민보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중인데, 자동소음측정망으로 확보한 소음 데이터는 소음 저감방안 마련, 소음보상체계의 실효성 확보 등 소음정책 전반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소음영향도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음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소음피해 관련 정책 전반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사업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지연은 측정자료 통계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소음영향도조사 신뢰도 향상, 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 기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방부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가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잔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하며, 구축된 자동소음측정망 소음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소음 저감방안 수립 등 소음피해 관련 정책 전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와 범위에 관한 예외규정이 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군사시설 재배치, 항공전력 변화 등 소음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기 도래 이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방부는 중대한 변화 발생한 경우를 군소음보상법상 소음대책지역 재지정의 사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역시 5년의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기간 단축의 근거는 현행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전제되어 있을뿐인데, 소음영향도조사는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서 실시 시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소음영향도조사 관련 규정]

내용	규정여부	비고
소음 영향도조사 실시	근거규정 있음(법률) 제5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 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 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5년 주기 실시	근거규정 있음(시행령) 제3조 ⑥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 시한다.	
중대한 변화 있을 경우: 5년 미만	직접근거 부존재 간접근거 존재 제5조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 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 정·고시하여야 한다. <u>소음영향도에 중 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u>	소음영향도조사 기본권 제약요소 고려하여, 중대 변화로 인한 예외적 시 행에 대해서도 직접 규 정 필요
주민 미거주 등: 5년 초과	현재 미실시중이나, 인력, 예산투입의 효율성 및 민원관리 측면에서 일정 경우 5년 이상의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 필요	

반대로, 거주자와 정온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정책적 효과와 실익이 크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나 주기를 연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부 보상대상자가 없는 지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음환경 변화나 지역별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소음대책지역의 실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립된 조사 계획은 대규모 예산의 불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국방부는 2025년도 소음영향도 조사 예산 136억 2,000만원 중 40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당초 경계지 확장 검토를 위해 편성한 예산의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계지 확장 제도는 2024년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인접한 일정 지역을 추가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산 편성 당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141개 중 5년 주기에 따른 소음영향도 재조사 대상 90개소에 대해서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경계지 확장 검토를 병행하고, 재조사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51개소에 대해서는 경계지 확장 여부만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경계지 주변에 실제 거주자가 존재하지 않아 경계지 확장 검토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지정·고시된 모든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조사의 실익이 없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비록 실익 없는 지역을 제외하여 예산 낭비를 막았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밀한 사전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별 실태에 맞는 조사 범위와 주기의 차등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집행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별 인구 수, 정온시설 수, 보상대상자 현황, 소음 관련 민원 발생 빈도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지속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영향도 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군사시설 재배치나 전력 변화 등 소음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의 정기조사 주기와 관계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반대로 조사 실익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의 간소화 또는 조사주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군무원인건비 사업¹⁾은 군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조 8,194억 800만원 중 2조 8,04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45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군무원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군무원 인건비	2,674,491	2,674,491	-	144,917	28,194,800	28,048,600	-	14,548	28,401,11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2-151

9-1. 군무원 인력정책의 일관성·체계성 확보 필요 등

가. 현 황

군무원은 군에 소속된 특정직공무원으로,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군무원으로 분류되고, 임기제군무원은 다시 일반임기제군무원, 전문임기제군무원,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군무원의 분류]

① 일반군무원	② 전문군무경력관	③ 임기제(일반군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연구·예비전력 및 행정관리분야 군무원 • 계급: 1~9급 • 정년: 60세 • 특징: 승진을 통한 상위직 진출 / 전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업무 종사 일반군무원 * 교수, 교관, 연구관 등 • 계급: 기군(5급 상당 이상)~다군(8~9급 상당) • 정년: 60세 • 특징: 동일계급·직위에서 정년까지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계약에 의해 채용되는 군무원 • 종류: 일반·전문·한시임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대체인원 - 전문: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직위 - 한시: 육아 휴직자 대체를 위해 기간제로 운영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의 역할과 정의를 명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국군조직법」 제16조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군무원을 국군의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역할을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군수·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군무원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군조직법」,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기본법」, 「소방기본법」 등에 정의 규정¹⁾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군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군무원 신분 및 활용 관련 규정]

규정 법률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② 제2호 특정직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
국군조직법	제16조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군무원인사법	제3조 (일반 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② 민간인력(군무원)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20조 (군무원의 정원배정 기준) ① 군무원의 정원은 행정·기술·연구분야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에 배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무원의 신분과 임무를 포함한 정의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고, 2024년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실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²⁾

- 1)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군인”이란 전사와 평시를 막론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기본법」 제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하며,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7호)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이하 생략)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 제2조
 “소방공무원”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2) 국방부에 따르면, 2026.5. 전군 및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국군조직법」 개정 관련 국방부 검토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무원”이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비전투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및 특수업무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군무원의 정의와 역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군무원 정책의 출발점인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군무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합의에 수 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6. 6. 현재까지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군무원의 인사행정, 처우 등 정책 전반에 있어 혼선과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조속히 군무원의 신분과 임무 등을 포함한 정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직위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군무원의 채용·활용·배치 등에 관한 인사정책이 일관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군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의 임무와 역할 정의를 전제로 하여 군무원 인력정책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전투분야 직위를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군무원의 정원은 2018년 26,919명에서 2022년 44,859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25년까지 4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2025년 군무원 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원(A)	26,919	31,655	34,928	40,295	44,859	45,956	46,352	46,512
현원(B)	25,745	29,132	32,079	36,969	40,708	42,439	43,292	44,242
운영률 (B/A)	95.6	92.0	91.8	91.7	90.7	92.3	93.4	95.1

자료: 국방부

그런데 민간인력으로서의 군무원 확대 과정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군무원의 인사·활용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복무 직위와 채용 규모 관련, 최근 몇 년 사이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비전투분야 업무”란, 국군의 임무 중 직접 무장하여 싸우는 전투임무를 제외한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술, 연구, 행정관리 분야 업무를 말한다.

국방부는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분야 민간인력으로서 군무원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³⁾ 상비병력의 감소로 인한 인력공백 상황 하에서, 격오지, 대대급 등 최전방부대에도 군무원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군무원 신분 특성이 반영된 직위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신분간 갈등, 임무·역할의 혼선, 근무환경 불만에 따른 이탈이 급증하자, 국방부는 군무원 신분에 적합한 직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현역과 군무원 직위 간 전환·재전환을 통하여 신분별 적정 직위를 설정하고자 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기조의 일환으로 육군은 최근 3년간 군무원 직위 538개를 현역으로 재전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대원칙은 목적에 맞는 직무 분석과 역할 정의가 선행된 후 배치직위와 채용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무원의 명확한 정체성 확립 없이 단순히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수량적 접근으로 군무원 증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군무원의 확대채용 이후 직위와 배치지역 관련 변동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단계적 인사행정 추진이 미흡하여 현역과 군무원 직위 간 전환·재전환에 따른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채용 및 운영규모 결정의 합리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에는 대대급에 편성되어 보직중인 군무원 중 근접전투 가능성,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별로 현역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는 여단급 부대 및 전방의 군단·사단 직할부대에 편성된 군무원 직위 중에서도 현역 직위로 전환이 필요한 직위를 검토하여, 연도 및 중기부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방부는 신규 채용 규모의 경우 2026년 기준 신규채용 계획을 예년대비 적은 상반기 기준 약 3,021명⁴⁾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자연 결원과 공석 예상 소요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현역과 군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위 전환 소요가 채용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 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4) 하반기 경쟁경쟁채용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수치이나, 이는 통상 수 백명 수준이며, 각 군에서 제기하는 소요를 바탕으로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전적으로 채용규모를 예측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역 전환 직위에 보직되어 있던 기존 군무원 인력의 재배치 소요는 결과적으로 차기 연도 공석 산정과 신규 채용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즉, 군무원 직위를 현역으로 재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인력의 이동과 재배치는 전체적인 공석 소요를 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신규 채용 규모 산정과 완전히 독립된 요소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군무원 확대 정책을 개진한 지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군무원의 명확한 역할과 활용 직위, 배치 부대에 관한 안정적인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채 직위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는 것은 정책의 체계성과 인력 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23~2026 군무원 채용계획 및 실적]

(단위: 명)

연도	채용계획	채용실적
2023	4,655	4,215
2024	4,357	3,896
2025	5,140	4,073
2026	3,000명대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군무원의 정의와 역할 설정 후 직위 판단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군무원 인사정책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9-2.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 ① 군무원의 정원구조 개선 필요

가. 현황

2025년 기준 군무원의 정원구조는 7~9급 등 하위직급이 전체 정원의 72.8%를 차지하는 피라미드형을 구성한다. 2018년의 경우 6~8급이 두터운 구조였는데 2023년 이후로는 7급, 8급이 두터운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8, 2023~2025 군무원 직급별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23		2024		2025		(비교) 일반직 국가공무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21,738	100	38,241	100.0	38,658	100.0	38,711	100.0		
1급	5	0.0	3	0.0	3	0.0	3	0.0	1,135 (고공단)	106
2급	50	0.2	55	0.1	56	0.1	56	0.1		
3급	220	1.0	234	0.6	230	0.6	230	0.6	879	0.5
4급	740	3.4	814	2.1	812	2.1	820	2.1	6,660	3.7
5급	1,838	8.5	2,660	7.0	2,904	7.5	2,909	7.5	16,758	9.2
6급	4,859	22.4	6,302	16.5	6,519	16.9	6,802	17.6	36,333	19.9
7급	5,274	24.3	10,232	26.8	10,418	26.9	10,552	27.3	43,756	24.0
8급	4,695	21.6	10,464	27.4	10,413	26.9	10,201	26.4	23,265	12.8
9급	4,057	18.7	7,477	19.6	7,303	18.9	7,138	18.4	17,377	9.5

주: 음영표시는 정원비율이 높은 직급 상위 세 개임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무원의 신규채용 확대 과정에서 2018년 대비 2025년 증원 규모의 81.7%가 7급 이하의 하위직급으로 채용됨에 따라, 2018년 6급-8급이 두터운 구조에서 7급, 8급이 두터운 피라미드형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하위직급 군무원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군무원의 직위 선별시 군무원 정원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무원 정원구조의 하위직급 쏠림 문제는 군무원의 정원확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데, 군무원의 정원 구조는 7급 이하의 하위직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일반 국가공무원 조직의 직급별 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2025년 증원 규모의 81.7%가 7급 이하의 하위직급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중간 및 상위 직급 직위 수 자체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증원규모 내에서 하위직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중간관리자 직급(5~6급)과의 비율차이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대비 2025년 정원은 16,973명 증가하였으나, 증원 규모의 81.7%가 7급에서 9급 정원이다. 이는 승진 적체의 심화 사유로 작용하여 승진 기회 부족으로 인한 군무원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2018년 대비 2025년 직급별 정원 증원규모]

(단위: 명, %)

구분	2018(A)	2025(B)	증가인원 (C=B-A)	증가인원의 직급별 비중
계	21,738	38,711	16,973	100
1급	5	3	△2	0.0
2급	50	56	6	0.0
3급	220	230	10	0.1
4급	740	820	80	0.5
5급	1,838	2,909	1,071	6.3
6급	4,859	6,802	1,943	11.4
7급	5,274	10,552	5,278	31.1
8급	4,695	10,201	5,506	32.4
9급	4,057	7,138	3,081	18.2

주: 1. 9급 정원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9급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

2. 승진 등을 고려한 군무원 정원구조 검토 시 진급불가능한 전문군무경력관 가~다군은 제외 필요하므로, 직급별 정원에는 예비전력관리직군, 전문군무경력관 제외

자료: 국방부

한편, 2025년 기준 군무원 중도퇴직자는 1,466명으로 2023년 및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퇴직자의 7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99명(47.7%)이 입직 3년 이내의 초임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5 군무원 퇴직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퇴직자	정년퇴직자	중도퇴직자	중도퇴직자	
				3년내 퇴직자	1년내 퇴직자
2021	1,656	611	1,045 (100)	561 (53.7)	214 (20.5)
2022	2,020	631	1,389 (100)	884 (63.6)	356 (25.6)
2023	2,288	568	1,720 (100)	1,125 (65.4)	504 (29.3)
2024	2,243	605	1,638 (100)	960 (58.6)	399 (24.4)
2025	2,083	617	1,466 (100)	699 (47.7)	250 (17.1)

자료: 국방부

물론 이러한 조기 면직 현상이 전적으로 승진 적체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하위직급의 낮은 보수 체계나 격오지 근무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다만, 단기간·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하위직급 편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승진 적체 부담이 잠재적인 이탈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위직급 단기간·대규모 증원에 따른 승진적체는 직급별 직위가 한정되어 있고 승진소요기간, 입직연도별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단기간의 인사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 군 중기부대계획 상 중간직급 확대반영 및 기획예산처 협의 추진을 통한 정원구조 개선을 군무원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적 해결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간·대규모 증원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급별 증원인원과 향후 승진소요, 직위현황을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국방부가 군무원 정원 확정시 직급 정원 간 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급격한 상비병력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성은 인정되었던 측면이 있으나, 정원구조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면직률에 영향을 미쳐 국방인력수급에 악영향을 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군무원 정원 설계시 직급별 균형을 고려하고, 부대계획 반영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간관리자 직급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원구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9-3.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 ② 군무원 주거지원 확대 필요

가. 현 황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에게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제공하고,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등 군 숙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법은 적용대상을 현역 군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²⁾ 다만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이하 “군 주거 훈령”)에 제한적으로 군무원의 주거지원 관련 규정을 두어, 관사 또는 간부숙소에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으며, 각 군 등의 장으로 하여금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이하 “격오지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군인 및 군무원 주거지원 근거규정]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을 대한 이자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시설관리 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사 또는 간부숙소가 장기공실이 예상되는 경우,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국방대학교수, 국방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어린이집 교사 등 민간 고용 인력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입주 조건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입주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입주기간 내에도 관사의 경우 별표3제3호가목, 간부숙소의 경우 별표3제5호가목의 퇴거기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 도래일을 적용하여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보수공사 실시 등 별표3 이외의 퇴거사유 발생 시 퇴거기한은 퇴거통보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36조(간부숙소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⑦ 각 군 등의 장은 격오지(GOP 지원부대, 서북도서 등) 근무 군무원에 대해 군 주거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군인보수법」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①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과 재외공무원에게는 별표 6의2에 따른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나. 분석의견

군무원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군인과 달리 관사 등 군주거시설이 한정적으로 제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특히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등 군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군무원은 「군인복지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관사 또는 간부숙소 등의 군 숙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 지급대상도 되지 않는다. 한편, 군인 중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중 관사 등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군인보수법」 제1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원받는데 이 역시 군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하에 있다는 점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군 숙소 지원을 포함한 주거관련 지원제도의 적용을 일체 받지 못한다. 그 결과, 동일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군인에 비해 군무원은 주거비/교통비 지출이 월등히 높아 실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주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규정 하에서 국방부는 군 주거 훈령을 통해 군무원에게 제한적으로만 관사 또는 간부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8. 기준으로 격오지 등 근무 군무원 1,753명 중 38.5%인 675명만이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군무원 주거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8. 기준			2024.8. 기준			2025.5. 기준		
	보직	입주	입주율	보직	입주	입주율	보직	입주	입주율
전국	40,802	6,177	15.1	42,325	6,527	15.4	43,109	7,501	17.4
격오지 등	1,801	504	28.0	1,784	598	33.5	1,753	675	38.5

자료: 국방부

참고로, 군무원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 직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주거지원 대상³⁾임에도 불구하고, 격오지의 경우 공단의 주택공급이 적고, 전국단위 인사교류 대상이 되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공단의 임대주택에 한번 입주하게 되면 다음 전출지에서는 3순위 이하⁴⁾가 되어 주거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⁵⁾⁶⁾

그런데 주거 미지원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열악성은 군무원의 이탈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2021~2023년 육군 의원면직자 2,572명을 대상으로 면직사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면직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원인은 숙소 미지원이었다.

3) 「국가공무원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7조(입주자 선정순위)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제2201259호) 검토보고(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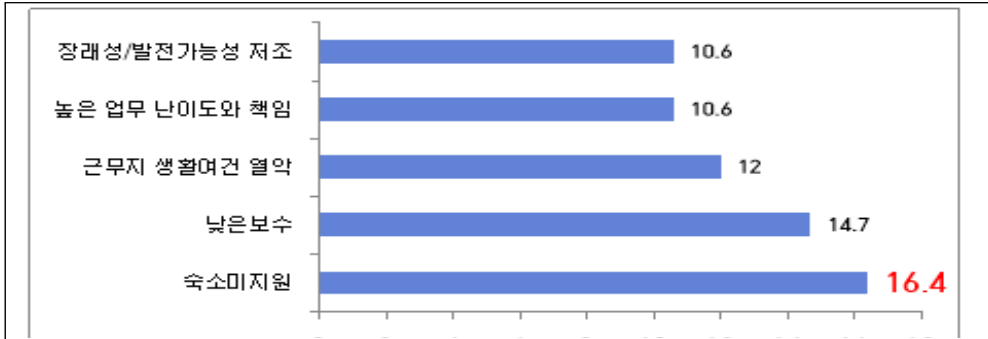
6)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등 입주 현황]

구분	운영세대	군무원 입주세대	경찰 입주세대 (해양경찰 포함)	소방공무원 입주세대
공무원 임대주택	15,696세대 (100%)	212세대 (1.4%)	2,701세대 (17.2%)	1,429세대 (9.1%)
임대 후 분양아파트	247세대 (100%)	5세대 (2.0%)	36세대 (14.6%)	17세대 (6.9%)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

[2021~2023 육군 의원면직자 면직사유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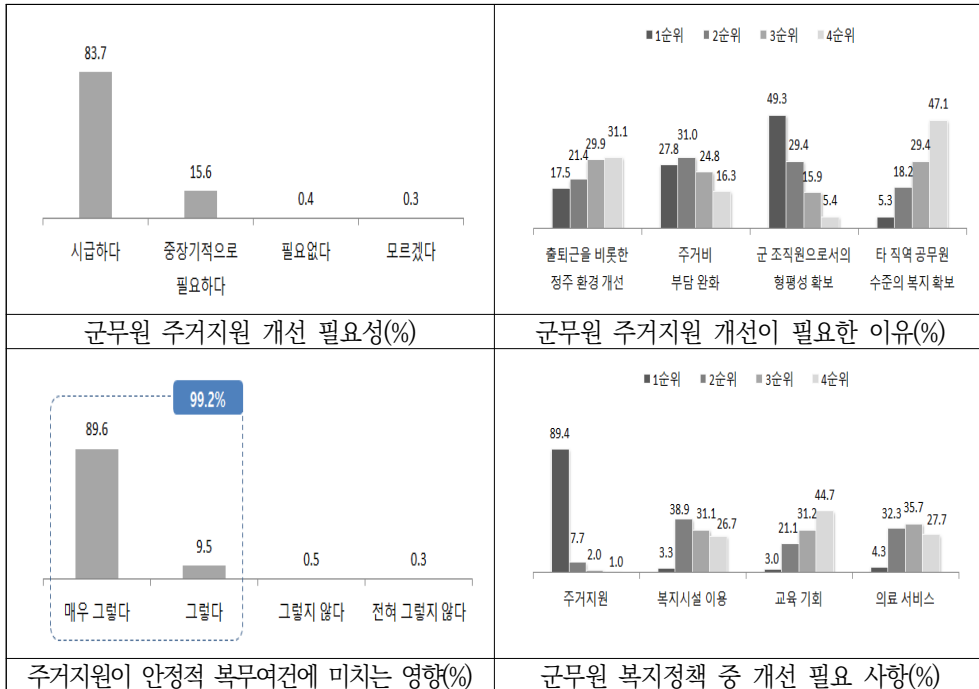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방부

KIDA가 2021년 실시한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83.7%가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답변하고, 99.2%가 주거지원이 안정적 복무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는 등 군무원의 주거지원 수요와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주거지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KIDA,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 방안 연구」, 2021.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도 2026.5.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과 「군인복지기본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⁷⁾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군무원 주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중에 있다.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동법 내 주거지원 규정 대상으로 ‘군무원’을 명시하고자 하는 점은 일치하나,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의무로 규정하는지 여부, 주거지원 대상 군무원을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정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제22대 국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내용	비고
송옥주의원안 (2024.6.20.) ⁸⁾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② 국가는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시하는 ①항에 이어 <u>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②항을 신설</u>
김성원의원안 (2024.7.1.) ⁹⁾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 및 군무원(국방부 장관이 정한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서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하여 제공된다. 1.~2.(생략) 3. 주거보조비(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한정하여 제공한다.)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 내에 <u>군무원을 격오지근무자에 한정하여 추가함</u>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주거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7)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 취약지역(격오지 등) 근무 군무원 주거권·의료권 강화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2026.5.18.)

8) 의안번호 제220740호

9) 의안번호 제2201259호

구분	내용	비고
강대식의원안 (2025.4.22.) ¹⁰⁾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 및 군무원(격지·오지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서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하여 제공된다.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 규정 내에 <u>군무원을 격오지근무자에 한정하여 추가함</u>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한편, 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 비율이 낮다는 점뿐만 아니라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상 군무원은 입주지원 후순위자로서, 최초 1년의 입주 기간 이후에는 계약상의 입주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새로운 입주신청자 발생시 2개월 이내 숙소에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2022.12.)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일부 부대 예규에 남아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입주 신청자 발생시 2개월 내 퇴거하도록 하는 일부 부대 예규를 조속히 정비하여 군무원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10) 의안번호 제2210040호

9-4. 군무원 처우개선 관련: ③ 약사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군무원 약제지원 확대 필요

가. 현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¹⁾은 군인과 군무원을 모두 군보건의료체계와 군의료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은 제23조에서 약사의 의약품 조제에 대한 예외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만을 포함하고, 군무원은 직접 조제 가능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은 「약사법」의 위임 하에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허용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에도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만이 규정되어, 군무원은 직접 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 등 군인에 대한 의약품 직접조제 근거규정]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0.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나. 분석 의견

민간 의료기관이 부재한 격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동일 여건의 군인과 달리 군의료기관에서 직접 의약품을 지원받지 못하여 의료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약제지원이 가능한 격오지 군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나아가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의 의약품 직접조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2000.7. 의약분업이 시행되며 의약품의 조제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과 관련한 예외는 「약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①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0호는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의약품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동조에 군무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군무원은 의무복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을 군무원과의 비교집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²⁾

② 「약사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서는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의 군인이란 「약사법」과의 해석 균형상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을 제외한 ‘직업군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 시행령 규정의 위임근거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1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23조제4항제10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 시행령에서 군의료기관 직접조제의 대상으로 직업군인은 포함하면서 ‘군무원’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비록 입법정책적 판단으로서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실상 동일한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법률 제8365호 「약사법」 부칙 제4조3)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를 포함하고 있다.⁴⁾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군부대에서는 의약품을 직접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사법」

2)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의안번호 제2119305호)군무원을 이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보건복지부는 군무원을 의약분업의 예외로 포함시키는 것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판단한 바 있다.

3) 「약사법」

제4조 (가족계획용 의약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가족계획용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은 제44조·제50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열차·항공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의 수여 및 판매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실수요자에게 수여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4)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2조(특수장소의 지정 등)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격오지 군부대

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군 의료기관에서는 군무원에 대한 약제지원이 가능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군무원 약제지원이 가능한 예외 의료기관은 900여개소 군의료기관 중 29개소에 불과하다.

이렇듯 일부 예외가 되는 군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군무원은 군의료기관 내에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지 못하므로, 민간 약국이 부재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여지가 크다.⁵⁾

「약사법」 등에서 군무원을 직접조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군인과 군무원이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규정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취지에 비추어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군무원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군무원 군의료기관 진료시 약제 지원’을 추진 목표 중 하나로 포함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추진결과 환류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약사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으로서 군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고, 2025년, 2026년에는 추진계획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았다. 군무원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통하여 볼 때, 국방부가 「약사법 시행령」 개정 또는 약제 지원이 가능한 군의료기관 확대에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약제지원이 가능한 격오지 군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나아가 군무원도 국군의료시설의 의약품 직접조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5) 2021년 감사원의 육군본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군무원에 대해 육군 군의료기관에서 8만건의 불법 직접조제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의’요구를 받은바 있다. 법령에 위반한 불법 직접 조제는 그 자체로 허용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지만, 이와 별개로 군무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방정보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체계를 개발·유지하고 그 기반을 구축하며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예산 현액 8,729억 5,000만원 중 8,209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1억 3,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8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정보화 프로그램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보통신 기반체계구축	277,075	277,075	408	△7,195	270,288	249,365	9,172	11,750	292,157
정보체계 개발유지	187,774	187,774	12,852	55,963	256,589	244,657	7,760	4,171	183,056
정보통신 운영지원	16,841	16,841	84	1,075	18,000	17,195	504	301	15,659
통신요금	86,210	85,010	10	△1,415	83,605	78,351	2,259	2,995	84,123
통신시설	51,753	51,753	1,010	△796	51,966	43,696	4,688	3,583	52,136
정보보호	82,010	80,898	952	△703	81,148	76,309	1,754	3,085	79,816
국방ICT융합	8,800	8,800	-	-	8,800	8,800	-	-	-
국방ICT 혁신기술	1,000	1,000	-	-	1,000	1,000	-	-	6,651
국방광대역 통합망(BI) 정부 지급금	95,323	95,323	-	6,231	101,554	101,551	-	2	119,672
프로그램 합계	806,786	804,474	15,316	53,160	872,950	820,924	26,137	25,887	833,27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10-1. 국방정보화 투자예산 확보로 국방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

가. 현황

2025년 정보화 예산은 8,068억원으로, 이 중 고정비용은 7,194억원, 투자비용은 874억원이다.¹⁾ 정보화예산 총액은 2020년 5,641억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 중 고정비용 증가분이 총액 증가분 이상을 차지하여 투자비용은 2020년 957억원에서 2025년 8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비용이 전체 정보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7.0%에서 2025년 10.8%로 크게 감소하였다.

[2020~2026 국방 정보화 예산 고정비, 투자비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020 (A)	2021	2022	2023	2024	2025 (B)	2026	증가분 (B-A)
합계	5,641	6,424	7,329	7,347	7,610	8,068	8,333	2,427
고정비	4,684	5,506	6,194	6,353	6,593	7,194	7,790	2,510
투자비	957	918	1,135	994	1,017	874	543	△83
투자비 비중	17.0	14.3	15.5	13.5	13.4	10.8	6.5	△10.5

자료: 국방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 1) 고정비용과 투자비용간 명확한 구분기준은 없으며 통상 고정비로 판단되는 비용도 그 실제 투입목적 등에 따라 투자비의 성격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국방부의 경우 한국국방연구원의 「정보통신체계운영 재정지출 분석평가 연구보고서」(2024.7.)의 고정지출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정비와 투자비를 구분하였다.

고정비 포함내역	세부내역
임차료(기준)	임차료 기준, 임차료 교체, 정부지급금(BTL)
구매(교체)	구매예산 중 기존장비의 교체 목적으로 편성된 금액
유지보수비	정비료, 정보체계·전장체계 유지보수 등
시설구축 & 유지비	통신시설비
통신요금	체신료, 전용회선사용료 등
다년차 사업 및 반복성 지출	정보체계개발 사업 중 계속사업, 상용SW도입 등
기타 경상경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전산운영용품 등

나. 분석의견

정보화 예산 내 경직성 비용 증가로 인하여 신규투자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 국방 디지털 전환, 사이버보안 강화 등 국방 정보화 달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신규 투자비용을 적극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평가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예산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정보화 기반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투자비용과 기존의 기반 또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고정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화 인프라와 기존 정보체계가 증가하는 경우 이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고정비(경직성 경비)는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한다. 그러나 국방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신규 체계개발을 위한 비용 등 투자비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어, 정보화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실제 투자비용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반체계 예산 관련하여서는 재난안전망 단말기 도입, 스마트부대 추진, 5G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신규사업 제한되고 있으며, 내용연수 상향과 장비 정비요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예산의 한계로 구매사업을 임차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임차료 등 경직성 경비의 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도 있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기된 체계 구축·신규개발 소요가 다수 지연되고 있는데,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AI기반 디지털 신호해독 통합체계 구축, 국방지능형 플랫폼 구축, 지능형 탄약관리체계개발, 지능형 위게임망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등 전력 강화 및 효율화 측면에서 직접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전력 운영상의 효율 저해가 우려된다.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내 신규 투자 필요사업]

구분	사업명	소요예산(원)
개념연구	(전군지원)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ISP (육군)AI 안전관리체계 구축 ISP (777)AI기반 디지털 신호해독 통합체계 구축 ISP 등	16억 8,300만
신규개발	(전군지원)국방지능형 플랫폼 구축 출연금 (전군지원)지능형 탄약관리체계개발비 (공군)통합작전기상 정보체계 구축 (합참)지능형 위계임망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등	302억 7,900만

자료: 국방부

정보보호 예산의 경우, 지능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보안제도의 혁신과 전력 보강이 필요하나, 2022년 이후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및 노후교체 반영이 제한되고 있다. 무기체계, 네트워크의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체계가 확대 구축되어야 함에도 추가도입이 어려워 신규부대 창설시 독립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여 타 부대에 의존하는 사례 또는 AI적용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신규 투자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의 절감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방부는 약 1,300개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고정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활용도와 노후도 등 현황관리에 더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의 적정여부, 시스템 간 중첩여부, 통합·폐지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방 정보화 업무 훈령」은 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²⁾를 규정하고

2) 「국방 정보화 업무 훈령」

제230조(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 ① 전시 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전장관리 정보시스템
2. 2순위: 자원관리 정보시스템

③ 제2항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작전 상황

있으나, 이는 중요도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일 뿐, 기존 시스템의 통합, 폐지, 효율화를 위한 기준으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AI 적용이 국방디지털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흐름인 것은 분명하나, AI와 함께 5G·6G,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전산화·자동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AI 이외의 정보화 영역에도 충분한 투자비용을 투입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 AI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이를 통한 전략, 전술, 체계 구축에는 중·장기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 AI 응용을 위해서는 전산화·자동화된 데이터 셋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정보화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정보화사업에 대한 실질 투자비가 일정 비율 이상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경직성 경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적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2. 부대별 전시 임무 및 가용 자원 상황
 3. 자원관리정보체계의 중요도(별지 제76호서식 참조)
 4. 전시 중단되는 업무는 최하위 순위
 5.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스템(연동, 보안 등)은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순위
 - ④ 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자원의 확보, 배분,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보호, 복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2. 병과학교교육: 정보통신교육 등 내실있는 진행 필요

가. 현황

병과학교교육 사업¹⁾은 병과(특기) 학교기관의 신분별·계급별·기능별 전문 보수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재료비, 강사료, 교육비품·장비 등 교육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54억 5,800만원 중 14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병과학교교육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병과학교교육	15,690	15,690	134	△366	15,458	14,639	429	390	13,891
정보통신교육	1,352	1,352	5	△110	1,246	1,085	158	2	721
부대자체교육	549	549	-	△19	530	424	-	106	51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병과학교교육 중 정보통신교육과 사이버사령부 교육의 경우 군의 정보통신기술과 사이버보안 등 군 정보화능력 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시 인원이 계획대비 71.7%, 42.0%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각군이 정보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계획에 맞게 철저히 수립하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병과학교교육은 각 군별 구분된 병과에 대해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그 중 정보통신교육은 정보통신병과의 장병을 대상으로 특기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2-302

으로 전 군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육군과 공군의 교육실적이 계획대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계획된 교육인원 17,987명 중 71.7%에 해당하는 12,897명에 대해서만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특히 육군은 교육인원이 계획대비 67.3%, 공군은 71.4%에 불과하다.

[2025 군별 정보통신교육 실적]

(단위: 명, %)

구분	계획인원	교육인원	이수율
육군	10,021	6,744	67.3
해군	1,719	1,602	93.2
해병대	1,130	899	80.0
공군	5,117	3,652	71.4
소계	17,987	12,897	71.7

자료: 국방부

사이버전·사이버보안 관련 핵심전력인 사이버사령부에서 실시하는 부대자체교육은 각 군 정보보호담당자와 정보체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작전 분야별 임무수행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다.

[사이버사령부 부대자체교육 개요]

구분	사이버사
개요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및 사이버작전 분야별 임무수행 수준 향상
대상자	전군 정보보호담당자와 정보체계운영자, 각 군 양성·보수교육 이수자, 사이버사 군무원 대상(실무자, 관리자)
내용	국직부대 기본교육 및 사이버작전 분야별 교육훈련 지원
교육장소	사이버사
홍보(안내)	공문, 게시판 등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25년의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163명 중 42.0%인 486명에 대해서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 사이버사령부 부대자체교육 실적]

(단위: 명, %)

구분	계획인원	교육인원	이수율
사이버사령부 부대자체교육	1,163	489	42.0

자료: 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교육의 경우 각 군 내 교육 홍보 부족으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자체교육은 교육을 위한 여비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사이버사령부 부대자체교육은 전군 정보보호담당자와 정보체계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장소인 용산에서 1주간 교육을 받기 위한 여비는 평균 88,000원이지만 2025년 동 교육을 위한 여비는 약 45명분 여비 400만원만 편성이 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설계해둔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의 운영을 위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는 교육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비용을 확인하고 수강생 지원·확보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6년 국방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군 장병 AI·SW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으로 장병 AI·SW 소양교육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²⁾

그러나 병과학교교육 및 부대자체교육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AI소양교육 못지 않게 시급하고 중요하며 정보화병과·부대 역량의 직접적 향상에 보다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사업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사업 확대뿐 아니라 기존 편성·계획된 정보통신교육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2) [2026년도 국방AI인재양성 내 교육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¹⁾		2026 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방AI인재양성	9,396	8,705	8,705	40,612	31,907	366.5
AI 전문교육	4,720	4,720	4,720	7,168	2,448	51.8
AI·SW 소양교육	1,200	1,200	1,200	7,000	5,800	4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병무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5,600만원이며, 9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7.5%인 7억 1,2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600만 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56	256	256	918	712	206	0	77.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원이며, 이 중 97.4%인 4,610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121억 5,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73,196	473,196	473,196	461,038	0	12,158	97.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병무청의 자산은 3,866억 2,500만원, 부채는 2,330억 9,000만원으로 순자산은 1,535억 3,5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84억 3,100만원, 유·무형자산 3,618억 8,800만원, 기타자산 63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3억 2,700만원(1.7%) 증가하였다. 이는 내부개발소프트웨어 개발 진행 등으로 기타자산이 전년 대비 59억 5,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73억 9,800만원, 총당부채 2,255억 9,300만원, 기타부채 9,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67억 6,700만원(32.2%)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의기타총당부채(장병내일준비적금) 증가 등에 따라 총당부채가 608억 6,2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86,625	380,298	6,327	1.7
Ⅰ. 금융자산	18,431	17,420	1,011	5.8
Ⅱ. 유·무형자산	361,888	362,528	△640	△0.2
Ⅲ. 기타자산	6,306	351	5,955	1,696.6
부 채	233,090	176,323	56,767	32.2
Ⅰ. 차입부채	7,398	11,531	△4,133	△35.8
Ⅱ. 총당부채	225,593	164,731	60,862	36.9
Ⅲ. 기타부채	99	60	39	65.0
순 자 산	153,535	203,975	△50,440	△24.7
Ⅰ. 기본순자산	249,142	249,14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40,490	△190,037	△50,453	26.5
Ⅲ. 순자산 조정	144,883	144,870	13	0.0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07억 1,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07억 1,900만원, 관리운영비 5,053억 3,200만원, 비배분비용 3,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억 7,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7억 8,400만원(0.5%) 증가한 5,357억 1,3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비용이 전년 대비 10억 6,100만원, 관리운영비가 전년 대비 16억 1,1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병역자원선발 프로그램(198억 8,400만원), 보충역복무지원 프로그램(64억 6,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542억 7,800만원과 경비 3,510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0,719	29,658	1,061	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30,719	29,658	1,061	3.6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0
II. 관리운영비	505,332	503,721	1,611	0.3
III. 비배분비용	36	0	36	0.0
IV. 비배분수익	374	451	△77	△17.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35,713	532,929	2,784	0.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535,713	532,929	2,784	0.5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039억 7,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535억 3,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04억 4,000만원(△24.7%)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1억 7,000만원 증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717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27억 8,4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860억 3,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7억 7,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병무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03,975	323,520	△119,545	△37.0
Ⅱ.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85,259	413,540	71,719	17.3
Ⅳ. 조정항목	13	△157	170	108.3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53,535	203,975	△50,440	△24.7

자료: 병무청

다.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병무청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다.

병무청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병역판정검사 사업**이 있다.

병역판정검사 사업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25.7월)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수련사업 가능일자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여비가 50백만원 감액**되었다.¹⁾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24.11.
국방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병무청은 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면탈 예방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최적의 병력충원 및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 지원, ③ 보충역 및 대체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회 통합 기여, ④ 병역이행 자긍심 및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잠복결핵검사 단가 예측의 미비로 계약 체결 낙찰차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전반의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복무인원 대비 규정위반자 비율, 반복위반자 비율에 큰 개선이 없었다.

II

주요 사업 분석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가. 현황

병무행정운영¹⁾ 사업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우편료 등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84억 4,000만원 중 7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병무행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병무행정운영	8,440	8,440	-	8	8,440	7,418	-	1,022	8,85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나. 분석 내용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을 위한 예산에 불용이 발생한 것은 병무청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 증가에 따른 송달비용 감소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무청은 전자적 송달 동의율, 평균 열람율을 고려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 등 절감을 위해 전자송달 수신 동의 및 열람을 안내·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34-317

「병역법」 제6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3)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전자송달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2)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병역법 시행령」

제4조의3(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자송달할 때 미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를 알려주고,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송달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종류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4)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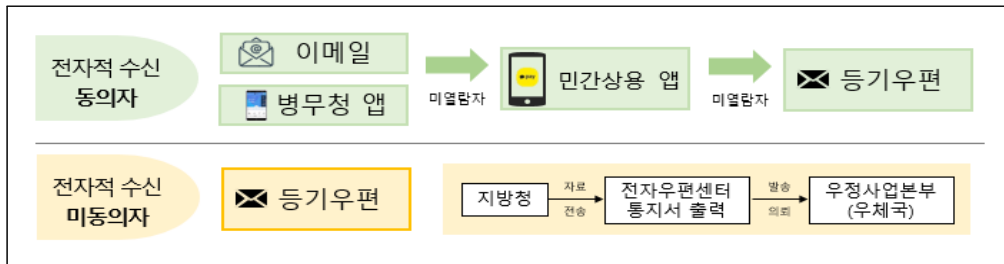
제5조(우편송달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0항 및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26.2.13.)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2.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3.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4.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
- 5.~7.(삭제)
8.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입영 통지서
9.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10.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예술체육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1.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12.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1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14.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15.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통지서
16.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제9조(전자송달 대상) 지방병무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통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법 제6조제10항 및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다.(개정 2026.2.13.)

병무청은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등 최초 소집시부터 전자적 통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 동의자에 대한 전자송달을 실시하고 있다. 동의자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및 병무청 앱으로 최초 송달 후, 미열람시 상용 앱을 통해 재차 송달, 다시 미열람시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한다.

[병역의무부과통지서 통지 방식별 송달 절차]



자료: 병무청

그런데, 최근 통지서 전달 방식 중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전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즉 전자송달 미동의 또는 미열람으로 등기우편 송달된 건수는 2023년 29만 6,000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였으나 2024년에는 14.5%, 2025년에는 10.8%로 그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송달의 건수(양) 자체도 감소하여, 2025년에는 20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5만 8,000건 감소하였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방식별 교부 현황]

(단위: 천건, %)

구분	계	이메일		병무청앱		상용앱		등기우편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2023	1,709	538	31.5	193	11.3	682	39.9	296	17.3
2024	1,793	508	28.3	199	11.1	827	46.1	260	14.5
2025	1,868	468	25.1	221	11.8	977	52.3	202	10.8

주: 각 방식별 교부건수는 해당 방식을 통해 “열람”된 통지서 건수를 의미함. 또한 등기우편 송달의 경우 전자송달 미동의한 경우와, 동의했으나 전자송달 미열람한 경우가 모두 포함됨

자료: 병무청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소요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달 방식별 소요 단가를 살펴보면 이메일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무료, 상용앱(카카오톡 알림톡)의 경우 건당 129원, 등기우편은 건당 2,530원으로, 등기송달 건수가 줄어들 경우 예산 소요도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방식별 단가]

(단위: 원)

구분	이메일·병무청앱	상용앱	등기우편
단가	-	129	2,530

자료: 병무청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대상자는 연령별 남성 인구, 소집대상자, 훈련대상자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업의 집행 규모는 단순 송달대상자의 수뿐만 아니라 전자송달 열람률 등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2025년 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병무청의 전자송달 열람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등기우편 발송량이 감소하여 예산 절감으로 이어진 측면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23~2025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2024	2025
편성액(A)	2,267	2,072	2,105
집행액(B)	1,962	2,008	1,697
집행률(B/A)	86.6	96.9	80.6

자료: 병무청

한편, 병무청은 2026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송달비용으로 2025년 대비 22.6% 증가한 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등기우편의 발송 단가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약 11.9% 증가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용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병무청이 해당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향후 해당 사업 규모 설정시 병역 자원 변동 추이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송달 증가율⁵⁾을 고려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통지서 송달 및 열람의 대상자가 대부분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청년 세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전자수신 동의를 적극 독려하고 전자송달의 방식을 다양화⁶⁾하여 그 비중을 더 확대함으로써 우편송달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환경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연도별 전자송달 제도의 변천 및 실적 개선 현황]

(단위: %)

연도	주요 개선	전자송달 교부 비율
2023	· 모바일 통지서 발송 정확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식별번호(CI) 기준 발송으로 전환	82.7
2024	· 플랫폼 확대를 통한 모바일 통지서 안정적 교부체계 구축 · 입영판정검사 전용 모바일 통지서 채널명 추가로 통지서 관리의 편의성 등 제공	85.5
2025	· 카카오톡 공공스킨 정부부처 초기 적용으로 피싱메시지와 차별화로 모바일 통지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모바일 통지서 발송시간 조정으로 당일 발송·당일 열람 지원 * (기존) 24시간 → (개선) 12시간(08시~20시) 발송 체계	89.2

자료: 병무청

6) 병무청은 이메일, 모바일앱,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등기우편, 대면교부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예컨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한 알림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 서비스와 관련하여서 병무청은, 이용자가 사전에 ‘해당 알림서비스’의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안내가 가능한 구조로 병역의무자가 사전에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해당 분야를 별도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확대에 한계가 존재하는 등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통지서 전자송달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황

병역판정검사¹⁾ 사업은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고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25억 1,900만원 중 21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병역판정검사	22,519	22,519	-	681	22,519	21,408	-	1,111	18,22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나. 분석 의견

첫째, 잠복결핵검사 단가 예측의 미비로 계약 체결 낙찰차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향후 계약 단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예측을 통하여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잠복결핵검사 계약단가 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인당 예산 편성 단가는 2022~2025년 16,000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낙찰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5년의 경우 71.0% 수준에서 계약단가가 형성되었다. 이에 동 사업에 대한 따라 낙찰차액도 2022~2025년 지속 증가하여, 2022년 7,400만원에서 2025년 9억 6,800만원까지 발생하였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잠복결핵검사 예산 및 낙찰차액 내역]

구분	예산		낙찰액			낙찰차액 (백만원)
	예산액 (백만원)	1인당 단가(원)	집행액 (백만원)	1인당 단가(원)	낙찰률(%)	
2022	4,069	16,000	3,995	15,570	97.3	74
2023	4,014	16,000	3,567	14,500	90.6	447
2024	3,688	16,000	2,838	12,400	77.5	850
2025	3,560	16,000	2,592	11,358	71.0	968
2026	639	33,600	447	23,520	70.0	192

자료: 병무청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률도 매년 감소하여 2022년 98.2%이던 집행률이 2025년의 경우 7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1~2026 잠복결핵검사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	5,542	3,662	66.1
2022	4,069	3,995	98.2
2023	4,014	3,567	88.9
2024	3,688	2,838	77.0
2025	3,560	2,592	72.8
2026	639	(집행중)	(집행중)

자료: 병무청

이는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경쟁입찰 등 과정에서 인당 단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에도 병무청이 이에 맞추어 편성 단가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26년의 경우에는 낙찰차액 규모가 1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잠복결핵검사 지침 변경으로 대상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 사업예산이 감소한 탓으로, 인당 단가의 낙찰률은 70.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단가 과다 편성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병무청은 실제 계약 단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하여 낙찰차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5년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사회복지요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요원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복무자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잠복결핵검사 수검을 ‘원칙’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수검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면서, 대상자를 병역판정검사자 전원 및 모집병 지원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보류) 및 귀가자 등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대상자 설정은, 잠복결핵검사 대상자가 대부분 건강한 청년층이고, 최근 수년간 잠복결핵검사의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²⁾ 결핵 고위험군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시 실시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걸러질 수 있다는 점, 현역병의 경우 상병 진급 건강검진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필요 여부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어 왔다. 국회도 2024년 결산심사를 통해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의 효율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병무청은 2025년 12월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사회복지요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지침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6.1.1.부터는 변경된 대상자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중이다.

2) [연도별 잠복결핵검사 결과]

(단위: 명)

연도	검사 인원	검사 결과			
		음성	%	양성	%
2022	255,231	252,663	99.0	2,568	1.0
2023	244,559	240,784	98.5	3,775	1.5
2024	227,537	225,055	98.9	2,482	1.1
2025	226,691	224,903	99.2	1,788	0.8
2026.5.	7,918	7,805	98.6	113	1.4

자료: 병무청

[잠복결핵검사 대상자 관련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 개정 내역]

개정 전	개정 후
<p>제3조(잠복결핵검사 대상자)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4.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및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 등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p>제3조(잠복결핵검사 대상자 및 검사시기) 지방병무청장은 <u>입영판정검사 시 사회복지무요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u>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조(잠복결핵검사 제외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잠복결핵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p>제4조(잠복결핵검사 제외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잠복결핵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그러나 현행 지침과 같이 검사 대상을 전면 ‘희망자’로 한정할 경우, 감염 취약 계층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정 복무 분야까지 검사가 임의 선택의 영역으로 남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병률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상시적인 방역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민간 환경에 비해 결핵 발병 및 집단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³⁾

실제로,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6,185건에서 2025년 7,070건으로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1,459건에서 1,843건으로 26.3% 증가하였고, 사업장 또한 3,021건에서 3,364건으로 11.4% 증가하는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결핵 발생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국내 결핵환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 집단시설 중심의 결핵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2025년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현황]

(단위: 건)

구분	발생수	집단시설						
		학교	의료 기관	군부대 /경찰	교정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사업장	그 밖의 시설
2021	7,161	559	1,042	82	62	1,173	3,990	253
2022	6,252	493	923	54	54	1,194	3,339	195
2023	6,205	409	913	49	70	1,442	3,111	211
2024	6,185	425	893	75	64	1,459	3,021	248
2025	7,070	404	973	45	84	1,843	3,364	357

자료: 질병관리청

즉, 당초 잠복결핵검사 범위의 축소 논의가 제기된 배경은 집단생활을 하는 건강한 청년층 간의 감염 우려가 낮다는 분석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사회복지요원이 현장에서 접촉하는 고위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역적 필요성은 이와 분리하여 별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⁴⁾

물론 2026년 5월 현재, 미동의자가 56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사회복지요원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개정 규정상의 '희망자 선별 실시'가 확산 될 경우 자발적 참여율이 저하되면서 미동의자가 증가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위험 시설 내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를 급격히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국회의 지적 취지를 감안하여 과거의 전수 검사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양하되, 잠복결핵 감염 시 파급효과가 큰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등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요원에 한해서는 검사를 단순히 '희망자'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보다 수검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개정 전과 같이 '검사 비동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관 차원에서 수검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실효성과 유동성 관리의 정합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가. 현황

사회복무요원 교육¹⁾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자세,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복무기본교육과 규정위반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2억 1,900만원 중 42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무 요원교육	4,174	4,174	-	45	4,219	4,215	-	4	4,63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²⁾ 사업은 복무지도관 및 복무기관 담당자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복무관리 수행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무기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2억 100만원 중 11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201	1,201	-	-	1,201	1,158	-	43	1,26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434-319

2) 코드: 일반회계 1434-320

나. 분석 의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전반의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복무인원 대비 규정위반자 비율, 반복위반자 비율에 큰 개선이 없으므로, 병무청은 복무위반자에 대한 교육과 복무지도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3) 「병역법」은 이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경고처분에 따른 연장근무를 하도록 규정 4)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한 경우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3) 「병역법」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규정위반자는 2021년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3.0%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4.3%로 증가한 이후 2025년에 2020년 이전과 유사한 4%대를 유지하고 있어, 유의미한 감소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1~2025 사회복무요원 규정위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복무 인원	계		복무이탈			복무의무위반		
				소계	7일 이내 경고	8일 이상 고발	소계	1회 이상 경고	2·4· 8회 이상 고발
2021	57,769	1,743	3.0	819	638	181	924	915	9
2022	53,214	2,077	3.9	990	754	236	1,087	1,077	10
2023	49,130	2,125	4.3	1,087	826	261	1,038	1,026	12
2024	45,213	1,893	4.2	912	695	217	981	961	20
2025	40,587	1,671	4.1	792	595	197	879	868	11

자료: 병무청

한편,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은 2008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유형별 개요]

구분	대상	기간
복무기본교육	(목적)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과 기본역량 함양	
기본과정	모든 사회복무요원(복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시)	4박5일
디딤과정	5인 이상 복무기관의 대표자,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등	2박3일
복무지도교육	(목적) 복무규정 위반자,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성실복무 유도	
나래과정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 받은자	2박3일
새롬과정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 받은자 등	4박5일
이음과정	군복무적응곤란 사유 현역복무부적합자	2박3일

자료: 병무청

그러나,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규정 재위반 비율을 살펴 보면, 교육 이수 후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복무지도교육 이수자 복무규정 위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나래 과정	교육 수료자	778	526	507	563	706
	규정 재위반자	130	86	102	120	110
	재위반비율	16.7	16.3	20.1	21.3	15.6
새롬 과정	교육 수료자	419	362	399	425	378
	규정 재위반자	98	114	118	130	115
	재위반비율	23.4	31.5	29.6	30.6	30.4

자료: 병무청

반복위반자 현황을 보면, 위반자의 46.2%가 반복위반자이며, 특히 3회 이상 반복 위반자의 비율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복무규정 위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합계
2022	1,016(51.6)	340(17.3)	615(31.2)	1,971(100)
2023	919(49.2)	305(16.6)	641(34.4)	1,865(100)
2024	829(52.7)	240(15.3)	503(32.0)	1,572(100)
2025	765(53.7)	224(15.7)	434(30.5)	1,423(100)

자료: 병무청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복무관리 제도의 강화를 위해, 2021년 병무청은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교육과정(“새롬교육”) 교육 기간을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연장하였고 2025년에는, 복무지도교육 인원을 2024년 대비 640명 증원한 1,600명으로 편성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현역복무부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복무위반과는 다소 무관한 “이음교육”의 교육실적이 2025년 복무지도교육 실적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실상 복무위반자에 대한 지도교육 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복무지도교육 인원은 2024년 1,035명에서 2025년 1,564명으로 529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403명은 이음교육인원의 증가분이다. 복무지도교육 인원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복무위반자에 대한 지도교육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⁶⁾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규정위반자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은 위반자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육인원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편 등 복무지도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교육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소계	기본	디딤	소계	나래	새롬	이음
2022	29,861	28,919	27,881	1,038	942	526	362	54
2023	30,733	29,775	29,351	424	958	507	399	52
2024	28,773	27,738	27,320	418	1,035	563	425	47
2025	27,546	25,982	25,071	911	1,564	706	378	480

자료: 병무청

한편, 「병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조사 등 복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무지도관을 두고 있으며, 현재 14개 지방병무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 등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복무지도관이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 규정위반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 실적이 실제 복무규정위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6) 특히 나래과정과 새롬과정의 2025년 계획인원이 각각 800명, 40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시, 교육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한 상황이다. 복무위반자 수 대비 교육과정이 부족하여 교육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러한 교육인원 미달은 복무위반자의 감소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별 복무지도관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지방청	인원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복무기관	1인당 관리대상	
				복무인원	복무기관
계	102	40,532	11,705	397	115
서울	21	6,916	1,363	329	65
부산	8	3,546	751	443	94
대구경북	9	3,793	1,342	421	149
경인	12	5,723	1,460	477	122
광주전남	7	2,751	1,057	393	151
대전충남	7	3,256	1,075	465	154
강원	3	799	352	266	117
충북	4	1,393	596	348	149
전북	4	1,540	502	385	126
경남	6	2,319	811	387	135
제주	2	608	233	304	117
인천	9	4,050	1,113	450	124
경기북부	7	3,458	842	494	120
강원영동	2	380	208	190	104
사회복무연수센터	1	-	-	-	-

자료: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복무위반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복무지도관 제도를 내실화하고 사업효과성을 개선함으로써, 복무지도관의 관리실태 점검, 복무관리가 실제 복무위반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무지도관 실태조사 실적]

(단위: 개소, 건)

구분	복무기관	대상기관	조사실적					
			계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2021	12,521	10,158	11,259	110.8	1,008	897	1,185	8,169
2022	12,336	10,258	11,312	110.3	1,011	835	1,157	8,309
2023	12,115	10,338	11,414	110.4	877	880	1,200	8,457
2024	11,829	9,673	11,070	114.4	839	919	954	8,358
2025	11,352	7,656	8,983	117.3	677	762	669	6,875

주: 전년도 복무기관 평가 상위 30%는 실태조사 면제 단, 전년도 면제기관·특수학교는 조사
자료: 병무청



방위사업청
(363-455 비공개)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